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1호



2020. 7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1호

2020.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제1부

코로나19 관련 논의 및 대응 현황

I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책 대응 필요성 / 3

II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조세정책 / 6

1. 세무행정(Tax Administration) 분야 6
2. 세제(Tax Policy) 분야 8
3. 조세조약 분야 9

III 국가별 대응 / 11

1. 미주 11
2. 유럽 14
3. 아시아 36
4. 오세아니아 41
5. 국제기구 43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캐나다 / 49

- 1. 미국 49
 - 가. 유자격 기회 펀드(QOF) 투자 관련 최종 규정 발표 49
 - 나.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수당 세금 공제 조치 발표 50
 - 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51
 - 라. 코로나19 대응 CARES Act 제정 51
 - 마. 혼성 계약 과세 관련 최종 규정 발표 53
 - 바. 코로나19 관련 거주자 판단 체류 기간 감면 조치 시행 54
 - 사. 코로나19 관련 개인의 국외 임시 활동 인정 조치 발표 55
- 2. 캐나다 55
 - 가. 코로나19 관련 납세 유연화 조치 발표 55
 - 나. 코로나19 여행 제한에 대한 국제조세 관련 조치 발표 57

II

유럽 / 59

- 1. 그리스 59
 - 가. 부동산 판매 및 임대 관련 준비금의 과세 처리 규정 발표 59
 - 나.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한 긴급 조치 발표 60
 - 다. 코로나19 관련 세제 조치 입법 초안 제출 61
- 2. 네덜란드 62
 - 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 조치 발표 62
 - 나. 코로나19 관련 긴급 조세 조치 발표 63

목 차

| | |
|---|----|
| 다. 저세율국 지급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 | 64 |
| 라. 조세조약 정책 보고서 발표 | 65 |
| 3. 노르웨이 | 66 |
| 가. 디지털서비스세 조건부 실행계획 공개 | 66 |
| 나. 코로나19 관련 기업 지원 및 긴급 조세정책 | 66 |
| 다. 코로나19 관련 2020년도 수정 예산안 의회 제출 | 67 |
| 4. 덴마크 | 68 |
| 가. 코로나19 관련 납세기한 연장 조치 발표 | 68 |
| 5. 독일 | 69 |
| 가. EU 차원 금융거래세 도입안 발표 | 69 |
| 나. 강제적 보고규정 법률 관보 게재 | 70 |
| 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 조치 발표 | 71 |
| 라. 코로나19 관련 투자세법 적용 요건 완화 지침 발표 | 72 |
| 마. 코로나19 관련 영세기업 지원 조치 및 조세 법률 | 73 |
| 바. 코로나19 관련 경제활성화 정책 패키지 발표 | 75 |
| 6. 룩셈부르크 | 77 |
| 가. EU 조세분쟁해결절차 입법 | 77 |
| 나. 코로나19 관련 긴급 조세정책 발표 | 78 |
| 다. 강제적 보고 규정 법안 관보 게재 | 79 |
| 7. 벨기에 | 80 |
| 가. 2020년 과세 관련 지표 금액 공표 | 80 |
| 나. 코로나19 관련 세금 납부기한 연장 조치 발표 | 82 |
| 다. 코로나19 관련 법인세 선납 공제 혜택 일부 확대 | 83 |
| 라. 코로나19 관련 추가적 세제 조치 시행 | 84 |
| 마. 코로나19 관련 추가 조치 제출 및 공표 | 85 |
| 바. 자선 목적의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보완 | 87 |
| 8. 스웨덴 | 87 |
| 가.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법안 의회 제출 | 87 |

CONTENTS

| | |
|---|-----|
| 나. 코로나19 관련 수정 예산안 의회 제출 | 88 |
| 다. 코로나19 관련 2020년도 수정 예산안 의회 제출 | 88 |
| 9. 스위스 | 89 |
| 가. 상호합의절차 이행을 위한 규정 초안 발표 | 89 |
| 나. 2020년 세이프헤이븐(safe haven) 금리 발표 | 90 |
| 10. 스페인 | 92 |
| 가. EU 조세분쟁해결절차 입법 | 92 |
| 나. 조세연간계획 지침 공개 | 92 |
| 다. 디지털서비스세 및 금융거래세 법안 의회 제출 | 94 |
| 라. 코로나19 관련 납세기한 연장 법령 관보 게재 | 95 |
| 마. 코로나19 관련 문화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세 조치 | 96 |
| 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 법안 발표 | 98 |
| 11. 아일랜드 | 99 |
| 가. 부가가치세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 매뉴얼 발표 | 99 |
| 나. 고용주의 피고용인 변호사 비용 대리 지불에 대한 과세 처리 | 101 |
| 다. 코로나19 관련 국세청 긴급 조치 발표 | 102 |
| 라. 코로나19 관련 R&D 초과 공제세액 조기 환급 | 103 |
| 마. 국내 법인의 대응조정 구제 청구에 관한 매뉴얼 발표 | 103 |
| 바.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발표 | 104 |
| 12. 영국 | 105 |
| 가. EU 조세분쟁해결절차 입법 | 105 |
| 나. 2020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 106 |
| 다. 코로나19 관련 납세기한 연장 등 긴급 조치 발표 | 108 |
| 라. LISA 계좌 인출수수료 감면 시행규칙 시행 | 109 |
| 13. 오스트리아 | 110 |
| 가. 소득세율 인하 계획 공개 | 110 |
| 나. 코로나19 관련 면세 및 납세기한 연장 | 111 |
| 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법안 승인 및 특별 조치 발표 | 112 |

목 차

| | |
|--|-----|
| 라. 코로나19 관련 경제활성화 정책 패키지 발표 | 113 |
| 14. 이탈리아 | 113 |
| 가. 2020년도 예산법 시행 | 113 |
| 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 조치 발표 | 116 |
| 다.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법률 개정 | 117 |
| 15. 포르투갈 | 119 |
| 가. 혼성불일치 확장 법안 초안 의회 제출 | 119 |
| 나. 2020년 예산에 관한 법률 개정 공표 | 120 |
| 다. 납세자 보호 부서 신설 | 122 |
| 라. 코로나19 관련 2020년 예산 추가 법안 승인 | 122 |
| 16. 프랑스 | 124 |
| 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 조치 발표 | 124 |
| 나.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 125 |
| 다.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지침 발표 | 126 |
| 라. UCITS 펀드의 부가가치세 면제 법령 및 행정 지침 | 128 |
| 17. 핀란드 | 129 |
| 가. 출국세 도입 평가보고서 공개 | 129 |
| 나. 국외 근로소득 면제 규정 개정 | 130 |
| 다. 코로나19 관련 납세기한 조정 요건 완화 | 130 |
| 라. 코로나19 관련 조세정책 발표 | 131 |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 133

| | |
|-------------------------------|-----|
| 1. 뉴질랜드 | 133 |
| 가. 코로나19 대응정책 발표 | 133 |
| 나.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추가 발표 | 134 |
| 다. 2020/21 세법 개정안 의회 제출 | 135 |
| 라.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추가 발표 | 137 |

CONTENTS

| | |
|-------------------------------|-----|
| 2. 싱가포르 | 138 |
| 가. 2020년도 예산안 발표 | 138 |
| 나.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발표 | 140 |
| 3. 인도 | 141 |
| 가. 2020 연방예산안 발표 | 141 |
| 나.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발표 | 144 |
| 다.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추가 발표 | 145 |
| 4. 인도네시아 | 146 |
| 가. 코로나19 대응정책 발표 | 146 |
| 나. 해외 디지털거래에 대한 VAT 가이드라인 발표 | 147 |
| 다.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발표 | 148 |
| 5. 일본 | 149 |
| 가. 2020년도 세법 개정안 세목별 내용 발표 | 149 |
| 나.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발표 | 152 |
| 6. 중국 | 154 |
| 가. 소득세법 사회복지 기부금 공제 규정 도입 | 154 |
| 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조세감면 도입 | 155 |
| 다.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추가 발표 | 156 |
| 라. 코로나19 관련 소규모 기업의 세금 납부 연장 | 157 |
| 7. 호주 | 158 |
| 가. 코로나19 대응정책 발표 | 158 |
| 나.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추가 발표 | 160 |
| 다. 코로나19 관련 자산 즉시상각 기한 연장 | 161 |
| 8. 홍콩 | 162 |
| 가. 2020/21년도 예산안 발표 | 162 |
| 나.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발표 | 163 |

목 차

IV

국제기구 / 164

| | |
|---|-----|
| 1. OECD | 164 |
| 가. 디지털세 Pillar 1, 2 관련 IF 문서 발표 | 164 |
| 나. 해외금융거래 관련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발표 | 165 |
| 다. 코로나19 관련 조세 및 재정 정책 대응 보고서 발표 | 167 |
| 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조세조약 지침 발표 | 169 |
| 2. EU | 170 |
| 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조세 조치 논의 | 170 |
| 나. 코로나19 관련 부가세 전자상거래 지침 등 기한 연장 제안 | 171 |
| 다. 브렉시트 관련 용역 공급에 관한 EU 부가가치세 쟁점 발표 | 173 |

표 목 차

제1부

| | |
|---|----|
| 〈표 III-1〉 미주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조세 대응 조치 | 12 |
| 〈표 III-2〉 유럽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조세 대응 조치 | 18 |
| 〈표 III-3〉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조세 대응 조치 | 37 |
| 〈표 III-4〉 오세아니아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조세 대응 조치 | 41 |
| 〈표 III-5〉 국제기구(OECD, EU)의 코로나19 관련 조세 대응 조치 | 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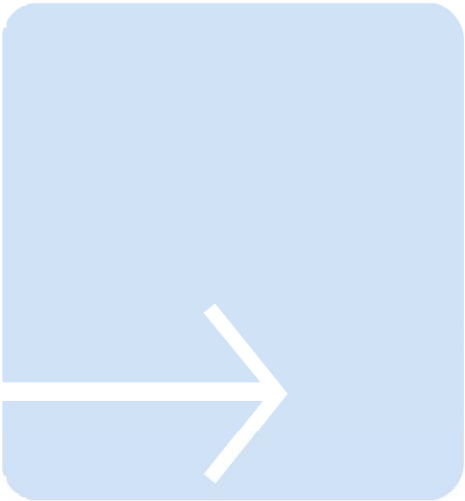
제2부

| | |
|-------------------------------------|-----|
| 〈표 II-1〉 2020년 벨기에 법인세 선납 공제율 | 84 |
| 〈표 II-2〉 현행 오스트리아 개인소득세율 | 111 |



제1부

코로나19 관련 논의 및 대응 현황



I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책 대응 필요성

-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의료 및 보건 분야에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 ▶ 2020년 8월 16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1,294,845명, 사망자 수는 761,779명에 달함¹⁾
 - ▶ 코로나19의 확산 억제 및 완화는 전 세계 보건 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바이러스의 추적 및 치료 능력 개선과 백신 개발에 보건·의료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대유행 완화까지의 소요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²⁾
- ▣ 많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률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락다운(lockdown)과 같은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시행함

 - ▶ 락다운 기간 동안 국가 간 여행 제한, 교육기관 폐쇄, 음식점·병원·약국 등을 제외한 사업장 폐쇄, 외출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원격근무가 증가함³⁾
- ▣ 이러한 광범위한 대응 조치는 실질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고 의료시스템 붕괴 방지에 기여하고 있으나⁴⁾ 경제적 측면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⁵⁾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봉쇄조치로 인한 공급 및 수요충격이 발생함⁶⁾

1)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Situation Report - 209,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816-covid-19-sitrep-209.pdf?sfvrsn=5dde1ca2_2, 검색일자: 2020. 8. 31.

2) OECD, 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resilience, <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tax-and-fiscal-policy-in-response-to-the-coronavirus-crisis-strengthening-confidence-and-resilience-60f640a8/>, 검색일자: 2020. 8. 31.

3)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34_134992-5cqpaak6j3&title=Employment-Outlook-2020-Highlights, 검색일자: 2020. 9. 4.

4) Deb, P., Furceri, D., Ostry, J. D., and Tawk, N.(2020), The effect of containment measures on the COVID-19 pandemic, <https://cepr.org/sites/default/files/news/CovidEconomics19.pdf>, 검색일자: 2020. 9. 4.

5) OECD, The world economy on a tightrope, <http://www.oecd.org/economic-outlook/june-2020/>, 검색일자: 2020. 9. 4.

- 근로자 격리, 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공급충격을 발생시켰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과 소득수준의 감소는 투자와 소비를 감소시켜 수요 충격이 발생하게 됨
- ▶ 공급과 수요 충격으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둔화된 것이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음⁷⁾
 - OECD는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봉쇄 조치가 경제 활동을 약 25%, 소비 지출을 약 1/3 수준까지 감소시키고, GDP는 약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산업생산지수(IIP)는 약 18% 감소하였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 손실이 발생함
- ▶ 기업들은 생산활동 제약과 수요 감소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⁸⁾
 - 많은 기업들이 사업장 폐쇄, 격리,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대폭 감소하여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고 있음
 - 이는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증가시키며, 기업 생산성 및 고용에도 영향을 미침
- ▶ 노동시장에서는 고용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⁹⁾
 - OECD는 2020년 4분기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하고, 실업률은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2차 대유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표는 더욱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 ▶ 현재 경제 상황의 악화와 더불어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함¹⁰⁾
 - 코로나19의 확산 방식, 락다운 기간, 정책 지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경제전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6) Guerrieri, V., Lorenzoni, G., Straub, L., and Werning, I.(2020),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COVID-19: Can Negative Supply Shocks Cause Demand Shortages? <https://www.nber.org/papers/w26918>, 검색일자: 2020. 9. 4.;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34_134992-5cqaak6j3&title=Employment-Outlook-2020-Highlights, 검색일자: 2020. 9. 4.

7) OECD, Evaluating the initial impact of COVID containment measures on activity,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6_126448-kcrc0cs6ia&title=EVALUATING_THE_INITIAL_IMPACT_OF_COVID_CONTAINMENT_MEASURES_ON_ECONOMIC_ACTIVITY, 검색일자: 2020. 9. 4.; UNIDO, Coronavirus: the economic impact - 10 July 2020, <https://www.unido.org/stories/coronavirus-economic-impact-10-july-2020>, 검색일자: 2020. 9. 4.

8) OECD,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0 Issue 1, <https://www.oecd-ilibrary.org/sites/0d1d1e2e-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0d1d1e2e-en>, 검색일자: 2020. 9. 4.

9) OECD, COVID-19 is causing activity to collapse and unemployment to soar, <http://www.oecd.org/employment-outlook/2020/>, 검색일자: 2020. 9. 4.;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34_134992-5cqaak6j3&title=Employment-Outlook-2020-Highlights, 검색일자: 2020. 9. 4.

10) OECD,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0 Issue 1, <https://www.oecd-ilibrary.org/sites/0d1d1e2e-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0d1d1e2e-en>, 검색일자: 2020. 9. 4.

- ▾ 따라서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 완화 및 기업과 가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함
- ▶ OECD는 코로나19 위기를 다음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 대응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¹¹⁾
 - 1단계: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목표로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유동성과 소득 지원에 초점을 둔 조세·재정 정책 지원을 목표로 함
 - 2단계: 대응 조치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 완화를 목표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함
 - 3단계: 대응 조치 완화가 시작되는 단계로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둔 정책 지원을 목표로 함
 - 4단계: 경제 회복 단계로 공공재정 회복에 초점을 둔 정책 지원을 목표로 함
- ▾ 특히, 조세정책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및 이후 기간 동안 기업 및 가계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됨¹²⁾
 - ▶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비용이 수반되나, 이러한 이유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이후의 경제 회복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강력한 조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경제 회복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 조세정책은 기업 및 가계의 현금흐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채무불이행 위험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음

11) OECD, 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resilience, <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tax-and-fiscal-policy-in-response-to-the-coronavirus-crisis-strengthening-confidence-and-resilience-60f640a8/>, 검색일자: 2020. 8. 31.

12) OECD, 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resilience, <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tax-and-fiscal-policy-in-response-to-the-coronavirus-crisis-strengthening-confidence-and-resilience-60f640a8/>, 검색일자: 2020. 8. 31.

II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조세정책

1 세무행정(Tax Administration) 분야¹³⁾

- ▼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 세정지원은 주로 기업 및 가계의 유동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정 지원 분야는 기한 연장, 조기 환급, 세무조사 완화, 민원대응 강화 등임
- ▼ 다수의 국가에서 납세자의 소득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음
 - ▶ 각국의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금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있음
 -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수 주에서 수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환급 접수기한은 기존의 일정대로 유지하여 납세자들에게 유동성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OECD 및 G20 국가의 4분의 1 이상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음¹⁴⁾
 -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3월 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¹⁵⁾
 - ▶ 체납된 세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이 유예됨

13) CIAT/IOTA/OECD(2020), Tax Administration Responses to COVID-19: Measures Taken to Support Taxpayers, OECD, Paris;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6_126478-29c4rprb3y&title=Tax_administration_responses_to_COVID-9_Measures_taken_to_support_taxpayers, 검색일자: 2020. 8. 31.

14) OECD, 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resilience, <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tax-and-fiscal-policy-in-response-to-the-coronavirus-crisis-strengthening-confidence-and-resilience-60f640a8/>, 검색일자: 2020. 8. 31.

15) 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보도자료, 2020. 2. 5.

- 코로나19로 인하여 현금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체납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산 압류 및 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하였고,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가 승인되는 경우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¹⁶⁾

▣ 납세자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조기 환급이 이루어짐

- ▶ 환급액이 납세자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급액이 신속하게 지급 되도록 환급 절차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음
- ▶ 또한 세무당국은 성실납세자에 한해 환급에 관한 위험 확인 절차를 완화할 수도 있음
- ▶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기한이 신고 후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됨

▣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정책이 변경될 수 있음

- ▶ 세무조사를 위해선 세무당국의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직면한 문제 해결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음
- ▶ 또한 물리적 세무조사는 세무당국의 직원과 납세자들의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증가 시킴
- ▶ 따라서 많은 자원과 시간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무조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정책이 변경될 수 있음

▣ 납세자에 대한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 각국의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물리적 방문 횟수를 줄이고,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장하고 있음
- ▶ 또한 디지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하여 세무당국에서 취하고 있는 여러

16)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보도자료, 2020. 4. 7.

조치를 납세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전화, 팩스, 우편 등의 채널도 구축하고 있음

- ▶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세제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 한편, 원격 및 전산화된 활동의 증가로 인해 세무당국은 정보보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코로나19 억제 조치에 따른 사무실 폐쇄 및 원격근무의 증가는 IT 및 인적자원 관련 위험을 높이므로 세무당국은 개인식별정보 및 그 외 민감한 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할 수 있음
- ▶ 이에 세무당국은 다양한 보안 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잠재적 위험을 통제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육·암호화·인증절차 강화가 있음¹⁷⁾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위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함
 - 직원에게 원격 작업 환경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직원이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요청함
 -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컴퓨터 디스크 보안을 강화함
 - 금융 거래, 계정 액세스 재설정, 자격 증명 및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함

2 세제(Tax Policy) 분야¹⁸⁾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은 국가의 재정 상태 및 정치적 상황, 사회보장제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17) OECD, Tax administration: Privacy, disclosure and fraud risks related to COVID-19,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33_133204-8i0mdhhtav&title=Tax-Administration-Privacy-Disclosure-and-Fraud-Risks-Related-to-COVID-19, 검색일자: 2020. 8. 31.

18) OECD, 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resilience, <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tax-and-fiscal-policy-in-response-to-the-coronavirus-crisis-strengthening-confidence-and-resilience-60f640a8/>, 검색일자: 2020. 8. 31.;
 OECD, Overview of immediate crisis response measures implemented by countries in light of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oecd.org/tax/covid-19-tax-policy-and-other-measures.xlsm>, 검색일자: 2020. 8. 31.

- ▶ 많은 기업에서는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하여 임금, 임대료, 부채, 세금 등에 대한 지불 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금흐름 문제는 사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별 조치의 절반 이상은 현금흐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각국의 세무당국이 내놓은 대부분의 조세정책은 기업 및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국가별 대응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사회보험 확대, 조세 감면·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고용주 및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줌
 - ▶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였으며, 일부 국가(노르웨이, 미국, 체코, 폴란드 등)에서는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조치를 도입하기도 함
 -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거나 특정 부문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줌
 - ▶ 이자비용 등의 비용인정 범위를 확대함
 - ▶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또는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 ▶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

3 조세조약 분야

- ▣ OECD는 2020년 4월 3일 역외거래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조세조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¹⁹⁾
 - ▶ 본 지침은 OECD 모델조세조약을 기반으로 한 조세조약에서 국외 근로자가 고용된 당해 국가에서 노동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거나, 거주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체류하게 된 경우를 주된 문제 상황으로 상정하고 있음

19) News IBFD, OECD - COVID-19 pandemic: OECD Secretariat releases guidance on impact of Covid-19 crisis on international tax treaty rules, 2020. 4.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4-06_o2_2_, 검색일자: 2020. 4. 20.;

OECD, OECD Secretariat Analysis of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2020. 4. 3.,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7_127237-vsdaqpp2t3&title=OECD-Secretariat-analysis-of-tax-treaties-and-the-impact-of-the-COVID-19-Crisis, 검색일자: 2020. 4. 20.

- ▶ 고정사업장 창설 문제, 기업의 납세지 변경 문제, 국외 근로자들 관련 문제, 개인의 거주 상태 변경 문제 등을 논의함
- ▣ OECD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이동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새로운 고정사업장이 창설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함
 - ▶ OECD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근무지 소재국이 아닌 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을 문제로 인식함
 -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본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므로, 근로자 소재국에서 고용주의 고정사업장이 창설될 가능성이 있음
 - ▶ 재택근무지는 일반적인 고정사업장 창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재택근무지를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장소가 기업의 사업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장소여야 하며, 당해 기업이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소를 이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 다만 물리적 실재 존재 여부에 관한 최저 기준은 조세조약보다 각국의 내국세법에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의무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 OECD는 개인의 거주 상태 변경에 관하여는 두 가지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
 - ▶ 첫 번째 사례는, 개인이 기존 거주지로부터 일시적으로(휴가 또는 단기 출장) 떨어진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체류가 장기화되어 해당 체류국의 법률적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임
 - ▶ 두 번째 사례는, 개인이 한 국가(현재의 거주국)에서 근무하여 법률상 거주자 지위를 획득한 상태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전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경우임
 - ▶ OECD는 두 경우를 특수 상황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임시 체류국에서 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

III 국가별 대응

1 미주

- ▣ 미국은 2020년 3월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보호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 7월에는 ‘경제 회복을 위한 아동보호법(Child Care for Economic Recovery Act)’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세제 조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 ▶ 법인세, 개인소득세, 급여세, 사회보장기여금, 국제조세 등 다양한 세목 및 분야에서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도입함
 - ▶ 코로나19로 곤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및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무 행정 관련 지원도 함께 제공함
- ▣ 캐나다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납세 유연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2020년 5월에는 여행 제한 조치와 관련한 국제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

 - ▶ 상기한 조치를 통해 사회보장기여금 및 국제조세와 관련한 납세 완화를 꾀하였으며,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조치는 없음
 - ▶ 신고 및 납부 기한 연기, 가산세 면제 등의 조치는 각 주(province)별로 별도로 이루어짐

〈표 III-1〉 미주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조세 대응 조치

| 국가 | 분류 | 내용 |
|----|---------|--|
| 미국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ES Act의 법인세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es: NOL) 조항과 일련의 Q&A를 통해 법인의 최저한세(AMT)의 즉각적인 환급을 제공함 - 2019년과 2020년의 사업이자 공제 한도가 조정과세소득(ATI)의 30%에서 50%로 확대됨 - 현행법상 이월이 허용되지 않던 기업의 순영업손실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 개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을 허용함 - 기업의 식료품 기부 혹은 자선단체에 대한 현금 기부의 공제 한도가 과세소득의 10%에서 25%로 확대됨 |
| | 개인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근거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용한 병가 및 가족휴가로 인해 지급받은 수당은 최대 5,110달러까지 과세 목적상 총소득 산정 시 합산되지 않음 ○ CARES Act의 개인소득세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의 초과 영업손실 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폐지됨 -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적격 자선단체에 대한 현금 기부금에 대해 300달러까지 우선 공제가 허용됨 - 자선 기부 한도가 조정소득의 최대 100%까지로 확대되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현금 기부에 대해 기존 10%였던 조정소득 한도가 25%로 증가함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재정적 곤란을 겪는 개인 운영 사업체들에 대해 퇴직연금 조기 인출 시 최대 10만달러까지 수수료가 면제되며, 조기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3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대출의 한도액은 현행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상되고, 대출기한 역시 기존 5년에서 연장 가능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 제약 조건이 존재하였으나, 2020년은 최소인출액(RMD) 조건이 면제됨 |
| | 급여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회복을 위한 아동보호법'과 관련하여 직원 유지에 대해 부여하던 급여세 공제 혜택을 국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고용주가 지불한 특정 보육 시설 및 특정 종업원에 대한 부양 및 치료 비용과 관련한 환불 가능한 공제를 제공함 |
|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소독제 생산에 사용되는 증류주와 관련한 특별소비세 조항을 면제하며, 기존의 증류주 및 알코올 연료 공장에서 사전 혹은 공식 승인 없이 손 소독제의 생산을 즉시 시작하는 것을 허용함 |
| | 사회보장기여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피고용인이 사용한 병가 및 가족휴가에 고용주가 지불한 수당을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세(FICA세)의 고용주 부담분에서 공제함 |

〈표 III-1〉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 국제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의 기간 중 코로나19 비상 기간 여행 중단으로 인해 적시에 미국을 떠나지 못한 적격한 개인은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체류 기간 중 연속 60일까지 제외시킬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 및 중단으로 개인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임시 활동을 수행할 경우, 관련 활동에 대해 세무 목적상 해외 사업자(Foreign Disregarded Entities: FDEs)나 외국 지사(Foreign Branches: FBs)의 설치 의무를 갖지 않도록 함 ○ 이전 가격과 관련한 APA 신청서 및 연차보고서 제출 시, 임시 조치에 따라 납세자의 서명 이미지(스캔 또는 사진) 혹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된 납세자의 디지털 서명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허용됨 |
| 미국 | 세무 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과세연도의 연방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을 2020년 4월 15일에서 2020년 7월 15일로 연장함 ○ FATCA 보고서를 제출하는 Model 2 금융기관 및 참여 외국 금융기관의 제출기한을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7월 15일로 연장함 ○ CARES Act에 따라 2020 3월 27일 이후 납부해야 할 사회보장세의 고용주 부담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50%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 와인, 맥주, 증류주, 담배 제품, 화기 및 탄약에 대한 소비세 납부기한을 90일 연장함 ○ 재정난이 심각한 수입업자가 통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 세금, 수수료 납부기한을 90일 연장함 ○ 2020년 2분기 양궁 장비 판매에 관한 연방소비세 납부 마감일을 2020년 7월 31일에서 10월 31일로 연기함 ○ 세전 기준 4천달러 미만인 임금 또는 보상에 대해 급여세 징수 마감일을 2020년 9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기함 ○ 세무 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특정 행정 절차를 중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정보문서 요청에 적시에 응답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해 2020년 7월 15일까지 정보문서 요청 집행 절차를 중단함 - 실무자 우선 서비스, e-서비스 헬프 데스크 라인, 납세자 문의센터 운영을 일시 중지함 - 새로운 소득 인증 서비스(IVES) 요청 수락을 일시적으로 중단함 -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세무조사 관련 업무는 2020년 7월 15일 이후 정상적으로 재개됨 |
| 캐나다 | 사회보장기여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직원이 유급 휴가를 받는 경우, 이 직원에게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고용보험(EI), 캐나다 연금플랜(CPP), 퀘벡 연금플랜(QPP) 및 퀘벡 부양보험플랜(QPIP)에 대한 고용주 납부 기여금이 전액 환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신청이 필요하며, 환급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요구됨 ○ 일부 보험 및 연금 플랜에 대해 2020년 5월 5일 이후 남은 2020년 한 해 동안 적립 증지를 허용함으로써 사회보장기여금의 고용주 부담금을 면제함 |

〈표 III-1〉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캐나다 | 국제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여행 제한 조치와 같은 행정적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과세 관련 거주 여부 판단 기준을 완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과세 시 다른 국가의 거주자이며,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캐나다 체류일은 비거주 개인의 거주일 제한 183일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여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비거주 법인이 캐나다에서의 인력 고용이 불가피할 경우, 이러한 고용활동에 대해 고정사업장을 설립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 | 세무 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납세의무 이행 시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이하 'CRA')과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발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온타리오, 알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별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연기 및 가산세 면제 등의 조치를 제공함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및 CRS(Common Reporting Standard)와 관련된 정보 신고기한을 2020년 9월 1일(기존 2020년 5월 1일)로 연장함 ○ 특정 국제적 면제 조항, Section 116 준수 인증서, 비거주 고용주 인증 및 허가 인증서 등과 관련한 일부 긴급 요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임시 전자 제출 프로세스를 도입함 ○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의 지원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기존에 방문 및 대면으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전화 및 화상회의 형태로도 제공함 ○ 2020년 3월 18일부터 4주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사후 평가 및 세무조사와 관련한 행위를 중단함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3호~제20-6호, 2020.
 KPMG, "COVID-19 Global Tax Developments Summary," updated August 30, 2020.
 OECD, "COVID-19 tax Policy and other measures," <https://www.oecd.org/tax/covid-19-tax-policy-and-other-measures.xlsx>, 검색일자: 2020. 9. 7.

2 유럽

▣ 아일랜드에서 2020년 3월 국세청 긴급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현금유동성 및 거래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정 관련 조치를 시행한 것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보여준 조세 관련 첫 사례임

- ▶ 4월에는 R&D 초과 공제세액 조기 환급에 대한 조치와 함께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을 발표함
 - ▶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함
- ▣ 벨기에는 2020년 3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원천징수세의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 조치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음
- ▶ 선납 지불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일부 변경하여 공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결손금 이월과 관련한 준비금 제도 확장 법안을 공포함
 - ▶ 2020년 5월에는 부가가치세 관련 칙령 개정과 함께 마스크 및 알코올성 젤, 식당 및 케이터링 서비스에 감면 세율을 적용하고, 사회보장기여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됨
- ▣ 포르투갈은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추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도입함
- ▶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고 매출 감소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하였으며, 초소형 혹은 중소기업의 인수 및 합병 시 결손금 이전을 허용함
 - ▶ 기업이 세무당국 혹은 사회보장국이 승인한 분할납부 계획을 준수하는 경우,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기업에서 발생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함
- ▣ 그리스는 2020년 3월 개인 위생용품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및 즉시 환급, 납부기한 연장 등 부가가치세 관련 조치를 먼저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는 법인세·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무행정 분야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보여주고 있음
- ▣ 스위스는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에 소극적인 국가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대응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 주(canton) 차원에서도 추크 주와 발레 주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받는 기업을 위해 2019 회계연도와 관련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음

- ▣ 영국은 2020년 3월부터 공공서비스 강화, 코로나19 영향 국민 지원, 재정위기 상황의 기업 지원을 목표로 꾸준히 코로나19 관련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등 실제법상 여러 가지 세액 공제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함
 - ▶ 신고기한·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관련 조치를 통하여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음

- ▣ 네덜란드는 2020년 4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안을 발표하며, 조세 관련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 2020년 3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조세 조치들을 다수 발표하였으며, 합병·분할 법인, 보건 분야 종사자, 국외 근로자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감면 조치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채택하였음
 -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시행 중인 조치들에 더하여 새로운 조치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음

- ▣ 이탈리아는 ‘Cure Italy Decree’, ‘Liquidity Decree’, ‘Relaunch Decree’의 3개 법령을 기반으로 2020년 3월부터 적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음

 - ▶ 납부기한 연장, 원천징수 유예, 유동성 강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무행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 노르웨이는 2020년 3월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기업을 위한 긴급 조세 조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도입하고 원천징수세, 부유세, 항공승객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 ▶ 이어서 여객운송, 영화관 등과 관련한 영역의 부가가치세율을 12%에서 8%로 인하하고, 2020년 5월 사회보장분담금 경감, 감가상각률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수정 예산안을 발표함

- ▣ 덴마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법안을 제정하여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개인사업자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기업의 법인세 계좌로 자동 환급되는 액수의 최대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함

- ▣ 독일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납세자 지원 조치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납부기한 연장,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기업의 유동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한 여러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도입함

 - ▶ 투자세법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영세기업, 예술인, 개인사업자에게 중간예납세액을 환급하였으며, 식당과 주점에 공급한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일시적으로 19%에서 7%로 경감함
 - ▶ 나아가 2020년 6월 경제활성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정책 패키지의 내용이 포함된 '제2차 코로나19 조세법안'을 제정하여 부가가치세율 인하 적용 범위 확대, 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액 한도 확대, 감가상각법으로 정률법 허용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함

- ▣ 룩셈부르크는 2020년 3월 긴급 조세정책을 발표하여 중간예납세액 면제, 법인세 등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정책을 도입함

- ▣ 스웨덴은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수정예산안을 통하여 각종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세정책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2020년 4월 사회보장분담금의 경감등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 스페인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관보에 게재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2020년 5월 문화산업 및 조세조치를 승인하는 법령을 통하여 영화 제작기업의 총생산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함

 - ▶ 2020년 3월부터 6월의 기간 동안 행정 절차의 일시적인 진행 정지 등을 포함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태'를 선포하여 적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였고, 일시적인 근로계약 정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회보장분담금을 경감함

- ▣ 오스트리아는 2020년 4월 코로나19 관련 긴급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조건을 완화하여 통근비용 소득공제, 퇴직한 의사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함

 - ▶ 2020년 6월 경제활성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여 부가가치세율 인하, 감가상각법으로

정률법 도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특정 소득 구간의 개인소득세율 인하 등의 정책을 도입함

- ▣ 프랑스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도입하여, 2020년 3월 개인사업자 및 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사업재산세, 부동산세와 관련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의료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함

 - ▶ 영세기업·중소기업은 코로나19 기간의 납부세액(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법인세)을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별 원천징수세를 다음 달로 이월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 핀란드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 관련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 가산세율 인하,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납부 조정 신청 허용,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 등의 정책을 도입함

〈표 III-2〉 유럽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조세 대응 조치

| 국가 | 분류 | 내용 |
|------|-------|---|
| 아일랜드 | 법인세 | ○ 조세통합법 Section 766에 근거하여 3회에 나누어 현금 지급하는 R&D 초과 공제세액과 관련하여, 2020년 지급 예정세액의 경우 각 분할 지급 예정일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 | 부가가치세 | ○ 보건서비스행정부(HSE) 및 의료관계자가 코로나19의 영향 혹은 위험 대상이거나 그에 대응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물품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 | 관세 | ○ 주요 제약 및 의약품의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세관에서 관련 품목에 관한 증빙 서류와 물품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Green’ 라우팅 등급을 부여함 |
| | 국제조세 | ○ 아일랜드 국외 근무자이나 코로나19의 결과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고용주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아일랜드 근로소득세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아일랜드로의 단기 출장자에 대한 기존의 근로소득세 감면 표준 기간은 아일랜드와 이중 조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경우 60일, 비과세 조약 국가 거주자의 경우 30일이었음 ○ 아일랜드 국경 간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의 결과로 아일랜드 내에서 재택근무를 한 날에 대해 과세 목적의 국내 근무일수로 포함시키지 않음 ○ 과세 목적상의 거주자 판단 시 코로나19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존 출국일을 넘어 아일랜드에 체류하게 된 일자리는 포함되지 않음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아일랜드 | 세무행정 | <p>2020년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스톡 옵션 제도와 관련된 2019년 수익 신고기한을 연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가 아일랜드의 국외 거주자에 대해 직원 자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특별 양도인 구제 프로그램(SARP)의 신청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추가적으로 60일을 연장함 ○ 외국인 고용주가 비즈니스 출장자 또는 외국인 직원의 아일랜드 근로 소득세 미적용에 대한 PAYE 허가를 요청할 때 적용되는 30일 통지 요건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음 ○ 매출액 300만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의 체납 이자를 면제하고 일부 조세 관련 집행 및 검토 활동을 중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2월의 부가가치세 및 2~3월의 고용주 원천징수세에 대한 체납 이자를 면제함 -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까지 조세 관련 모든 채무 집행 활동을 중단함 ○ 코로나19 기간 동안 체납된 세금에 대해 12개월간 낮은 연체 이자를 적용하는 부채 창고(warehousing) 제도를 발표함 ○ 2020년 3월 확정 예정이었던 RCT(Relevant Contract Tax) 요율 검토를 중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T는 건설, 임업 및 육류 가공 산업에서 원수급인이 하청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원천세임 ○ 세무조사 및 기타 규정 준수 관련 검사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가능한 경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진행함 |
| 벨기에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29일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조치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2~3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최대 2020년 4월 30일(2월분)과 2020년 5월 29일(3월분) 이내에 환급됨 ○ 2020년 4월 21일 코로나19 관련 적격 수혜자에게 기부한 의료 지원 장치 및 보조 부품, 보호 장비 및 의복(의약품 제외)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일시적인 법인세 공제를 허용함 ○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하는 경제적 결과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코로나 III(Corona III) 패키지를 도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된 기관에서 직원당 최대 300유로의 소비 바우처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이 법인세에서 공제됨 - 2020년 3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공제율을 투자액의 8%에서 25%로 인상하며, 2019년 투자에 대한 미사용 투자 공제 이월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확대함 - 2020년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주식 취득 관련 세금을 감면함 ○ 2020회계연도의 예상 손실을 사전에 이월하여 2019회계연도의 과세 대상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기업이 세금 선납금을 더 빨리 환급받거나 2020회계연도에 세금을 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한 해 동안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액에 대해 이월 가능하며, 최대 2천만유로까지 허용됨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벨기에 | 개인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에 최소 40유로 이상 가치의 의료 제품을 기증할 경우, 실제 가치의 45%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 임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등에서 사업체, 자영업자 및 개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됨 ○ 코로나 III 패키지를 통해 다음의 혜택이 제공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기부금 공제액은 기부한 총액의 45%에서 60%로, 2020년 순소득의 10%에서 20%로 인상됨 - 2020년 3월 14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영세기업의 신규 주식 취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함 |
| | 급여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5월 31일까지 최소 30일간 임시 실업조치를 적용받은 고용주에게 급여세 원천징수 일부 감면을 실시함 |
|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스크와 알코올성 젤, 식당 및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6%의 감면세율이 적용됨 |
| | 관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장관이 인정한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자선 기관이 벨기에 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됨 |
| | 국제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초월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덜란드 및 독일과 상호 합의를 체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유행병 기간 동안 직원이 재택 근무한 일자는 정상적으로 일했던 국가에서 근무한 날로 간주됨 -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직원이 업무 수행 없이 1일 이상의 근무일수 동안 집에 머물렀지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근무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합의함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 연방당국은 일련의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2~4월과 1분기 급여세 원천징수기한이 2개월 연장됨 - 법인세 신고일은 3월 16일에서 4월 20일로 변경되었으며, 2020년 3월 12일부터 확정된 2019년도 소득세 납부는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됨 -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 사이에 회계연도를 종료하는 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7개월임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희망하는 월별 신고자의 경우 2월과 3월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각 2020년 4월 3일과 5월 3일로 연장함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명세서 제출기한이 2020년 2, 3월분인 경우 2020년 4월 6일, 1분기분의 경우 5월 7일, 4월분의 경우 6월 5일로 연장됨 - 2020년 2~4월 및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됨 - 연간 판매 목록 제출 마감일이 2020년 4월 30일로 연장됨 - 회사의 분담금 납부기한이 2020년 6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연기됨 ○ 세무감사 일자가 2020년 4월 5일까지 연기됨 |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포르투갈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매출 감소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의 결손금 공제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늘리고,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2020년 7월 1일에서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적격 투자비용 (최대 500만유로)에 대해 최대 20%의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특별 투자 공제를 시행함 - 기업의 2020년 상반기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을 경우, 감소분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의 최대 50%까지 면제함 ○ 운영이 곤란한 초소형 및 중소 기업을 인수할 경우 보유 주식 비율에 근거하여 모회사의 연간 과세 대상 이익의 50%까지 세무상 손실의 이전을 허용함 |
|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민간 기관 및 비정부·비영리 단체에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치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상품의 국내 공급 및 EU 내 구매 시 적용되는 VAT를 면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면 마스크, 장갑, 보호복, 방수 코트 및 집중 호흡 보호구 등에 적용되며, 2020년 1월 30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이루어짐 ○ 2020년 5월 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안면 마스크 및 소독용 핸드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23%에서 6%로 인하함 |
| | 관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월 30일부터 2020년 7월 31일 사이 수행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무료로 배포하거나 사용하려는 상품의 수입에 대해 관세 감면을 적용함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르투갈 국세청은 일련의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법인세 신고기한을 2020년 5월 31일에서 2020년 7월 31일로 연장함 - 기업의 1차 분할 및 추가 납부기한을 2020년 7월에서 연체료 없이 2020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2019과세연도 간이사업 정보신고 마감일을 2020년 7월 15일에서 2020년 8월 7일로 연장함 ○ 기업이 세무당국 혹은 사회보장국이 승인한 분할납부 계획을 준수하는 경우,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기업에 발생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함 ○ 2019년 매출액이 1천만유로 이하이거나 2019년 매출액 없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활동을 시작하거나 재개한 납세자의 경우, 2020년 3월 및 1분기 부가가치세 환급은 전자송장시스템(e-fatura)를 통해 수행됨 |
| 그리스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당 법인세 환급 총액이 3만유로 이하인, 현재 예비 세금평가서 발행 전 단계에 있는 환급 청구 건의 경우 즉시 환급이 이루어짐 |
|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예비 세금평가서 발행 전 단계에 있는 납세자당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총액이 3만유로 이하인 경우 즉시 환급이 이루어짐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그리스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제품군[마스크 및 장갑, 소독제 및 소독제 원료(에탄올 등), 개인 위생을 위한 비누 및 유사 건강관리 제품 등]에 대해 기존 24%였던 부가가치세 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6%로 인하함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한 물품 기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30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납부 분할 대상이 되는 과세액을 25% 인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세와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 상속세, 게임세, 증여세, 부모기부세(parental donation tax)의 세금신고서 제출기한을 2020년 3월과 4월에서 2020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함 ○ 2020년 3월 1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인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과태료 또는 연체 이자 없이 2020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고용주와 직원 모두 2020년 2, 3월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기한을 6개월씩 연장함(2020년 9월 30일, 2020년 10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11일까지 미납된 사회보장기여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징수 유예함 ○ 2020년 3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또는 독립계약자의 할부 납세기한이 3개월 연장됨 ○ 자본집중세(Capital Concentration Tax) 및 인지세 신고마감일이 2개월 연장됨 |
| 스위스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크주와 발레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간접적으로 고통받는 기업을 위해 2019회계연도와 관련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밝히지 않았으며, 슈비츠주의 경우 별도 조항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일부 관세, 사회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체 이자율을 면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의 경우 할부 지불 또한 신청할 수 있음 - 원천징수세와 인지세에는 적용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의 빠른 정산 및 환급을 목표로 하여, 조기 환급 요청 검토를 우선순위로 둠 ○ 주(canton) 2019년 세금 신고 마감일은 2020년 3월 31일이었으나, 코로나 19 관련 구제 조치로 인해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주마다 5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연장됨 |
| 영국 | 법인세 및 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만 1천파운드(약 7,839만원, 2020. 9. 9. 기준) 미만 소득구간에 대하여 감면된 법인세율을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기업 대상 법인세율 감면(SBRR)이나 농어촌지역 세율 감면(rural rate relief)을 받는 기업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파운드(약 1,537만원, 2020. 9. 9. 기준)의 보조금을 지급함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영국 | 법인세 및 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유지 관련 조치(Job Retention Scheme)로서, HMRC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시 휴직 중인 근로자 임금의 80%(최대 2,500파운드)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등을 지급하며, 사업주는 2020년 8월분부터 위 HMRC지급분과 보조금 차액을 보전하여야 함 ○ 지정기부금단체(recognized charity)에 지급한 기부금 해당액을 세액 공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의료기기 생산 기업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의료기기 등 의료 관련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함 ○ 2020년 3월 6일에서 2021년 4월 21일까지 LISA계좌의 인출수수료를 종전 인출액의 25%에서 20%로 감면함 |
| |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정부는 2020년 7월 8일 사업자들이 2020년 7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의료, 숙박, 관광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 부가가치세율보다 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함 ○ 기부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12개월 동안 50파운드(약 7만원, 2020. 9. 9. 기준) 미만의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에도 공급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재판매 목적으로 기부된 물품의 경우 특정 요건하에 영세율이 적용됨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7월 31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소득세 납부기한을 2021년 1월 31일로 연장함(선택적) ○ 2020년 3월 20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당해 과세기간 말(2021년 3월 31일)로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MOSS(Mini One Stop Shop)제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을 적용하지 않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상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HMRC에 TTP(Time To Pay)를 신청하여 납부기한을 약 3개월 연장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신청기업은 기한 연장 필요성 등을 입증하여야 함 ○ 분기별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이미 일부 금액을 납부한 기업의 경우 HMRC에 신청하여 과납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분할납부 신청 기업이 아직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0년 3월 23일부터 1.10%의 감면된 가산금율을 적용함 ○ 사업주의 근로자 사회보험료 등 신고기한을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달리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출장·파견 등의 이동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2020년 5월 31일, 단기 출장 등 사업 관련 방문자의 경우 2020년 7월 31일이 연장된 신고기한임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MRC는 세무조사기한을 90일 연장하였고, 납세자의 처분불복기한을 3개월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심판원(First-tier Tribunal)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심의가 연장될 수 있음을 밝힘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0년 4월 14일 다음과 같은 정책안을 발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법적 형태 변경에 따라 불리한 조세 효과를 받지 않는 기간의 만료 시점이 2020년 3월 1일 내지 같은 해 5월 31일 내에 도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조세혜택 부여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기업이 회사 합병·분할에 따른 조세 감면 혜택을 소급하여 부여받 고자 하는 경우, 합병·분할계약 등은 조세 감면 혜택이 개시되는 일로부터 12개월(합병·분할) 또는 15개월(영업양수도) 이전에 체결되 어야 하고, 세무공무원은 이 조세감면혜택 기간이 2020년 3월 1일 부터 2020년 5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0년 4월 24일 기업 지원을 위하여 이직률이 하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대상 최저급여(normative salary)을 인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rmative salary'는 기업의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최소 한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소득임 - 재무부는 2020년 5월 6일 정책안을 승인하여, 2020년도 과세대상 최저급여는 2019년도 해당 금액에 일정 비율(2020년 1분기 이직률 /2019년 1분기 이직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발표함 |
| 네덜란드 | 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정부는 '시간 기준(hours criterion)'을 완화할 것이라 발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업인은 연간 최소 1,225시간을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시간 기준(hours criterion)을 충족하여야만 세액 공제 등 일정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대상 기업가들이 주당 2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함 |
|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 요건하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헬스케어 분야 근로 관련 아웃소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에 의료장비 등 의료 관련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피트니스 수업 기타 유사한 용역 제공의 경우 체육시설 개방 이전까지 기존 부가가치세율의 9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함 ○ 에너지세 또는 천연가스나 전기 등 대체에너지 관련 부가세의 환급 신청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함 ○ 납세의무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특정 요건하에 환급대상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사회보장부담금 등과 상계할 수 있음 - 환급대상자가 기업이고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그 기업이 월별 신고로 신고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조기 수령이 가능함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네덜란드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3월 12일부터 소급하여 다음과 같은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회보험료, 법인세, 재산세, 주세 등에 관하여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서면 신청에 의해 3개월 이상이라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 이행 장애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고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는 경우 · 기한 연장 대상 조세채무가 2만유로(약 2,798만원, 2020. 9. 9. 기준) 이상인 경우로서 전문가인 제3자의 서면이 별도로 구비된 경우 - 2020년 3월 23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율을 0.01%로 인하하여 운영함 ○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결손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기업은 2019년도 법인세 신고 시 일종의 납세준비금(tax reserve)을 신청하여 2020년도에 실제로 발생한 손실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9년도 법인세 확정세액을 낮출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손실은 2020년도에 발생하는 총손실을 초과할 수 없음 |
| 이탈리아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단체(ONLUS), 이탈리아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현금 또는 현물 기부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함 ○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방역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세액공제 대상비용의 범위를 넓게 설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관련 장비나 근로자들을 위한 방호복이나 소독제 구매,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방역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이후 2020년 8월 발표된 법령 개정안은 재무회계상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자산의 회계상 가치를 실제 가치와 일치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목적임 - 2019년 기말 재무상태표 기준 자산가액을 기초로 하고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 | 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단체와 개인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3만유로(약 4,196만원, 2020. 9. 9. 기준)의 범위 내에서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비영리(non-commercial) 파트너십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되며, 특히 파트너가 이탈리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배당액의 1.2%가 원천징수됨 ○ 개인, 파트너십, 기타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토지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이탈리아 | 부가가치세 및 기타 간접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등 의료 관련 재화 공급에 대하여 5%의 감면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함 ○ 2021년 1월 1일부터 예정된 부가가치세율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세율을 2021년도에도 그대로 적용함 ○ 플라스틱세와 설탕세 도입 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연기함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 재무부는 2020년 5월 6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020년 6월 30일로 2개월 연장함 ○ 이탈리아 재무부는 2020년 6월 30일 2019년도 FATCA 및 CRS 관련 신고기한을 2020년 9월 30일로 연장함 ○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2020년 4, 5월이 납부기한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부가가치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은 2020년 9월 16일까지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이 200만유로(약 28억원, 2020. 9. 9. 기준) 이하인 경우 2020년 9월 16일 이후 세액의 50%를 한도로 4회 내지 24회 분납을 허용함 ○ 납세의무자의 직전연도 매출액이 40만유로(약 5억 6천만원, 2020. 9. 9. 기준) 이하인 경우 2020년 3월 17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 ○ 2020년 3월 11일부터 차후 별도의 공지 시까지 세무조사 및 기타 조세 관련 심문 등은 중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 관련 기간도 진행되지 않고, 관련한 과세당국의 의무이행기한(세무조사기간, 부과체척기간, 불복기간, 예규질의 답변기한 등)도 상응하여 중단됨 |
| 노르웨이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 소급공제를 도입하여 3천만크로네를 한도로 직전 2년도의 이익과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D영역(자동차, 트랙터, 기계, 도구 등)의 감가상각률을 20%에서 30%로 일시적으로 확대함 ○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조세제도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수는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수 산정 시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자만 포함하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매출액 조건을 1,600만크로네에서 2,500만크로네로 인상함 |
|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여행업에 적용되는 경감 부가가치세율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12%에서 8%로 인하하고, 특정 기업(공영방송, 영화관, 박물관, 놀이공원, 스포츠 이벤트)에 적용되는 경감 부가가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함 |
| | 기타 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승객세(소비세)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않음 ○ 기업의 사회보장분담금을 2020년 5월, 6월 동안 4% 경감함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노르웨이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신고 및 각종 세목의 중간예납세 납부기한을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신고기한을 2020년 5월 31일에서 2020년 8월 31일로 연장함 - 기업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세는 2020년 4월 15일에서 2020년 9월 1일, 사회보장분담금 중간예납세는 2020년 5월 15일에서 2020년 8월 15일, 원천징수세는 2020년 3월 15일에서 2020년 5월 1일, 부가가치세는 2020년 4월 14일에서 2020년 6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의 납부기한을 첫 분기는 2020년 3월 15일에서 2020년 5월 1일, 두 번째 분기는 2020년 5월 1일에서 2020년 7월 15일로 연장함 |
|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21 사업연도의 R&D 세액공제액 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함 |
| | 기타 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마크와 스웨덴은 외레순드(Øresund) 해협의 통근자들과 관련한 조세 및 사회보장금 협약을 수정함 |
| 덴마크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세목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모든 신고 및 이전가격 서류 제출기한을 2020년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함 - 2020년 4월에서 10월이 기한인 개인소득세(A-skat), 부가가치세, 기업의 노동시장분담금(AM-bidrag)의 납부기한을 각 4개월 연장함 - 개인사업자의 소득세(B-skat)의 납부기한을 2020년 4월 20일에서 2020년 6월 20일로 연장함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경우 기존 월별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020년 3월에서 2020년 5월이었다면 각 1개월 연장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신고 및 납부는 2020년 9월 1일까지 가능하며, 영세기업의 경우 2020년 상반기, 하반기의 신고를 하반기에 할 수 있음 - 법인세 중간예납세의 기존 납부기한이 2020년 3월 20일이었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기업은 2020년 예상 수익의 경감 및 이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경감을 요청할 수 있음 ○ 일정 수익 이하의 기업에게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업에게 급여세(payroll tax)와 2019년도 과세소득의 1/4을 무이자 대출의 형태로 환급하고, 기업은 대출액을 2021년 4월 1일까지 상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수익이 500만크로네 미만인 기업은 2019년도 하반기, 연 수익이 500만크로네 이상 5천만크로네 미만인 기업은 2019년도 4분기의 부가가치세(2020년 3월 2일에 납부)를 환급함 - 기업이 2020년도 1분기 급여세를 2020년도 4월 15일 이전에 납부한 경우 급여세를 환급함 ○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 경감을 신청할 수 있음 |
| | |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덴마크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조기 환급하고 법인세 계좌에 자동으로 환급하는 환급세액의 한도를 확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R&D 비용을 2,500만크로네를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이러한 세액공제액은 기존 2020년 11월에 환급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0년 6월에 조기 환급함 - 과세관청이 기업의 법인세 계좌에 환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20만크로네에서 1천만크로네로 확대하고 2020년 3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적용함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연금수령자와 학생 포함)에게 일시 지원금으로 1천크로네를 지급함 |
| 독일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 소급공제액의 최대 한도를 100만유로에서 500만유로(합동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 1천만 유로)로 확대하고, 2019년도 법인세의 중간 예납세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급공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총소득의 30%를 경감할 수 있음 - 2020년 6월 30일부터 2026년 7월 1일 사이의 R&D 비용에 대하여 적격비용의 한도를 연 400만유로로 2배 확대함 - 일정 지분이 면세되는 증권펀드 및 혼합펀드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라고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지방세(trade tax)의 금융비용과 관련한 소득공제의 한도를 10만유로에서 20만유로로 확대함 ○ 2020/21 사업연도에 취득하였거나 생산한 유동고정자산(movable fixed assets)에 대하여 감가상각법으로 정률법(상각률 연 25%)을 재도입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일부 인상함 ○ 파트너십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규율 선택권을 부여함 ○ 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CFC 규정을 수정함 |
| | 개인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수당은 1,500유로를 한도로 하여 면세됨 ○ 근로자가 단축근로로 인하여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면세됨 ○ 자녀양육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한부모가정의 비과세소득 한도를 확대함 |
|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재화 공급의 경우 19%에서 16%, 용역 공급의 경우 7%에 5%로 인하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 식품, 의약품, 신문과 같은 재화에 적용되는 7%의 경감세율을 5%로 인하함 ○ 식당과 케이터링 서비스의 음식(음료 제외)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7%로 함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 기타 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 알코올로 소독제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조세 조항을 단순화함 ○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세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정함 ○ 코로나19 관련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병원, 양로원)에 대한 수입 기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 ○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와의 상호조약을 통해 재택 근무하는 거주자들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유지함 |
| 독일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세목에 대하여 신고, 납부 및 신청 기한을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 사업지방세 중간예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간예납세액 납부와 관련한 사업지방세 과세표준 재산정 신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함 -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지연가산세 부과 없이 연장하고 각 기업의 관할 세무서에 따라 연장기한은 달라지며, 연장신청 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개월이 연장되고, 추가적인 연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함 -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2020년 3, 4월의 사회보장분담금을 2020년 5월의 납부기한까지 연장함 - 고용주가 자신의 과실 없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월별·분기별 근로세의 신청 기간을 최대 2개월 연장함 - FACTA와 CRS 신고기한을 2020년 10월 31일로 연장함 - 관세청은 에너지세와 항공세 등의 납부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지연가산세 등을 면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가 코로나19로 직접 영향을 받은 경우 2020년 3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미납 벌금을 면제하고,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 기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지연가산세의 집행을 정지하고, 관세청과 중앙과세관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징수절차 유예 등 집행 절차 진행을 자제함 - 납세자에게 생계 곤란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세금 징수 개시 기간을 연장함 ○ 중간예납세액 등을 경감하거나 환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기업, 예술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019년도 및 2020년 3월 10일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일부 환급하고, 이는 일시적인 조치로서 납세자는 수익성이 회복되면 환급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의 소득이 2019년도의 소득보다 적은 납세자는 지방사업세, 중간예납세액 경감을 신청할 수 있음 -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세와 전기세의 중간예납세액 경감을 신청한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연방노동청은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사회보장분담금을 전액 환급함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매출액이 50% 감소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지원금(10인 미만 사업장에는 5천유로, 10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에는 12,500유로, 개인사업자에게는 2,500유로)을 면세함 ○ 신문사가 지급받은 지원금(정규직 기자 1인당 5천유로)을 면세함 |
| | 개인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지원금(3천유로, 3,500유로, 4천유로)을 면세함 ○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납세자의 소득공제액을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400유로에서 6,750유로로 확대함 |
| | 기타 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임차하는 건물의 임대료가 경감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1만 5천유로를 한도로 하여 경감액의 2배를 세액공제함 ○ 프랑스, 독일, 벨기에의 거주자가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채택근무를 한 경우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거주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를 불가항력으로 보아 코로나19 위기 기간을 앞선 비과세 혜택 조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 룩셈부르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세목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은 2020년 6월 30일로 연장함 - 법인세, 지방사업세, 부유세의 납부기한(기존 납부기한이 2020년 2월 29일 이후인 경우)을 4개월 연장함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함 - DAC6 실행과 관련하여 보고의무 시기를 연기함 - FACTA와 CRS 신고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0년 9월 30일로 연장함 ○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1, 2분기의 법인세 및 지방사업세의 중간예납세액을 취소하고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음 - 1만유로 미만의 부가가치세액을 자동 환급함 ○ 각종 절차와 관련된 기한을 연기하거나 정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심판 청구기간을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정지하고, 직접세와 관련하여 행정법원에 대한 소송 제기 기간을 연장함 - 과세관청이 과세와 관련하여 세액 산정, 경정, 징수,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연장함 -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소멸시효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자연가산세율을 월 0.6%에서 월 0.3%로 인하함 |
| | 세무행정 | |
| 스웨덴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 4월의 순매출이 2019년 3, 4월 순매출의 70% 미만인 자연인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1일부터 '기업 전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F-tax에 등록되어 있고 스웨덴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순매출이 25만 크로나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스웨덴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에서 2020년 6월 사이에 이익배당을 실행하였거나 결정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기업은 보험금, 피해 보상금, 국가 지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 - EU 또는 OECD의 조세 비협력 국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위치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 <p>○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소비자, 호텔, 요식업과 같은 기업에는 비용 산정 시 임대료를 50% 공제함</p> |
| | 개인소득세 | <p>○ 개인사업자 및 파트너십 법인의 파트너는 100만코로나를 한도로 2019년도 과세소득 전액을 장래에 발생할 결손금에 대비하여 준비금으로 예치할 수 있음</p> |
| | 기타 조세 | <p>○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을 경감하고, 원천징수세 신고 시까지 경감 신청을 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사회보장분담금을 근로자 1인당 월 5,300코로나를 한도로 면제함 - 근로자 1인당 월 급여가 2만 5천코로나 이하인 기업에게 적용되며, 기업의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 30인까지 면제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사회보장분담금을 10만코로나를 한도로 경감함 <p>○ 덴마크와 스웨덴은 조약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통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근자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p> |
| 스페인 | 세무행정 | <p>○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이 납부기한인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분담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연장하고, 중간예납세액은 12개월 연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기간 동안 연 1.25%의 가산금과 월 0.3%의 지연가산세를 부과하며,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월 0.3%에서 0.2%로 인하된 지연가산세를 부과함 <p>○ 중소기업은 2019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p> |
| | 법인세 | <p>○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산업에서 기술혁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21 사업연도에 투자한 비용의 12%에서 25%로 확대함 - 자동차 생산 기업이 환경친화적 모듈식 플랫폼 제조 구현과 관련하여 자산, 식물, 장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50만유로를 한도로 하여 임의 상각을 허용함 <p>○ 영화 제작기업에 대하여 제작비용이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 공제율은 20%에서 25%, 제작비용이 100만유로 이하인 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함</p> |
| | 개인소득세 | <p>○ 개인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경우에는 '경제적 세제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함</p>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스페인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단체, 클리닉, 병원이 의료 장비를 수입 및 공급한 경우 2020년 4월 23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함 ○ 2020년 4월 23일부터 디지털 도서, 신문, 잡지에 4%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함 |
| | 기타 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의 거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연장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함 ○ 2020년 3월 2일부터 2020년 5월 30일 사이에 신고한 100유로 이상 3만유로 이하의 관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함 ○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사회보장분담금과 관련한 혜택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경우 사회보장분담금의 75%를 경감하고, 직원이 5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하여는 100% 면제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1개월 동안 사회보장분담금 과세표준을 70%로 경감하여 산정함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세목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 60만유로 미만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및 산정 기한을 2020년 5월 20일까지 연장함 - 2019년도 매출 규모가 600만유로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기존 기한이 2020년 3월 13일에서 2020년 5월 30일 사이였던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개월 연장되고 납부 연장의 최대 한도액은 3만유로이며, 첫 3개월은 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영업활동을 중단하지 않은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사회보장분담금의 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사회보장분담금 납부기한 연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0.5%의 지연가산세를 적용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기와 가스 공급자로부터 보류된 송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기 및 탄화수소세(hydrocarbon tax)의 정산을 연기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함 ○ 납부기한 연장을 선택하지 않은 매출 규모가 60만유로 미만인 기업은 직전연도 소득 대신 2020년도 과세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인세액의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20년 10월에 중간예납세를 납부해야 하는 매출 600만유로 미만인 기업도 이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조세 절차와 관련한 기한을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과세관청의 집행을 위한 기간, 조세법상 규정된 법률 행위 및 권리 행사 기간 등을 정지함 -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은 납세자 및 과세관청 모두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 등을 정지함 - 2020년 3월 18일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조세 관련 절차(과세 처분에 의한 미납 조세 납부기한, 이미 조세 분할납부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분할납부 기한 등)는 2020년 5월 30일까지 기한을 자동 연장함 ○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주계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2020년 이를 포기하고 일반 조세 규정에 따라 순소득을 신고할 수 있음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는 과세소득의 75%를 한도로 하여 결손금 이월공제만 가능하였으나 2019년, 2018년 이익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500만유로를 최대 한도로 함 ○ 고정자산에 대한 새로운 투자에 대하여 투자 비용의 7%, 기후보호·디지털화·건강·생명과학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의 14%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 사이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28일 사이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며, 정부는 총 공제액의 한도를 10억유로로 하여 선착순에 의하여 혜택을 적용함 - 석유, 토지, 금융자산, 기업 전체 인수에 관련된 투자는 제외함 ○ 감가상각법으로 정률법을 허용하고 일정한 경우 가속상각을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자산, 이미 사용된 자산, 건물, 자동차, 석유와 관련된 식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법으로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첫해의 상각률은 최대 30%임 - 일반적인 상각률은 거주 건물의 경우 연 1.5%, 기타 건물의 경우 연 2.5%이나,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였거나 건설된 건물에 대하여 첫해에는 기존 상각률의 3배, 두 번째 해에는 2배, 세 번째 해에는 기존 상각률로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 공공기금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에 지급한 지원금을 면세함 |
| 오스트리아 | 개인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율이 25%였던 소득 구간(1만 1천~1만 8천유로)의 세율을 20%로 인하하고, 최상위 소득 구간(100만유로 이상의 소득)에 적용되는 55% 세율의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함 ○ 퇴직한 의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업무를 재개한 경우 기존 세제 혜택(사업의 매각 또는 해산으로 인한 이익은 50%만 과세)을 유지함 ○ 재택근무로 인하여 통근이 줄어든 경우에도 통근비용 소득공제 등 경감 혜택을 유지함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 수당의 실제 지급이 2020년에 이루어진 경우 3천유로를 한도로 하여 면세함 ○ 자녀 1인당 360유로의 자녀양육보조금을 1회 지급함 |
|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공급 및 국내 구매에 대하여 20%의 부가가치세율을 0%로 인하함 ○ 케이터링, 여행, 문화에 대한 경감 부가가치세율을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0%에서 5%로 인하함 |
| | 기타 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세함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세목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을 2020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라 미신고가산세를 2020년 8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않음 -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기업은 기한 전에 분할납부 가능하며 지연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2021년 1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함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오스트리아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16일 이후에 개시된 이의신청 기한을 2020년 5월 1일까지 연장함 ○ 중대한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분할납부에 동의한 경우에는 법인세, 개인 소득세 중간예납세의 납부를 면제함 ○ DAC6 실행과 관련하여 보고의무 기한을 연장함 |
| 프랑스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임대차 채무액 일부 경감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인이 사업연도가 2020년 4월 15일 이후에 종료되는 기업 임차인에게 2020년 4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차료 채무를 면제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면제액을 소득공제함 - 임차인에 대하여는 면제액을 결손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100만 유로로 확대함 |
|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24일부터 마스크 및 방역복, 2020년 3월 1일부터 개인 위생 용품, 2020년 4월 27일부터 이러한 용품이 수입품인 경우 부가치세율을 20%에서 5.5%로 인하함 ○ 기업이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을 병원·양로원 등에 무상증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세액이 산입되지 않음 |
| | 기타 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이후 매출이 급락한 50인 이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2020년 3월과 5월 사이의 사회보장분담금을 50%만 부담하거나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음 ○ 코로나19와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세가 가능함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세목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신고기한(이전가격 신고기한을 포함)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은 온라인 신고는 15일, 서류 신고기한은 1개월 연장함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0년 5월 5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연장됨 - 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사회보장분담금의 월별 납부액, 사업재산세, 토지세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4월에서 12월 사이의 월별 원천징수세 납부를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으며 최대 3회 허용되고, 분기별 납부인 경우에는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음 - 관광, 요식업, 문화 및 스포츠 분야의 영세 및 중소기업의 사회보장분담금 납부를 유예함 - 3월 이후 영업활동으로 50% 이상의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장분담금 납부를 최대 36개월간 유예함 - 모든 기업에 대하여 직접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을 허용하고, 대기업은 2020년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와 원천징수세의 납부기한은 연장하지 않음 - 2020년 3월 및 4월의 부가가치세 환급 및 납부 조건을 완화하여 80%만 미리 지불하거나, 영업장을 폐쇄 또는 영업활동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는 80% 또는 50%만 납부하는 것도 가능함 |

〈표 III-2〉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프랑스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밖에 사업장이 있고 프랑스와 거래하지 않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기한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 -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규모과세제도, 정상과세제도 등에 대한 신청기간을 연장함 ○ 납부세액 분할납부, 납부유예 및 납부 관련 조정을 허용함 -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은 코로나19 기간의 납부세액(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법인세)을 3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기업은 그러한 위기로 인하여 납부가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세 감액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기업은 사업재산세와 부유세의 월별 부담액의 납부를 유예하고 미납세액의 납부와 관련한 조정을 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는 세율과 원천징수세액을 과세관청과 조정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중간예납세액 등을 조기 환급함 - 부가가치세 및 2020년도 법인세, 소득세 공제 환급액에 대하여 신고기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기 환급함 - 채택근무 및 16세 미만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보험료를 환급함 - 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및 특정 조건하의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은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새로운 세무조사를 개시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을 제외하고는 절차적 행위(통지 및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함 ○ 소멸시효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함 ○ FACTA 및 CRS 신고기한을 연장함 |
|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사·치료·예방 물품의 부가가치세율을 0%로 인하함 |
| 핀란드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연금기금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조정을 허용함 -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세 납부 조정을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음 -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금공단은 연금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함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입증되는 경우 추후 상황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환급하며, 이는 일종의 대출 형태로 3%의 이자가 적용됨 ○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함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3호~제20-6호, 2020.

KPMG, "COVID-19 Global Tax Developments Summary," updated August 30, 2020.

OECD, "COVID-19 tax Policy and other measures," <https://www.oecd.org/tax/covid-19-tax-policy-and-other-measures.xlsm>, 검색일자: 2020. 9. 7.

3 아시아

- ▣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조치를 발표하고,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내용을 일부 개정함

 - ▶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세금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기하고, 결손금 소급공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재택근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

- ▣ 중국 재무부 및 국세청은 2020년 2월 후베이성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함

 - ▶ 조세정책의 주요 내용은 신고납부 기한 연장,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감면, 코로나19 예방 및 구호 물품에 대한 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등임

- ▣ 홍콩 정부는 2020년 4월 및 5월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을 발표하여 각종 신고납부 기한 연장, 코로나19와 관련한 보조금의 세금납부 면제를 도입함

- ▣ 싱가포르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0년 3월 및 4월에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 ▶ 법인세 감면,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가속상각제도 도입 및 각종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짐

- ▣ 인도네시아 경제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을 발표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수입세 면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절차 등을 도입하였고, 2020년 5월 추가 정책을 발표해 조세혜택 적용대상을 확대함

- ▣ 인도 재무부장관은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조세정책으로 각종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부지연 이자 및 과태료를 경감함

〈표 III-3〉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조세 대응 조치

| 국가 | 분류 | 내용 |
|----|-------|--|
| 일본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10억엔(기준 1억엔) 이하의 법인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함 - 2020년 2월 1일 및 2022년 1월 31일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적용되며,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시작일로부터 1년 까지 소급할 수 있음 - 법인세 신고를 2020년 7월 1일까지 완료한 법인에 한하여 적용함 ○ 중소기업이 원격근무를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소프트웨어, 설비투자 등에 대하여 100% 상각 혹은 7% 세액공제를 적용함 - 자본금이 3천만엔 이하인 소기업은 10% 세액공제 적용함 - 2020년 3월 31일까지 신규 자산을 구입하여야 하며, 승인에 따라 취득해야 함 - 세액공제 혜택은 기타 공제와 합산하여 납부세액의 최대 20%까지 허용함 |
| | 개인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취소된 예술·문화공연·스포츠 티켓을 환불받지 않기로 결정한 개인의 납부금액을 기부금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
|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간 동안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법인은 소비세 환급여부 신청 내역을 변경할 수 있음 -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소 한 달 이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철회할 수 있음 |
| | 기타 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타 조세 혜택을 적용함 - 특별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를 면제함 - 재산세(상각대상 자산 및 주택) 과세표준을 절반 또는 0으로 인하함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를 은행에서 자동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2020년 5월 15일, 19일까지 연장함 ○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 원칙적으로는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하나 납세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조정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1년의 특별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업소득이 20% 이상 감소하였음 -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2월 1일 사이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국세를 납부하기 어려움 - 국세 납부기한까지 소득의 감소, 재고자산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
| 중국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업, 케이터링, 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업종은 2020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5년에서 8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신기술산업, 중소 기술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결손이 크게 난 경우 해당 결손금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

〈표 III-3〉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중국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전액 공제함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기계설비 등 투자금액을 100% 즉시상각할 수 있음 |
| | 개인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하여 근무하는 의료진이 받은 수당은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면제함 ○ 개인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개인소득세 계산 시 전액 공제함 ○ 후베이성 지역의 자영업자와 파트너십 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VAT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베이성 지역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기타 지역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는 3%에서 1%로 인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경감세율 및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호물품의 수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의료서비스, 케이터링,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미용, 세탁, 대중교통, 배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 기타 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월에 신고된 관세는 2020년 2월 24일까지 전자납부할 수 있음 ○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호물품의 수입 및 기부금은 관세·소비세를 면제함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첫 번째 신고납부 기한까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음 ○ 세금 납부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 2021년도 신고납부 기한에 재납부할 수 있음 |
| 홍콩 | 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수혜받은 보조금은 과세소득에서 면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 및 직원은 소득세 신고 시 면제금액을 신고할 필요 없음 - 이미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 또는 개인은 국세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20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함 ○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2월 29일 사이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말 3개월 이내에서 2020년 6월 1일까지로 연장함 ○ 2018/19 사업연도의 급여세, 사업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 수수료를 면제함 ○ 정부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의 기한은 국세청이 재개하는 시점까지 연장함 |
| 싱가포르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을 1만 5천싱가포르달러 한도 내에서 25% 감면함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대상 기간을 직전 3개 사업연도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싱가포르달러 한도가 적용됨 |

〈표 III-3〉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싱가포르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및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금액을 2년에 걸쳐 가속상각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에 지출금액의 75%를 상각하고 2022년에 25%를 상각할 수 있으며, 이연은 불가함 ○ 2021년도 리노베이션, 재정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전부 상각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기존 규정(3년에 걸쳐 상각)에 따른 30만싱가포르달러 한도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됨 |
| | 개인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에서 근무하였던 비거주자가 주식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이 싱가포르 세법상 간주이익보다 적은 경우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싱가포르 예산안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GST를 7%에서 9%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2021년에는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함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자동적으로 3개월 연장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 예상과세소득(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신고 시 무이자 할부 납부기한은 자동적으로 2개월 연장함 ○ 각종 세금의 신고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4월, 5월까지의 비거주자에 대한 신고기한은 2020년 6월 30일 까지로 연장함 - 개인소득세 및 파트너십 소득세 신고기한은 2020년 4월 18일에서 2020년 5월 31일로 연장함 - 클럽·신탁·협회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2020년 4월 15일에서 2020년 5월 31일로 연장함 - 2020년 1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ECI의 신고기한은 2020년 4월 30일에서 2020년 5월 31일로 연장함 - 2020년 3월 말의 GST 신고기한은 2020년 4월 30일에서 2020년 5월 11일로 연장함 |
| 인도네시아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2021년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며, 2022년도에 20%로 인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의 이상의 공모주를 가지고 있는 상장사는 추가로 3%를 인하함 ○ 의료기기 또는 가정용 의료용품을 구매하는 비용은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함 ○ 국립재난기관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 내는 기부금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월별 선납법인세를 30%까지 감면함 ○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연간 총 매출액이 48억루피아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0.5%의 최종분리과세를 면제함 |
| | 개인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소득이 2억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함 ○ 코로나19를 위하여 근무하는 의료진의 추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함 |

〈표 III-3〉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인도네시아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액이 50억루피아(기존 10억루피아) 이하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조기 환급됨 - 비수출업자는 상기의 한도 이내에서, 수출업자는 한도 없이 적용함 -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 | 기타 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 병원 등 코로나19를 위한 물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특례를 적용함 ○ 수출입기업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세·관세를 면제함 ○ 토지·건물 등 자산을 임대하는 납세자의 원천징수세를 면제함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2020년 4월 30일까지 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함 ○ 조세 사면을 위한 세무행정절차 기한을 연장함 - 이익제기 기한을 3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함 - 과납세액의 환급기한을 1개월 연장함 - 과태료 감면, 과납세액의 환급, 경정금액의 취소처분, 세무조사 결과의 취소처분에 대한 요청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함 |
| 인도 | 기타 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산소호흡기, 보호장구,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부품의 수입은 관세를 면제함 ○ 관세 승인 절차를 자동화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절차를 수행하도록 함 ○ 특정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25%를 감면함 - 대상거래에는 계약 지급수수료, 전문가 수수료, 이자비용, 임대료, 배당·중개수수료 및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아닌 지급액이 해당됨 ○ 2020년 3월 22일 이전에 인도를 방문한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 시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기간을 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3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직접세 납부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 2018/19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기한을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11월 30일로 연장하며, 지연이자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2018/19 GST 신고기한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 ○ 세무조사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함 ○ 예납세액, 원천징수, 증권거래세, 물품거래세 등 납부에 대한 각종 지연 이자를 9%로 감감함 ○ 매출액 5천만루피 이하인 법인·사업자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기간의 GST 신고기한을 2020년 6월 30일로 연장하며, 지연이자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매출액 5천만루피 이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GST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기존 18%에서 9%로 감감된 지연이자를 부과함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3호~제20-6호, 2020.

KPMG, "COVID-19 Global Tax Developments Summary," updated August 30, 2020.

OECD, "COVID-19 tax Policy and other measures," <https://www.oecd.org/tax/covid-19-tax-policy-and-other-measures.xlsm>, 검색일자: 2020. 9. 7.

4 오세아니아

- ▣ 호주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관련 사안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 및 질의회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 ▶ 주요 조세정책으로 즉시상각제도, 신규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보조금 지급, 재택근무 비용공제, 납부기한 연기 및 이자 면제 등이 있음

- ▣ 뉴질랜드 재무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관련 사안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 ▶ 주요 조세정책으로 상업용 빌딩의 감가상각 재도입, 소득세 예납대상 기준금액 인상, 보조금 지급, 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 면제 등이 있음

〈표 III-4〉 오세아니아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조세 대응 조치

| 국가 | 분류 | 내용 |
|----|-----|--|
| 호주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2월 31일까지 즉시상각자산의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자산의 구매가액이 15만호주달러(기존 3만호주달러) 이내인 경우 해당 자산을 즉시상각할 수 있음 - 적용대상 기업은 연간 총매출액 5억호주달러(기존 5천만호주달러) 미만인 기업에 해당됨 ○ 사업투자 지원정책을 통해 신규 출자의 50%를 가속상각하여 공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 매출액이 5억호주달러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사용하거나 설치한 감가상각자산가액의 50%를 구입한 해에 가속상각할 수 있음 ○ 채권자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채무자의 부채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채탕감으로 보지 않음 ○ 고용자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혜택은 부가급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에게 제공된 차량을 재택근무로 인하여 운행하지 않은 경우 - 비상상황에 따라 숙박, 음식, 교통편을 제공한 경우 - 재택근무를 위한 비품을 제공한 경우 - 코로나19에 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진단검사 포함) ○ 고용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현금 보조금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 매출액이 5천만호주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5만호주달러를 한도로 피고용인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1만호주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표 III-4〉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호주 | 개인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개인은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연금펀드에서 2019/20 사업연도 및 2020/21 사업연도 각각 1만호주달러까지의 금액을 면세로 인출할 수 있음 ○ 재택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공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고용주에게 지급받지 못하거나,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추가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함 - 실제 사용금액, 고정률법, 간편법에 따라 추가 비용을 계산하여 공제함 |
|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신고를 월별 신고로 변경하여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 | 기타 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가운, 장갑, 고글,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에 사용되는 물품의 비상업적 목적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며,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코로나19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함 ○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 시 체류기간 요건을 완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 판정 대상 체류기간으로 합산하지 않음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부가급여세, 소비세, PAYG할부금을 6개월까지 납부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2020년 1월 23일 이후에 발생한 미납지연이자 및 가산세를 면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 현존하는 조세채무에 대한 이자를 경감하여 저율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PAYG할부 적용대상 기업은 할부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분할납부하는 법인은 2020년 1분기 보고서 신청 시 할부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할부이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거 납부한 할부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을 일시적 또는 장기간 중단하게 된 경우 GST 등록 및 사업등록을 해제할 필요 없음 |
| 뉴질랜드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21 사업연도부터 상업용 및 공업용 빌딩에 대한 감가상각을 재도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주거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 상각률은 정률법인 경우 2%, 정액법인 경우 1.5%가 적용됨 ○ 2019/2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환급 가능하도록 함 ○ 임시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2020년 4월 27일부터 도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20 및 2020/21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결손금을 직전 1개 사업연도까지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코로나19의 상당한 영향을 받은 농업·어업·식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2020년 6월 30일까지 2019년 소득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2020/21 사업연도 소액자산에 대한 일시상각 기준 한도를 500뉴질랜드 달러에서 5천뉴질랜드달러로 인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22 사업연도에는 기준 한도를 1천뉴질랜드달러로 변경함 |

〈표 III-4〉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뉴질랜드 | 개인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일할 수 없는 사업자, 계약사업자, 자영업자에게 자가격리 보조금을 지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된 보조금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개인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2020년 3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고용주가 개인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주당 15뉴질랜드달러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면제함 ○ 소규모기업은 2020년 5월 12일부터 0~3% 이율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대출금액은 1만뉴질랜드달러에 정규직 종업원 1인당 1,800뉴질랜드달러를 가산한 금액임 ○ 개인이 재택근무 시 발생한 전기·인터넷·휴대폰 요금 등은 소득에서 공제 가능함 |
| | 기타 조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 개인은 이동제한이 풀린 이후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뉴질랜드를 떠나야 뉴질랜드 거주자로 판정받지 않으며, 이동이 가능함에도 뉴질랜드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코로나19로 인해 임원 등이 뉴질랜드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예납대상 기준금액을 연 2,500뉴질랜드달러에서 5천뉴질랜드달러로 인상함 ○ 법인세, GST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함 ○ 2020년 2월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 및 기타공과금에 대한 지연납부 이자를 면제함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3호~제20-6호, 2020.
 KPMG, “COVID-19 Global Tax Developments Summary,” updated August 30, 2020.
 OECD, “COVID-19 tax Policy and other measures,” <https://www.oecd.org/tax/covid-19-tax-policy-and-other-measures.xlsm>, 검색일자: 2020. 9. 7.

5 국제기구

- ▾ OECD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각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세정책 등을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
- ▶ 각국 과세관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및 진행 중인 정책을 정리하는 보고서, 국외 근로자 세무상 지위에 관련된 조세조약상 쟁점에 관한 보고서, 코로나19로 인한 과세관청의 개인정보침해 위험 등을 지적한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방안을 위한 보고서 등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함

- ▣ EU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을 위하여 EU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함
 - ▶ 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 지침, DAC6에 따른 의무보고제도 등 EU 차원에서 시행 예정이었던 추가적인 조세제도 개편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연기함
 - ▶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세액 공제 등 조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정 조항들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도 함

〈표 III-5〉 국제기구(OECD, EU)의 코로나19 관련 조세 대응 조치

| 국가 | 분류 | 내용 |
|------|----|--|
| OECD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는 국외 근로자 및 국외에 체류 중인 개인에 대한 조세 관련 권고 사항을 발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사업장 창설 문제,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 관련 문제, 개인의 거주자 여부 판단 문제에 관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아주 긴밀한 협력이 요청됨 ○ OECD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세 및 재정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국가들이 전례 없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책을 취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 및 기업 지원방안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수 있음 - 개발도상국들은 현재의 코로나발 쇼크를 극복하고 보건 및 재정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특히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정정책의 목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기,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결손금 이월 관련 기준 완화, 면제 또는 세액공제 활용 등의 조치들을 포함함 - 여러 국가들은 단축근무나 근로보조금 등 정책을 통하여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였고, 병가 또는 유급휴가 기준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계소득 지원을 확장하였음 ○ OECD는 2020년 5월 4일 코로나19가 정부 재정 및 세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웹세미나를 개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으로 정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 국가들이 국민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다면적 조치들에는 필연적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요청되고, 이는 국가 재정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들이 취한 조세정책은 주로 현금흐름에 문제를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 신고·납부와 관련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들임 - OECD는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자가격리 방침 시행으로 국외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지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조약상 지침을 제공함 ○ OECD는 2020년 5월 26일 여러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경기회복 계획 설계를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코로나19와 연관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공개, 사기 등의 위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자에서는 원격근무 확대의 결과로 발생하는 정보 보안 관련 문제 및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방안 등을 권고하고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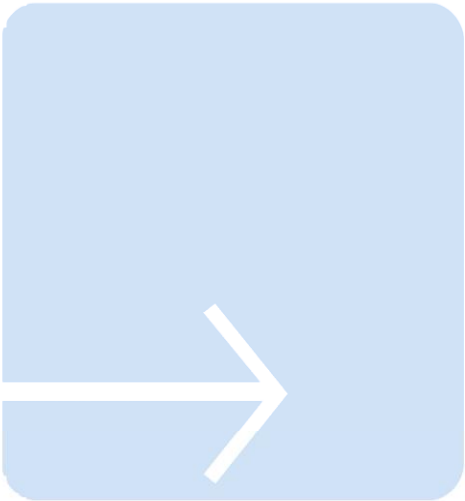
〈표 III-5〉 의 계속

| 국가 | 분류 | 내용 |
|----|-------|---|
| EU | 법인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4월 3일 Temporary Framework의 적용 범위를 코로나19 해결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R&D로 확장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회복하기 위한 정책안을 제안하였고, 이 중 조세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내 플라스틱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포장 무게 1kg당 약 0.8유로(약 1,100원, 2020. 9. 9. 기준)의 세금을 부과함 - 2023년부터 이산화탄소(CO2) 배출세를 부과할 계획이 있으나, 이는 국가 간 조정(border adjustment)이 필요한 사안이고 조세의 형태로 부과될지도 미정임(현재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임) |
| | 부가가치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장비, 보호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지침을 당초 2021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6개월 연기하여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임을 밝힘 |
| | 세무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4월 3일 Temporary Framework에 납부기한 연장 및 사회보장분담금 유예 등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함 ○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0년 6월 24일 행정 협조를 위한 지침(DAC) 개정안을 채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아래 사항의 이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간 EU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s)과 DAC2에 따른 금융계좌 자동정보교환 - 회원국 간 의무보고제도(MDR) 및 DAC6에 따른 신고제출서류 교환 - 특히 DAC6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보고대상 역외거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6월 25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과거 거래의 보고 기한은 기존의 2020년 8월 31에서 2021년 2월 28일로 연장 가능함 · 보고의무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보고 대상 거래는 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위 조항의 효력발생일을 기존의 2020년 7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연기함 · 보고된 거래에 관한 첫 번째 정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2021년 4월 30일임 ○ 유럽연합 이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무행정적 조치는 1회, 최장 3개월에 한하여만 가능하며, 앞선 조치들의 연장 가능성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엄격한 조건하에 검토하기로 함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3호~제20-6호, 2020.
 KPMG, “COVID-19 Global Tax Developments Summary,” updated August 30, 2020.
 OECD, “COVID-19 tax Policy and other measures,” <https://www.oecd.org/tax/covid-19-tax-policy-and-other-measures.xlsm>, 검색일자: 2020. 9. 7.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캐나다

1 미국

가. 유자격 기회 펀드(QOF) 투자 관련 최종 규정 발표

[조세동향 20-01호]

- ☑ 2020년 1월 3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유자격 기회 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 이하 'QOF') 지분의 연방소득세 혜택에 관한 세부 시행사항을 다룬 최종 규정인 D9889를 발표함²⁰⁾

 - ▶ 트럼프 정부는 Tax Cuts and Jobs Act의 Section 1400Z-2에서 QOF를 통해 유자격 기회 구역(Qualified Opportunity Zone)에 장기 투자 시 주어지는 연방소득세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TD9889에서 세부 시행사항을 논의함
- ☑ Section 1400Z-2에 규정된 QOF 관련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음

 - ▶ 국세법 Section 1231에 규정된 상업용 부동산 및 기타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발생한 이익을 180일 이내에 QOF에 재투자할 경우 소득을 이연시킬 수 있음
 - Section 1231에 규정된 수익은 2019년 12월 31일 발생분부터 적용됨²¹⁾
 - QOF의 첫 매도 때까지, 혹은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 소득 이연이 가능함
- ☑ TD9889에서는 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세부 지침 및 QOF 참여 자격 충족 요건 등의 내용을 다룸

20) News IBFD, United States - Final regulations issued on investing in qualified opportunity funds(Jan 14, 2020).

21) DLA Piper, Taxpayers take note - first important QOZ program investment date is 12/31/2019, <https://www.dlapiper.com/ko/korea/insights/publications/2019/12/taxpayers-take-note-first-important-qoz-program-investment-date>, 검색일자: 2020. 1. 31.

나.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수당 세금 공제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3회]

- ▶ 2020년 3월 18일 미국 의회는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을 발표함²²⁾
 - ▶ 본 법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용한 유급 휴가에 지불한 수당에 대한 세금 공제 조치가 포함됨

 - 동법에서 5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혹은 현 상황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피고용인이 사용한 유급 휴가에 수당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음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피고용인이 사용한 병가 및 가족휴가에 고용주가 지불한 수당을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세(이하 ‘FICA세’)²³⁾의 고용주 부담분에서 공제함

 - ▶ 최대 공제 기간은 총 10일이며, 본인이 확진자로서 병가 사용 시 1일당 511달러,²⁴⁾ 가족 돌봄의 경우 1일당 200달러²⁵⁾ 한도임
 - ▶ 공제액이 FICA 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가능함
 - ▶ FICA세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는 자영업자 대상의 자영업세에도 해당 법안이 동일하게 적용됨

- ▶ 본 법안에 근거하여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급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수당을 지급받은 피고용인의 경우 소득세 산정 시 총소득에서 제외됨

22) US Congress, H.R.6201 -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201>, 검색일자: 2020. 3. 26.

23) FICA세는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각각 7.85%(사회보장세 6.2% + 의료보장세 1.45%)씩 부과되고 있음(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taxtopics/tc751>, 검색일자: 2020. 3. 26.)

24)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2만 6천원임

25)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만 5천원임

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조세동향 20-03호]

- ▾ 2020년 3월 17일 미국 재무부 및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 대해 90일간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발표함²⁶⁾
- ▾ 2020년 4월 15일부터 90일간 개인 및 비법인(non-corporate)은 최대 100만달러²⁷⁾, 법인은 1천만달러²⁸⁾까지 납부 연기에 따른 이자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 ▶ 소득 신고기한은 기존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인 2020년 4월 15일에서 변동되지 않음
 - 이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납세자를 고려한 조치로, 세금 환급 대상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환급이 가능함

라. 코로나19 대응 CARES Act 제정

[조세동향 20-04호]

- ▾ 2020년 3월 27일 미국 의회는 법인 및 개인 대상 세금 감면 조항을 포함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 및 경제안전법(CARES Act)’을 제정함²⁹⁾
- ▾ 법안에 포함된 법인 대상 세금 감면 혜택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2019년과 2020년의 사업이자 공제 한도가 조정과세소득의 30%에서 50%로 확대됨
 - ▶ 기업의 식료품 기부 혹은 자선단체에 대한 현금 기부의 공제 한도가 과세소득의 10%에서 25%로 인상됨
 - ▶ 현행법상 이월이 허용되지 않던 기업의 운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es: NOL)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을 허용함

26) 미국 재무부, Treasury and IRS Issue Guidance on Deferring Tax Payments Due to COVID-19 Outbreak, 2020. 3. 18.,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948>, 검색일자: 2020. 3. 19.

27)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억 2,500만원임

28)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2만 5천원임

29) US Congress, H.R.748 - CARES Act,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748/BILLS-116hr748enr.xml>, 검색일자: 2020. 4. 28.

- ▶ 고용주 및 자영업자는 직원 임금에 6.2%의 요율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세의 2020년 고용주 부담분 납부를 연기할 수 있음
 - 납부 연기 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연 금액의 5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50%를 납부해야 함
- ▶ 2020년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가 지급한 적격 임금의 50%에 대해 급여세 공제 혜택이 제공됨
 - 코로나19 관련 폐쇄 명령으로 운영이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되었거나,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고용주에 한함
 - 추후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분기 말에 공제 혜택이 종료됨
 - 정규직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폐쇄 명령에 의해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정규직 100명 이하인 경우 모든 직원의 임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제 한도는 건강 수당까지 포함하여 1만달러³⁰⁾이며, 2020년 3월 13일에서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임금에 대해 적용됨

☑ 개인은 본 법안을 통해 다음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 개인사업자의 초과 영업손실 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폐지됨
- ▶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적격 자선단체에 대한 현금 기부금은 300달러³¹⁾까지 우선 공제가 허용됨
 - 항목별 공제를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 조정과세소득의 최대 100%(현행 50%)까지 공제가 허용되고, 공제액 초과 시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함
- ▶ 코로나19 확진자 및 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나, 검역 및 단축근무, 보육, 휴업 등 코로나19 또는 재무부장관이 결정한 기타 요인으로 인해 재정적 곤란을 겪는 개인 운영 사업체들에 대해 퇴직연금 관련 혜택이 제공됨
 - 퇴직연금 조기 인출 시 최대 10만달러³²⁾까지 수수료가 면제되며, 조기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3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함

30) 2020. 4.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20만원임

31) 2020. 4.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만 6천원임

32) 2020. 4.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195만원임

-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행하는 퇴직연금 대출의 한도액이 현행 5만달러³³⁾에서 10만달러로 인상되고, 대출기한 역시 기존 5년에서 연장 가능함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2020년은 최소인출액(RMD) 조건이 면제됨
- 72세 이상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급자에게는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 제약 조건이 존재하였음

다. 혼성 계약 과세 관련 최종 규정 발표

[조세동향 20-04호]

- ▣ 2020년 4월 8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혼성 계약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인 TD9896을 최종 발표함³⁴⁾
 - ▶ 미국과 외국 관할권의 세법에 따라 거래 또는 실체가 다르게 취급되는 계약에 영향을 미침
- ▣ 양 국가에서 동일한 공제가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중 연결 손실 (dual consolidation losses) 및 사업체의 세금 분류 규칙들에 대해 다룸
 - ▶ 특정외국법인(CFC)으로부터 국내 법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혼성 공제
 - ▶ 외국법에 따라 공제 혹은 기타 이익이 발생하는 지분에 대한 도관금융 규정
 - ▶ 특정외국법인(CFC) 및 주주의 글로벌 무형자산에 대한 저율 과세(GILTI) 조항에 따른 특정 지불 실격 처리에 관한 규칙
- ▣ 이에 따라 본 지침에서는 특정외국법인(CFC)으로부터 받은 혼성배당금에 대한 공제와 혼성 단체나 혼성 거래에 대한 이자 및 로열티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33) 2020. 4.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98만원임

34) News IBFD, United States - Regulations on hybrid arrangements, conduit financing and dual consolidated losses issued(Apr 9, 2020).

바. 코로나19 관련 거주자 판단 체류 기간 감면 조치 시행

[조세동향 20-05호]

- ▼ 미국 국세청은 지난 4월 21일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제한으로 출국이 곤란한 외국인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 판단 체류 기간을 완화하는 ‘Revenue Procedure 2020-20’을 발표함³⁵⁾
- ▼ 과세 목적의 미국 거주자 판단 시 개인에게 질병 등 의료적 문제가 발생하여 체류한 기간은 제외되는데, 코로나19 비상 기간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함

 - ▶ 미국 거주자 판단 요건은 미국에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체류하였거나, 일정 비중을 반영한 3개 연도의 체류일이 183일 이상인 외국인임

 - 3개 연도의 체류일은 ① 대상 연도 체류일 ② 전년도 체류일의 1/3 ③ 전전년도 체류일의 1/6의 합산으로 산정함
 - ▶ 이때 의료적 문제가 발생한 개인의 경우 Form 8843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체류 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 코로나19 비상 기간 여행 중단으로 인해 적시에 미국을 떠나지 못한 적격한 개인은,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체류 기간 중 연속 60일까지 제외시킬 수 있음

 - ▶ 코로나19 비상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의 일자에 해당함
 - ▶ 본 절차에 따라 Form 8843을 제출한 적격한 개인은,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 별도의 신청 혹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의도가 아닌 불가피한 체류로 간주함

 - 이때 적격한 개인이란 ① 2019년도 말에 과세 목적의 미국 거주자가 아닌 자 ② 2020년 영주권자가 아닌 자 ③ 코로나19 비상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한 자 ④ 코로나19 비상 기간 외 미국 내 체류 기간이 미국 거주자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

35) IRS Revenue Procedure 2020-20, <https://www.irs.gov/pub/irs-drop/rp-20-20.pdf>, 검색일자: 2020. 5. 22.

사. 코로나19 관련 개인의 국외 임시 활동 인정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5회]

- ▼ 미국 국세청은 지난 5월 7일, 코로나19에서 기인한 미국 외 지역에서의 개인별 임시 활동을 인정하는 ‘Revenue Procedure 2020-30’을 발표함³⁶⁾
- ▼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 및 중단으로 개인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임시 활동을 수행할 경우, 관련 활동에 대해 세무 목적상 해외 사업자(Foreign Disregarded Entities: FDEs)나 외국 지사(Foreign Branches: FBs)의 설치 의무를 갖지 않도록 함³⁷⁾

 - ▶ 본 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 활동은 IRC Section 1503(d)에 따른 이중통합손실 규칙에 근거하여 외국 지사로 인지되거나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 본 조치에서 ‘임시 활동’은 국내 법인에 의해 고용되거나 대리하는 1인 이상의 개인이 코로나19 관련 제약 조치들로 인해 이동에 차질이 발생한 기간 동안 국내 법인을 대신하여 수행한 활동을 의미함

 - ▶ 임시 활동 인정 기간은 2020년 내 최대 60일의 연속 기간에 한하며, 국세청의 요청에 대비해 60일 기간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캐나다

가. 코로나19 관련 납세 유연화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3회]

- ▼ 2020년 3월 18일 캐나다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조치를 발표함³⁸⁾

36) United States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IRS Provides Relief for Foreign Branch Losses and Reporting Obligations for Temporary Activities Outside US(May 11, 2020).

37) IRS Revenue Procedure 2020-30, <https://www.irs.gov/pub/irs-drop/rp-20-30.pdf>, 검색일자: 2020. 5. 22.

- ▶ 본 조치는 납세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는 조세 관련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 캐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함
 - ▶ 소득세 신고기한을 개인의 경우 기존 2020년 4월 30일에서 2020년 6월 1일로 연장함
 - 부가가치세공제(GSTC) 혹은 자녀양육수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의 경우 기존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권장함
 - ▶ 또한 대책 발표일인 2020년 3월 18일부터 9월 이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세를 2020년 8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분할납부 이외의 납부의무가 부여된 모든 세액에 적용되며, 연장에 따른 이자 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 납세자와 과세 담당자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의 서명 요건으로 전자서명을 일시적으로 인정함
 - ▶ 기존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던 세금신고서 양식인 T183 또는 T183CORP에 전자서명이 인정됨
 - ▶ 개인이 세금 및 수당 등의 신고서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할 경우, 2018년 도입된 캐나다의 전자세금신고 서비스인 File My Return³⁹⁾ 서비스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의 지원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기존에 방문 및 대면으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전화 및 화상회의 형태로도 제공함
 - ▶ 개인이 납세액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공제 등 각종 혜택별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
 - ▶ 중소기업의 경우 연락 담당자(Liaison Officer)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대표가 납부세액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기존 대면서비스에 전화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됨

38) 캐나다 정부, "Canada's COVID-19 Economic Response Plan," 2020. 3. 18.,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business>, 검색일자: 2020. 3. 19.

39) 캐나다 정부, "Were you invited to use File my Return? You may be eligible to do your taxes over the phon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newsroom/tax-tips/tax-tips-2018/file-my-return-over-phone.html>, 검색일자: 2020. 3. 19.

- 또한 납부 마감일 연장과 예방적 구제조치와 같은 현 시기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대부분의 사업체에 대해 납세자와의 세무조사 관련 소통을 일시적으로 중단함

- ▶ 2020년 3월 18일부터 향후 4주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사후 평가 및 세무 조사와 관련한 행위를 중단함

나. 코로나19 여행 제한에 대한 국제조세 관련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6호]

▣ 캐나다 세무당국은 2020년 5월 29일 코로나19 여행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국제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함⁴⁰⁾

▣ 행정적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과세 관련 거주 여부 판단 기준을 완화함

- ▶ 다른 국가의 거주자이며,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캐나다 체류일은 비거주 개인의 거주일 제한 183일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 특정 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 설립 장소가 아닌 실질적 경영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법인의 거주지로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하는데, 여행 제한으로 인해 법인의 임원이 캐나다에서 이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 또한 캐나다와 미국 소득세 조약에 따라 미국 법인이 캐나다에서의 고용활동을 통해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였으나, 다음의 경우 과세하지 않음⁴¹⁾
 - 지급액이 1천만캐나다달러⁴²⁾ 이하인 경우
 -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캐나다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를 채용한 경우

40) News IBFD, Canada - COVID-19 Pandemic: Tax Authorities Publish Guidance on International Income Tax Issues Raised(Jun 5, 2020).

41) 캐나다 정부, "Guidance on International Income Tax Issues Raised by the COVID-19 crisi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ampaigns/covid-19-update/guidance-international-income-tax-issues.html#h_1, 검색일자: 2020. 6. 30.

42) 2020. 6.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7억 6,830만원임

- ▣ 비거주 법인의 고정사업장 설치 간주 요건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마련함
 - ▶ 여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비거주 법인이 캐나다에서의 인력 고용이 불가피할 경우, 이러한 고용활동에 대해 고정사업장을 설립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 마찬가지로 동 시기에 비거주 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업무 등을 진행하는 대행사에 대해서도 대행 고정사업장이 설립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II 유럽

1 그리스

가. 부동산 판매 및 임대 관련 준비금의 과세 처리 규정 발표

[조세동향 20-01호]

- ▣ 2019년 12월 31일 그리스 공공수익국은 부동산의 판매 및 임대 준비금의 과세 처리에 관한 ‘circular E.2002’를 발표함⁴³⁾
- ▣ 자산 매각회사와 임대회사 사이에 lease-back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리스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회사에 부동산 사업을 매각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매각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함

 - ▶ ‘lease-back’은 자산의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자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로, 자산 판매 직후 임대계약 세부사항을 결정함⁴⁴⁾
 - 현재 사용 중인 고가의 고정 자산을 가진 업체가 투자를 위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거래 방식임
 - ▶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한 판매 및 임대 준비금에 적용되며⁴⁵⁾,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준비금이 별도의 면세 계정으로 추가되어야 함
- ▣ 임차인 변경, 임대계약 종료 혹은 임대회사의 영업 종료 시에는 면세 혜택이 해지됨

43) News IBFD, Greece - Tax treatment of sale and leaseback reserve in case of business reorganizations and subleasing of immovable property(Jan 6, 2020).

44)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terms/l/leaseback.asp>, 검색일자: 2020. 2. 5.

45) Bloomberg Tax, Greece Tax Agency Issues Circular on Taxation of Reserves from Lease-Back Transactions(Jan 7, 2020).

- ▶ 개발법에 따라 사업이 개편되는 경우나 임대회사가 부동산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준비금 면세 혜택을 유지함

나.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한 긴급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3호]

- ▼ 2020년 3월 11일과 3월 20일, 그리스 정부는 코로나19의 납세자 영향 완화를 위한 입법과 함께 긴급 조치를 발표함⁴⁶⁾
- ▼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제품군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적용함
 - ▶ 마스크 및 장갑, 소독제 및 소독제 원료(에탄올 등), 개인위생을 위한 비누 및 유사 건강관리 제품 등에 대해 기존 24%였던 부가가치세 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6%로 인하함
- ▼ 현재 계류 중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심사 건 중, 환급 청구 총액이 3만유로⁴⁷⁾ 이하인 경우 즉시 환급이 이루어짐
 - ▶ 이때 환급 심사 계류 건이란, 예비 세금평가서 발행 전의 건을 의미함
-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020년 4월 30일에서 2020년 8월 31일로 연장됨
 - ▶ 산출 예정 세액뿐만 아니라, 이미 산출되어 세무서 및 세무조사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 및 할부액까지 모두 납부기한이 연장됨
 - ▶ 이 조치는 기존 직원 수를 유지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함
- ▼ 2020년 예정이었던 부동산 관련 목적세인 UREOT(Unified Real Estate Ownership Tax)의 개정을 연기함⁴⁸⁾

46) KPMG, "Update on tax and other issues related to COVID-19," <https://home.kpmg/gr/en/home/insights/2020/03/gr-tax-update-related-to-covid-19.html>, 검색일자: 2020. 3. 26.

47)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70만원임

48) KPMG, "Update on tax and other issues related to COVID-19," <https://home.kpmg/gr/en/home/insights/2020/03/gr-tax-update-related-to-covid-19.html>, 검색일자: 2020. 4. 2.

- ▶ 2020년의 UREOT 세액은 이전 세율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개정을 통해 결정될 새로운 세율은 2021년부터 적용함

다. 코로나19 관련 세제 조치 입법 초안 제출

[조세동향 20-06회]

- ▾ 그리스 의회는 2020년 5월 20일 코로나19 관련 세제 조치에 대한 입법 초안을 제출함⁴⁹⁾

 - ▶ 2020년 4월 1일부터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시행되어 오던 조치들에 대하여, 소급 효력이 있는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농업보험기구(OGA) 피보험자의 채무상환 확정 신청 마감일을 4개월 연장함

 - ▶ 2019년 12월 31일에 청구된 부채가 있는 경우, 채무상환 신청 마감일을 2020년 5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함
- ▾ 납부일이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 채무에 대해 25%의 할인이 적용됨

 - ▶ 2020년 4월 납부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도 기일 내 납부 시 25% 인하됨
- ▾ 운송, 커피 및 논알코올 음료, 영화 티켓에 대하여 13%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이 적용됨

 - ▶ 표준 부가가치세 세율은 24%였으며, 감면세율은 2020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됨

49) News IBFD, Greece - COVID-19 Pandemic: Amendments to Draft Bill on Adoption of Legislative Act of 1 April 2020 on Extension of Deadlines and 25% Discount on Certain Tax Liabilities(Jun 3, 2020).

2 네덜란드

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3회]

-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0년 3월 12일 네덜란드 하원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함⁵⁰⁾

 -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 서면 신청이 원칙이며, 기한 연장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임을 기재하여야 함
 -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징수를 유예하여야 함
 - ▶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재결정을 위한 임시 재평가(provisional assessments)를 실시함

- ▣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3월 17일 납세자를 위하여 코로나19 타격 경감을 목적으로 한 조세 조치를 발표함⁵¹⁾

 - ▶ 이 발표는 앞선 2020년 3월 12일자 정부 조치에 더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유예의 필요성에 관한 별도의 입증서류 제출 없이도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법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개별 신청을 통하여 예납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 다음 회차에 대한 감면 여부는 당해 기업의 예상 전망에 따라 변동 가능함
 - ▶ 앞선 조치들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됨

50) News IBFD, Netherlands - Corona-related taxation measures announced(Mar 13,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nl_20200313_1142, 검색일자: 2020. 3. 19.

51) News IBFD, Netherlands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Mar 20,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3-20_nl_1, 검색일자: 2020. 3. 30.

나. 코로나19 관련 긴급 조세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4호]

- ▶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4월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령(Decree No. 2020-6767)을 관보에 게재함⁵²⁾

 - ▶ 2020년 3월에 발표한 정부 조치 중 본 법령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만을 기술함⁵³⁾
 - 기존의 정부 조치는 납부 유예, 부가가치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음

- ▶ 본 법령 중 새로운 조세 관련 조치 부분은 다음과 같음

 - ▶ 납부의무가 발생한 세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정 금액을 감면함
 - 납부세액은 네덜란드 조세징수법상 가산세율과 동일한 비율로 감면될 것이고, 감면세액은 선납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임
 - ▶ 본 법령 시행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관련 행정적 의무해태에 관하여 엄격한 처분을 내리지 않음
 - 법령은 신입사원의 신원확인 의무 등을 예시로 들고 있음
 - 고용주 및 근로자의 행정의무 불이행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신속히 시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함
 - ▶ 적격 기관으로서 간병인 등을 파견하거나 무료 의료 제공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적격 기관에는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요양원 등의 노인요양기관 등이 해당됨
 - ▶ 독일 근무 네덜란드 거주자가 독일에서 지급받는 단축근무보상제도 지원금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함
 - 독일-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라 네덜란드는, 지원금이 연 1만 5천유로⁵⁴⁾ 미만인 경우 이에 대한 과세권을 가짐

52) News IBFD, Netherlands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new decree published(Apr 7,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4-17_nl_2, 검색일자: 2020. 4. 20.

53) 네덜란드 정부의 2020년 3월 발표 코로나19 대응 조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3호, 2020 참조

54) 2020. 4. 24.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94만원임

다. 저세율국 지급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

[조세동향 20-06호]

- ▣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5월 29일 저세율국으로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를 신설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발표함⁵⁵⁾ 56)

 - ▶ 본 제도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저세율국으로 지급되는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음
 - ▶ 본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경우는 기존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비과세·저율과세 배당소득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임
 - 다음과 같은 현행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세율국으로 지급되는 배당소득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네덜란드에서 저세율국(조세조약 미체결)으로 지급되는 배당소득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
 - 2018년 1월 1일부터 배당소득 원천징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다수의 국내 납용 방지 조치들이 시행 중임

- ▣ 앞의 발표안에 따르면 네덜란드 내 배당소득 지급자가 EU Blacklist에 해당하는 국가로서⁵⁷⁾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세율로 과세하는 국가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무기가 발생함

 -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존 원천징수세액에 추가하여 부과될 예정임⁵⁸⁾
 - ▶ 저세율국의 정의에 관하여 명확히 제시된 바는 없지만 현 CFC 제도 및 2021년 시행 예정인 이자 및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제도의 관련 정의를 참고하여 입법될 것으로 예상됨⁵⁹⁾
 - 이 제도들은 법정 법인세율이 9% 미만인 국가를 저세율국으로 보고 있음

55) News IBFD, "Netherlands - Government Announces New Withholding Tax on Dividends to Low - Tax Jurisdictions," (Jun 2,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6-02_nl_1, 검색일자: 2020. 6. 22.

56) 네덜란드 재무부, <https://www.rijksoverheid.nl/ministeries/ministerie-van-financien/documenten/kamerstukken/2020/05/29/aankondiging-aanvullende-maatregelen-tegen-dividendstromen-naar-laagbelastende-jurisdicties>, 검색일자: 2020. 6. 30.

57) KPMG, "Netherlands: Withholding tax on dividends paid to low-tax jurisdictions, proposed effective 2024," (Jun 3, 2020),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6/tnf-netherlands-withholding-tax-dividends-paid-low-tax-jurisdictions.html>, 검색일자: 2020. 6. 30.

58) 위 각주와 출처 동일. 일종의 조건부 원천징수세제(conditional withholding tax)로 볼 수 있음

59) News IBFD, "Netherlands - Government Announces New Withholding Tax on Dividends to Low-Tax Jurisdictions," (Jun 2,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6-02_nl_1, 검색일자: 2020. 6. 22.

라. 조세조약 정책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0-06호]

-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0년 5월 29일 네덜란드 조세조약 정책에 관한 문서를 발표함⁶⁰⁾ 61)

 - ▶ 본 문서는 기존 2011년 2월 11일자 문서 이후 변화한 국제조세 환경을 반영하여 그간 네덜란드의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국내·국제적 논의사항 이행 상황을 살피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함
 - 네덜란드, EU의 세법 관련 논의뿐 아니라 OECD 및 UN의 모델조세조약, BEPS 액션 플랜 논의 등을 반영함
 - ▶ 조세조약 정책은 조약 남용 및 조세회피 방지, 투자 환경 배양 및 이중과세 방지, 이익 배부와 최저한세 등에 관한 국제조세 논의 반영, OECD 모델조세조약을 기반으로 한 수정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삼음

- ▣ 본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조세조약 관련 정책 요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음

 - ▶ 조약 남용 방지와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최소 기준 도입
 - PPT, LOB 규정 도입 및 BEPS 프로젝트의 조약 남용 방지와 관련한 보충 조치들 도입
 - ▶ 거주자 판정 기준 명확화 규정 마련
 - ▶ 특정 요건에서의 이자·사용료·배당소득에 관하여 거주지국으로 과세권을 일부 배분
 - ▶ 투자기구, 기업, 개인에게 지급되는 포트폴리오 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세율 적용
 - ▶ 국외 소득에 대한 네덜란드 과세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정사업장 정의 규정 수정 및 범위 확장
 - ▶ 연금 및 사회보장 지급금 활성화를 위한 원천지국 과세 강화방안 마련 등

60) News IBFD, "Netherlands - Policy Document on Tax Treaty Policy published," (Jun 2,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6-02_n1_2, 검색일자: 2020. 6. 22.

61) 네덜란드 재무부, <https://www.rijksoverheid.nl/ministeries/ministerie-van-financien/documenten/rapporten/2020/05/29/notitie-fiscaal-verdragsbeleid>, 검색일자: 2020. 6. 22.

3 노르웨이

가. 디지털서비스세 조건부 실행계획 공개

[조세동향 20-01호]

- ▶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2019년 1월 중 여러 매체를 통해 디지털과세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 2021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힘⁶²⁾
 - ▶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2020년 중 OECD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021년 국내 법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여 과세하겠다고 밝힘
 -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밝히지 않았으며, 노르웨이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안을 설계할 수 있으나 다른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국가를 참고할 것이라고 함
 - ▶ 이러한 과세의 근거로 디지털 기업들의 성장세가 갈수록 더 커지고 강해지고 있어 계속적인 과세지연을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함

나. 코로나19 관련 기업 지원 및 긴급 조세정책

[조세동향 20-03호]

- ▶ 노르웨이 정부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기업을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함⁶³⁾
 - ▶ 원천징수세를 2020년 3월 15일에 첫 번째로 분할납부해야 하는 기업은 납부기한이 2020년 5월 1일까지 연장됨
 - ▶ 항공 승객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부과되지 않음

62) Klassekampen, <https://www.klassekampen.no/article/20200113/ARTICLE/200119987>, 검색일자: 2020. 1. 30.;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DBB2DPG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jscsearch=BNA%25200000016f9f8fd383a56f9f9f6d0e0001#jcite, 검색일자: 2020. 1. 30.

63) 노르웨이 정부, <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the-government-acts-to-mitigate-effects-of-the-covid-19-pandemic-on-the-economy/id2693471/>, 검색일자: 2020. 3. 20.; KPMG,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3/tnf-norway-tax-relief-proposals-coronavirus-related-measures.html>, 검색일자: 2020. 3. 17.

- ▣ 노르웨이 정부는 2020년 3월 16일 긴급 조세 조치에 관한 법률안(Prop. 53 LS)을 발표하고, 이 법안은 같은 날 의회에서 통과됨⁶⁴⁾

 - ▶ 2020년도에 손실이 발생한 유한책임회사(LLC)는 과세소득 산출 시 2018년도 또는 2019년도의 익금에서 2020년도의 결손금을 소급공제할 수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조치가 도입된 바 있음
 - ▶ 2020년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부유세의 납부기한은 2021년까지 연장됨

- ▣ 노르웨이 정부는 2020년 3월 16일 12%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영역의 세율을 일시적으로 8%로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함⁶⁵⁾

 - ▶ 인하된 부가가치세는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여객운송의 공급 및 조달, 공영 방송국, 영화관, 박물관 등에 대한 입장료, 호텔 숙박업 및 캠핑 산업에 적용됨
 - ▶ 부가가치세의 첫 번째 납부기한을 2020년 4월 14일에서 2020년 6월 10일로 연장함

다. 코로나19 관련 2020년도 수정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05호]

- ▣ 노르웨이 정부는 2020년 5월 12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분담금 경감, 감가상각률 인상, 소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조세 조치가 포함된 2020년도 수정 예산안을 발표함⁶⁶⁾

 - ▶ 고용주의 사회보장분담금은 2020년 5월과 6월 4%로 경감되고 D영역(자동차, 트랙터, 기계, 도구, 고정가구, 일반가구 등)의 감가상각률은 일시적으로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됨

64) 노르웨이 정부, <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economic-measures-in-norway-in-response-to-covid-19/id2694274>, 검색일자: 2020. 3. 25.;

News IBFD, Norwa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direct tax measures(Mar 17, 2020).

65) News IBFD, Norwa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reduced VAT rate further reduced (Mar 17, 2020).

66) 노르웨이 정부, <https://www.regjeringen.no/en/aktuelt/a-budget-to-help-us-safely-reclaim-ordinary-life/id2701787/>, 검색일자: 2020. 5. 28.

- ▶ 조세 규율 선택권이 있는 소규모 스타트업의 근로자 수 및 소득 조건의 한도를 확대함
 - 근로자 수의 한도를 기존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근로자 수 산정 시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자만 포함하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그 범위를 넓힘
 - 소득 조건을 기존 1,600만크로네⁶⁷⁾에서 2,500만크로네⁶⁸⁾로 확대함

4 덴마크

가. 코로나19 관련 납세기한 연장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3호]

- ▣ 덴마크 정부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법안(L 134)을 의회에 제출함⁶⁹⁾
 - ▶ 기업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됨⁷⁰⁾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경우 원래의 기한이 3월, 4월, 5월인 경우 1개월 연장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신고 및 납부는 2020년 2분기의 기한까지 함께 가능하며, 영세기업의 경우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신고를 하반기에 한꺼번에 할 수 있음
 - 기업의 원천징수세(A-tax) 납부기한은 원래의 기한이 4월, 5월, 6월인 경우 각 4개월씩 연장됨
 - 개인사업자의 소득세(B-tax) 신고 및 납부 기한이 4월 20일인 경우 6월 22일로 연장되고, 5월 20일인 경우에는 12월 20일로 연장됨
 - ▶ 이 법안은 2020년 3월 17일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납세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기업의 법인세 계좌(Skattekontoen)의 최대 환급 한도를 20만크로네⁷¹⁾에서 1천만크로네⁷²⁾로

67) 2020. 5.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억 1,200만원임

68) 2020. 5.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억 4,375만원임

69) News IBFD, Denmark - Ministry of Taxation introduces measures to mitigate financial Impact of coronavirus - law proposal presented(Mar 16, 2020).

70) *Bloomberg Tax*, Denmark Grants \$20 Billion in Tax Breaks to Firms Hit by Virus(Mar 11, 2020).

71) 2020. 3.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42만원임

상향하는 내용이 추가됨⁷³⁾

- 기업의 체납세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최대 환급 한도를 넘는 금액을 자동적으로 기업의 법인세 계좌로 송금⁷⁴⁾하는데, 원래의 기한 내에 납부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하여 환급 한도를 상향함⁷⁵⁾
- 새로운 금액 한도는 2020년 3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됨

5 독일

가. EU 차원 금융거래세 도입안 발표

[조세동향 20-01호]

- ▣ 독일 재무장관은 2019년 12월 9일 독일 등 EU 회원국 10개국에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를 도입하기 위한 원안을 마련함⁷⁶⁾
 - ▶ 이 10개국은 독일을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임
 - ▶ EU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 여부는 2011년부터 논의되었으나 그간 담보상태에 놓여 있었고, 금번 독일의 도입안은 프랑스의 금융거래세제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음⁷⁷⁾
 - ▶ 독일의 예상 세수는 약 15억유로로, 독일은 이를 기초연금(basic pension)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 밝힘

72) 2020. 3.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억 2,110만원임

73) News IBFD, Denmark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adopted(Mar 19, 2020).

74) 덴마크에서는 은행에 예금 시 계좌 보관 수수료(일명 '마이너스 금리')를 지불해야 함,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denmark-coronavirus-relief-plan>, 검색일자: 2020. 3. 30.

75) EY, https://www.ey.com/en_dk/tax/denmark-changes-tax-legislation-in-light-of-covid-19, 검색일자: 2020. 3. 31.

76) 독일 재무부, Gesetzesvorschlag zur Finanztransaktionsteuer(Dec 10, 201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Steuererechtigkeit/2019-12-10-Gesetzesvorschlag-Finanztransaktionsteuer.html>, 검색일자: 2020. 1. 22.

77)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이미 금융거래세(FTT)를 도입하였고, 영국은 인지세(stamp duty)의 형태로 주식거래를 과세하고 있음

- ▣ 본 도입안은 기업가치가 10억유로를 넘는 대형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그 매입 가격의 0.2%를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 2011년 기존 EU안은 EU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식 및 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 거래에 0.01%를 과세하는 것이었음⁷⁸⁾
 - ▶ 독일에서는 약 145개 기업이, 참가 EU 회원국에서는 500개의 기업그룹 주식이 대상 범위에 포함됨⁷⁹⁾
 - ▶ 2021년도 시행을 목표로 함
 - ▶ 펀드 등 주식 이외의 금융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참여국들의 재량으로 함

- ▣ 한편,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새로운 금융거래세 제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금융거래세 협의그룹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시사함⁸⁰⁾

 - ▶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히며, 투기를 방지하고 실물 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초의 취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힘
 - 제시된 안은 투기자들을 방지하면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 또한 새로운 수정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오스트리아는 10개국으로 구성된 금융거래세 협의그룹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함

나. 강제적 보고규정 법률 관보 게재

[조세동향 20-01호]

- ▣ 독일은 2019년 12월 30일 세무조력자 등에게 조세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적 보고 관련 법률을 관보에 게재함⁸¹⁾

78) *Bloomberg Tax*, Germany's EU Financial Transaction Tax Plan Gets Mixed Reviews(Dec 11, 2019).

79) *Bloomberg Tax*, Scholz Submits Draft Law on Financial-Transaction Tax: SZ(Dec 10, 2019).

80) Federal Ministry of Finance, <https://www.bmf.gv.at/en/press/press-releases/2020/January-2020/Finance-Minister-B1%C3%BCmel-attends-first-ECOFIN-and-Eurogroup-meetings-.html>, 검색일자: 2020. 1. 30.;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1-21/eu-financial-tax-faces-new-trouble-as-austria-threatens-to-quit>, 검색일자: 2020. 1. 30.

- ▶ 앞의 법률은 EU DAC6 지침의 국내 이행 법률임
- ▶ 독일 재무부는 2019년 9월 26일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독일 연방의회는 같은 해 12월 23일 위 법안을 통과시켰음

☑ 본 법률은 전반적으로 EU DAC6 지침의 내용을 따르고 있음⁸²⁾

- ▶ 보고 대상 거래의 범위는 역외 거래에 한정하고 중개인을 보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음
 - 국내 거래도 포함시킬지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며, 간접세는 포함되지 않음
- ▶ 보고 대상 거래의 특징(hallmark) 또한 EU DAC6 지침의 내용과 유사함
 - 다만,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역외 거래가 발생한 경우 보고 대상 거래 금액의 액수는 전액임(공제가 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음)
- ▶ 첫 보고의무는 2020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하고, 보고의무를 불이행한 중개인의 경우 최대 2만 5천유로⁸³⁾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3호]

☑ 독일 재무부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납세자 지원 조치를 발표함⁸⁴⁾

- ▶ 단축근무로 인한 급여손실 보상제도(Kurzarbeitergeld)⁸⁵⁾의 적용 범위를 코로나19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까지 확대함

81) News IBFD, Germany - Bill on implementation of EU Directive on cross-border tax arrangements(DAC6) - gazetted(Jan 6, 2010).

82) PwC, EU Direct Tax News alert - German draft proposal implementing DAC6(Sep 27, 2019), <https://www.pwc.com/gx/en/tax/newsletters/eu-direct-tax-newsalerts/eudtg/german-draft-proposal-implementing-dac6.pdf>, 검색일자: 2020. 1. 22.

83) 2020. 1. 31.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70만원임

84) News IBFD, German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Mar 1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de_20200317_0821, 검색일자: 2020. 3. 19.

85) 노동시장의 특이한 사유로 기업 내 일상적인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근로 감축 시 고용인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일연방노동청의 지원하에 원칙적으로 12개월, 최대 24개월에 한해 상실된 고용인원의 순임금의 60% 또는 67%(최소 자녀 1명인 경우)를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임,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608>, 검색일자: 2020. 3. 30.

- 신청 가능한 최소 단축근무 발생 기준을 기존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근로시간 감축분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은 독일 연방노동청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 ▶ 납부기한 연장,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의 조세 관련 조치를 통하여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함
 - 과세관청은 징수절차 개시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생계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의 금년도 소득이 직전 연도보다 낮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즉시 예납세액을 감면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징수절차를 유예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
- ▶ 영업세 납세의무자는 금년도 소득이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통하여 연말까지 영업세 예납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⁸⁶⁾

라. 코로나19 관련 투자세법 적용 요건 완화 지침 발표

[조세동향 20-04호]

- ▣ 독일 재무부는 2020년 4월 9일 투자세법(Investmentsteuergesetz)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위기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사이에 세액 경감이 적용되는 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지침을 발표함⁸⁷⁾
 - ▶ 투자세법 제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투자펀드의 증권투자 비율이 51% 이상이면 증권펀드(Aktienfonds)의 자격을 충족하고, 증권투자 비율이 25% 이상 50% 이하인

86) News IBFD, German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implementation guidance issued(Mar 20,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de_20200320_1010, 검색일자: 2020. 3. 30.

87)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Investmentsteuerliche Maßnahmen zur Berücksichtigung der wirtschaftlichen Folgen der COVID-19-Pandemie,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Investmentsteuer/2020-04-09-investmentsteuerliche-massnahmen-zur-beruecksichtigung-der-wirtschaftlichen-folgen-der-COVID-19-pandemie.html;jsessionid=489473EED0901C9C80382A7B90256781.delivery1-replication, 검색일자: 2020. 4. 28.

경우에는 혼합펀드(Mischfonds)의 자격을 충족하며 과세연도 동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함^{88),89)}

- 투자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증권펀드의 경우 투자 지분의 30%가 면세되고 특히 사업 자산의 일종으로 투자 지분을 보유한 개인은 투자 지분의 60%,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투자 지분의 80%가 면세되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혼합펀드의 경우 증권펀드에 적용되는 각 면세 비율의 50%만 면세됨
- 자격 요건 산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과세연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사이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은 위 20일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마. 코로나19 관련 영세기업 지원 조치 및 조세 법률

[조세동향 20-05호]

- ▣ 독일 재무부는 2020년 4월 2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예술인, 개인사업자의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발표함⁹⁰⁾
- ▶ 영세기업, 예술인, 개인사업자는 2019년도 중간예납세액 및 2020년 3월 10일에 납부한 2020년도 첫 번째 중간예납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과세관청이 다시 산정한 중간예납세액의 초과납부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⁹¹⁾
- 2020년도 중간예납세액의 경우 독일 재무부가 2020년 3월 13일에 발표한 조세조치에 따라 납부한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⁹²⁾

88)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http://www.gesetze-im-internet.de/invstg_2018/_2.html, 검색일자: 2020. 4. 28.

89) News IBFD, German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clarifications on application of Investment Tax Act issued(Apr 15, 2020).

90) 독일 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4/2020-04-23-PM08-Liquiditaetshilfe.html>, 검색일자: 2020. 5. 27.

91) News IBFD, German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Measures - Liquidity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Artists and Self-Employed Persons(Apr 24, 2020).

92) News IBFD, German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Mar 16, 2020).

- 2019년도 중간예납세액은 현재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소급공제한 총액을 기초로 하여 2019년도 소득의 15%로 다시 산정되고 최대 한도는 100만유로, 공동사업자인 경우 200만유로임
- 이는 일시적인 유동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의 수익성이 회복되면 환급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 독일 정부는 2020년 5월 6일 식당과 주점에 공급한 식품에 경감된 부가가치세율 적용, 근로자들의 단축 근로 보상금 및 고용주들의 단축 근로 보조금에 대한 면세의 내용이 담긴 긴급 조세 조치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정함⁹³⁾

▶ 식당과 주점에 공급한 식품을 그 장소에서 소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율은 일시적으로 19%에서 7%로 경감되고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됨⁹⁴⁾

- 기존에는 식당과 주점에 공급한 식품을 구매하여 그 장소에서 소비하는 경우 19%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다른 장소에서 소비(take-away)하는 경우 7%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

▶ 근로자들의 단축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가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및 고용주가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면세됨⁹⁵⁾

- 근로 단축 보상금 혜택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존 급여 실수령액과 단축 근로로 인한 급여 실수령액의 차액의 60%를 노동부로부터 보상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 보상금은 면세됨
- 고용주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들의 단축 근로로 인한 임금을 보상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한 보수는 기존 보수 실수령액과 단축 근로로 인한 보수 실수령액의 차액의 80%까지 면세됨

93) 독일 재무부, Entwurf eines Gesetzes zur Umsetzung steuerlicher Hilfsmaßnahmen zur Bewältigung der Corona-Krise,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Corona-Schutzschild/2020-03-19-steuerliche-Massnahmen.html>, 검색일자: 2020. 5. 27.

94) News IBFD, German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Germany Temporarily Reduces VAT on Supplies of Food and Beverages in Restaurants(Apr 30, 2020).

95) News IBFD, German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Federal Cabinet Approves Draft Bill on Tax Relief Measures(May 7, 2020).

바. 코로나19 관련 경제활성화 정책 패키지 발표

[조세동향 20-06호]

- ▣ 독일 정부는 2020년 6월 3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제활성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함⁹⁶⁾

 - ▶ 조세와 관련된 조치는 부가가치세율 경감, 기업 및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 자동차세 관련 정책이 있음⁹⁷⁾
 - ▶ 독일 정부는 2020년 6월 12일 이 경제활성화 정책 패키지가 포함된 제2차 코로나19 조세 법안을 승인함⁹⁸⁾

- ▣ 부가가치세율을 재화 공급의 경우 19%에서 16%로, 용역 공급의 경우 7%에서 5%로 경감함

 - ▶ 기업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율을 표기해야 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의 인수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 ▣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 확대, 감가상각법으로 정률법 일시 허용, R&D 세액공제 대상 적격비용 한도를 확대함

 - ▶ 기업의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21 사업연도의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기존 100만유로⁹⁹⁾에서 500만유로¹⁰⁰⁾로 확대하고, 사업연도가 2년인 경우에는 1천만유로¹⁰¹⁾까지 확대함

96) 독일 정부, Revitalising the economy,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search/corona-steuerhil-fegesetz-1760128>, 검색일자: 2020. 6. 19.

97) EY, German Government announces additional stimulus package in response to COVID-19, https://www.ey.com/en_gl/tax-alerts/german-government-announces-additional-stimulus-package-in-response-to-covid-19, 검색일자: 2020. 6. 10.

98) News IBFD, Germany - COVID-19 Pandemic: Government Approves Economic Stimulus Package(Jun 12, 2020).

99) 2020. 6.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 4,664만원임

100) 2020. 6.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7억 3,320만원임

101) 2020. 6.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4억 9,920만원임

- ▶ 2020/21 사업연도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법으로 상각률을 연 25%로 하는 정률법을 일시적으로 허용함
 - 기존의 정액법에 따른 상각률의 2.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함
- ▶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적격비용의 한도를 연간 400만유로¹⁰²⁾로 2배 확대함
 - 이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한도는 연간 최대 100만유로¹⁰³⁾임
 -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 ▣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한부모가정의 비과세소득 한도를 확대함
 - ▶ 자녀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300유로¹⁰⁴⁾의 추가 보조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추가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나 기존 사회복지보조금에서 경감되지 않음
 - ▶ 한부모가정의 2020/21 과세연도 비과세소득 한도를 1,908유로¹⁰⁵⁾에서 4,008유로¹⁰⁶⁾로 확대함
- ▣ 자동차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기간을 확대함
 - ▶ 2021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하여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이 정해짐
 - ▶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

102) 2020. 6.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3억 8,656만원임

103) 2020. 6.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 4,664만원임

104) 2020. 6.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만원임

105) 2020. 6.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6만원임

106) 2020. 6.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39만원임

6 룩셈부르크

가. EU 조세분쟁해결절차 입법

[조세동향 20-01호]

- ▣ 룩셈부르크 의회는 2019년 12월 20일 EU 조세분쟁해결절차 도입을 위한 법안을 의결함¹⁰⁷⁾

 - ▶ 이 법안은 2017년 10월 공개된 EU 중재지침을 국내법으로 채택하여 조약 등의 다양한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법안 효력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발생하며, 2018년 1월 이후 소득 및 자본과 관련된 분쟁을 대상으로 적용됨
- ▣ 법안은 제한된 기간 내에 룩셈부르크와 EU 회원국 간에 분쟁해결의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음¹⁰⁸⁾

 - ▶ 대상은 EU 내로 한정하여 적용되며 조약 등의 해석과 적용에 모든 소득과 자본을 포함함
 - ▶ 납세자는 분쟁 대상이 되는 처분이 도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룩셈부르크와 관련 계약국의 과세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 ▶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은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조정절차의 인용 또는 거부를 통지해야 함
 - 납세자는 모든 계약국의 과세관청이 조정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의 (Advisory Panel) 설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이 거부하는 경우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음
 - ▶ 모든 계약국의 과세관청이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2년 내에 상호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1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3년까지 소요될 수 있음

107) Journal officiel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Loi du 20 décembre 2019 instaurant un mécanisme de règlement des différends fiscaux, <http://legilux.public.lu/eli/etat/leg/loi/2019/12/20/a890/fo>, 검색일자: 2020. 1. 30.

108)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luxembourg-transposes-eu-tax-dispute-resolution-directive-into-domestic-law>, 검색일자: 2020. 1. 30.

- ▶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됨

나. 코로나19 관련 긴급 조세정책 발표

[조세동향 20-03호]

- ▶ 룩셈부르크 재무부는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세정책을 발표함¹⁰⁹⁾
 - ▶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역, 농업, 임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법인세 및 지방사업세(Municipal Business Tax)의 중간예납세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 납세기한이 2020년 2월 29일 이후인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법인세, 지방사업세, 부유세의 납부기한은 4개월 연장되고,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 ▶ 법인과 자연인의 소득 신고기한 및 개인 소득세와 관련한 요청의 제출, 취소, 수정 요청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
 - ▶ 과세관청은 기업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만유로¹¹⁰⁾ 이하의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기한 내에 환급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
- ▶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관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2020년 3월 14일부터 재택근무하는 것은 룩셈부르크-벨기에 조세조약에 의한 자국 소득세 면제 요건인 24일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상호합의안을 발표함¹¹¹⁾
 - ▶ 룩셈부르크와 벨기에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국가에서 일하는 통근 근로자들이 자국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 과세 관할 국가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09) 룩셈부르크 정부, Fiscal measures to support companies and self-employed hit by the COVID-19 pandemic, https://gouvernement.lu/en/actualites/toutes_actualites/communiqués/2020/03-mars/17-mesures-fiscales-covid19.html, 검색일자: 2020. 3. 27.;
News IBFD, Luxembourg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Mar 18, 2020).

110) 2020. 3.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57만원임

111) News IBFD, Belgium; Luxembourg - COVID-19 pandemic: agreement on taxation of frontier workers(Mar 26, 2020).

원칙적으로 최대 24일임

- ▶ 이러한 조치는 추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됨

다. 강제적 보고 규정 법안 관보 게재

[조세동향 20-04호]

- ▶ 룩셈부르크 의회는 2020년 3월 21일 조세 분야의 강제적 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법(no. 7465)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2020년 3월 26일 관보에 게재됨¹¹²⁾
 - ▶ 이 법은 강제적 보고 규정과 역외조세약정 교환에 대한 EU지침(Directive 2018/822)을 국내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것이며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됨¹¹³⁾
 - ▶ 역외조세약정(Les Dispositifs Transfrontières)과 관련된 정보 보고의무, 통신방법, 개인 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 조사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 법안은 초안과 달리 직업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강제적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경우 일정한 정보를 다른 중개인 및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함
 - ▶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직업상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와 감사에게도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는 강제적 보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강제적 보고의무의 면제는 룩셈부르크 법이 규율하는 직업적 범위 내의 행동에만 적용됨
 - ▶ 중개인은 역외조세약정이 실행될 준비가 되었다고 신고한 날의 다음 날 또는 역외조세약정의 첫 번째 단계의 실행이 완료되었다고 신고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역외조세약정과 관련된 다른 중개인에게 보고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다른 중개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납세자에게 이 법에 따른 보고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함

112) Journal officiel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Loi du 25 mars 2020 relative aux dispositifs transfrontières devant faire l'objet d'une déclaration, <http://www.legilux.lu/eli/etat/leg/loi/2020/03/25/a192/jo>, 검색일자: 2020. 4. 20.

113) News IBFD, Luxembourg - Directive on mandatory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field of taxation in relation to reportable cross-border arrangements - bill adopted by parliament and gazetted(Mar 31, 2020).

- ▶ 관련 납세자는 신고가 이루어진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역외조세약정이 실행될 준비가 되었다고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함

7 벨기에

가. 2020년 과세 관련 지표 금액 공표

[조세동향 20-02호]

- ▣ 2020년 2월 13일 벨기에 재무부는 2020년(평가연도 2021년)의 개인소득세 관련 지표 금액을 공표함¹¹⁴⁾
- ▣ 2020년 개인소득세 세율의 과표 구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 과세소득 | | 세율 |
|---------------------------|---------------------|-----|
| 2019년 ¹⁾ | 2020년 ²⁾ | |
| 13,250유로 ³⁾ 까지 | 13,440유로까지 | 25% |
| 13,440~23,290유로 | 13,440~23,720유로 | 40% |
| 23,290~40,480유로 | 23,720~41,060유로 | 45% |
| 40,480유로 초과 | 41,060유로 초과 | 50% |

주: 1)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belgium-income-tax.html>, 검색일자: 2020. 3. 3.

2) News IBFD, Belgium - Individual taxation: tax year 2020(assessment year 2021) - indexed amounts gazetted(Feb 18, 2020).

3) 1유로=1,327.31원(2020. 3. 3. 기준)

- ▣ 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되는 기본 수당은 8,860유로¹¹⁵⁾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부양 자녀 수에 따르는 아동수당의 인상이 있었음
 - ▶ 한부모가족에는 1,630유로¹¹⁶⁾의 추가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내용이 추가됨

114) News IBFD, Belgium - Individual taxation: tax year 2020(assessment year 2021) - indexed amounts gazetted (Feb 18, 2020).

115) 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71만원임

116) 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5만원임

| 자녀 수 | | 수당액 | |
|-------|-------------------|-----------------------|---------------------|
| | | 2019년 ¹⁾ | 2020년 ²⁾ |
| 기본 수당 | | 8,860유로 ³⁾ | |
| 아동수당 | 1명 | 1,610유로 | 1,630유로 |
| | 2명 | 4,150유로 | 4,210유로 |
| | 3명 | 9,290유로 | 9,430유로 |
| | 4명 | 15,030유로 | 15,250유로 |
| | 5명부터 자녀 1인당 추가 수당 | 5,740유로 | 5,820유로 |

주: 1)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belgium-income-tax.html>, 검색일자: 2020. 3. 3.
 2) News IBFD, Belgium - Individual taxation: tax year 2020(assessment year 2021) - indexed amounts gazetted(Feb 18, 2020).
 3) 1유로=1,327.31원(2020. 3. 3. 기준)

☞ 연금 및 인건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액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연금의 경우 1,828.41유로,¹¹⁷⁾ 저축 예금의 이자는 990유로¹¹⁸⁾까지 공제됨
- ▶ 인건비의 경우 자영업자 및 사업가, 일반 사원은 최대 4,880유로,¹¹⁹⁾ 임원진은 2,580유로¹²⁰⁾까지 공제됨
 - 육아공제를 포함할 경우 자영업자, 사업가, 사원, 임원진 모두 최대 8,690유로¹²¹⁾까지 공제가 가능함
- ▶ 배우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부양 배우자 수당¹²²⁾ 한도액은 배우자에게 직업이 있을 경우 1만 4,400유로¹²³⁾이며, 직업이 없을 경우 1만 1,090유로¹²⁴⁾임
- ▶ 기부금은 40유로¹²⁵⁾ 이상에 대해 총 39만 7,850유로¹²⁶⁾까지 공제 가능함

117) 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2만원임

118) 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1만원임

119) 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45만원임

120) 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1만원임

121) 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49만원임

122) 배우자 중 1인의 소득이 부부 총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한 사람의 소득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배분할 수 있으며, 이를 부양 배우자 수당이라고 함, Belgium Official Information and Services, https://www.belgium.be/en/taxes/income_tax, 검색일자: 2020. 2. 24.

123) 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03만원임

124) 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65만원임

125) 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만 3천원임

126) 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2,570만원임

- 주택담보대출 이자 총액, 주택담보대출 부분상환액 및 자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납입한 금액의 경우 지역별로 공제액이 상이함

| 지역 | 공제액 ¹⁾ | 대출 초기 10년 추가 공제액 |
|---------|---|------------------|
| 브뤼셀 지역 | 2,480유로 ²⁾ | 830유로 |
| 플레미쉬 지역 | 2,280유로 (2015~2019년 사이 대출의 경우 1,520유로) | 760유로 |
| 왈롱 지역 | 2,290유로 | |

주: 1) 부양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80유로(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만 6천원임)의 추가 공제가 허용됨
 2) 1유로=1,327.31원(2020. 3. 3. 기준)

- 기업가 및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와 관련한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투자공제 미사용액에 대해 최대 1,206,47유로¹²⁷⁾까지 무기한 이월이 가능함
 - ▶ 투자 금액의 33.99%를 공제받는 R&D 공제를 선택한 기업의 경우, 공제 미사용액에 대해 최대 51만 3,240유로¹²⁸⁾까지 무기한 이월을 청구할 수 있음
 - ▶ 11인 이하 고용 사업장의 고용주는 직원 1인을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일반 직원은 6,160유로,¹²⁹⁾ 관리자는 16,560유로¹³⁰⁾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됨

나. 코로나19 관련 세금 납부기한 연장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3호]

- 2020년 3월 12일 벨기에 재무부는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납세기한 연장과 관련한 조치들을 발표함¹³¹⁾¹³²⁾
-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납부일을 다음과 같이 연기함

127) 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9만원임

128) 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7,796만원임

129) 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4만원임

130) 2020. 2.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88만원임

131) News IBFD, Belgium - COVID-19 pandemic: emergency VAT measures taken(Mar 19, 2020).

132) News IBFD, Belgium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further corporate income tax, personal income tax, wage tax and VAT measures taken(Mar 30, 2020).

- ▶ 2월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은 3월 20일에서 4월 6일로, 3월 및 1사분기 신고의 마감일은 4월 20일에서 5월 7일로 연장됨
 -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245유로¹³³⁾ 이상인 과세 대상자는 4월 3일까지 조기 전자신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4월 30일 이전에 환급이 이루어짐
- ▶ 2월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은 3월 20일에서 5월 20일로, 3월 및 1사분기 납부 마감일은 4월 20일에서 6월 20일로 연장됨
 - 이자나 과태료 없이 납부기한이 2개월 자동 연기됨
- ☑ 법인세 및 비법적실체와 비거주자 법인에 대한 세금의 신고일 및 납부일이 연장됨
 - ▶ 신고일은 3월 16일에서 4월 20일로 변경됨
 - ▶ 3월 12일 이후 발생하는 조세채무의 납부일은 2개월씩 연장됨
- ☑ 원천징수세 납부일은 2월분 3월 13일, 3월과 1사분기분은 6월 15일로 연장됨
- ☑ 본 조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전 신청이 필요함¹³⁴⁾
 - ▶ 세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체납 시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나, 미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다. 코로나19 관련 법인세 선납 공제 혜택 일부 확대

[조세동향 20-04호]

- ☑ 2020년 4월 3일 벨기에 세무당국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소득세 선납 지불에 대한 공제율을 일부 변경함¹³⁵⁾
 - ▶ 벨기에는 최종 법인세 산출 시 매년 변동되는 요율의 할증료를 부과하는데, 선납 지불을 통한 공제 혜택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음

133) 2020. 4. 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만 9천원임

134) News IBFD, Belgium - COVID-19-related taxation measures announced(Mar 16, 2020).

135) News IBFD, Belgium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adjusted percentages for advance payments published(Apr 6, 2020).

- ▶ 공제율을 반영한 최종 세액이 선납한 세액을 초과할 경우 상환받거나 다음 연도의 선납 세액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부족할 경우 추가 세액을 납부함¹³⁶⁾

☐ 2020년 벨기에의 법인세 할증률은 7%이며, 법인세 선납 시 배당금 미지급 법인의 2020년 3분기 및 4분기 공제율을 각각 0.75%씩 인상함

- ▶ 변경된 요율은 2020년 3월 12일에서 12월 31일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인에 대해 적용되며, 주식을 매입하거나 자본을 축소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표 11-1〉 2020년 벨기에 법인세 선납 공제율

| 구분 | 납부일 | 배당금 미지급 법인 | 배당금 지급 법인 |
|-----|---------------|----------------|-----------|
| 1분기 | 2020년 4월 10일 | 9% | 9% |
| 2분기 | 2020년 7월 10일 | 7.5% | 7.5% |
| 3분기 | 2020년 10월 10일 | 6.75%(기존 6%) | 6% |
| 4분기 | 2020년 12월 20일 | 5.25%(기존 4.5%) | 4.5% |

자료: PWC, <https://taxsummaries.pwc.com/belgium/corporate/tax-administration>, 검색일자: 2020. 4. 28.

라. 코로나19 관련 추가적 세제 조치 시행

[조세동향 20-05호]

☐ 벨기에 왕실은 2020년 5월 7일 부가가치세를 규정하는 칙령 Decree No.20을 개정함¹³⁷⁾

- ▶ 2020년 5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스크와 알코올성 젤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기존 21%에서 6%로 감면된 세율이 적용됨

☐ 2020년 5월 19일 벨기에 국가사회보장국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고용주 및 직원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기한을 연기함¹³⁸⁾

136) PWC, <https://taxsummaries.pwc.com/belgium/corporate/tax-administration>, 검색일자: 2020. 4. 28.

137) News IBFD, Belgium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Royal Decree on 6% VAT Rate for Face Masks and Hydro-Alcoholic Gels Gazetted(May 7, 2020).

138) News IBFD, Belgium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Payment of Employer and Self-

- ▶ 2020년 3월 20일 납부분부터 적용되며, 연기 시 이자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 이윤이 법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음
- ▼ 벨기에 재정예산위원회는 2020년 5월 20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금 관련 조치를 채택함¹³⁹⁾
- ▶ 코로나19 극복에 사용된 의료 관련 원료 및 제품의 기부에 대한 공제가 허용됨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등에서 사업체, 자영업자 및 개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됨
 - ▶ 소득세 선납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세 인상분을 조정함
 - ▶ Tax Shelter 제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방정부가 취한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세금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음
 - Tax Shelter는 벨기에 시청각 및 영상 산업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임¹⁴⁰⁾

마. 코로나19 관련 추가 조치 제출 및 공포

[조세동향 20-06호]

- ▼ 벨기에 정부는 2020년 6월 5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결손금 이월과 관련한 준비금제도 확장 법안 55-1309호를 의회에 제출함¹⁴¹⁾
- ▶ 개인소득세를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2019년 3월 13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의 과세 이익에 대해 한시적인 결손금 이월이 허용됨
 - 해당 결손금은 다음 연도의 손실에 대비하는 준비금으로 적립하며, 준비금 청구액이 과도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됨

Employe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Deferred(May 19, 2020).

139) News IBFD, Belgium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Financial and Budgetary Committee of Parliament Adopts COVID-10 Related Tax Measures(May 20, 2020).

140) KOTRA 해외시장뉴스, 벨기에 영화·영상산업 투자 진흥을 위한 Tax Shelter 제도(2015. 12. 14),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47208>, 검색일자: 2020. 5. 28.

141) News IBFD, Belgium - COVID-19 Pandemic: Bill on Additional Loss Carry Back and Reconstruction Reserve Submitted to Parliament(Jun 20, 2020).

- ▶ 법인세를 적용받는 기업은 최대 2천만유로¹⁴²⁾의 사업 손실에 대응하는 수준의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 청구된 준비금이 실제 손실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이를 지나치게 초과할 경우 2~40%의 세금이 부과됨
 - 이러한 결손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2020년 3월 12일과 2020년 세금 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배당금을 분배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입하거나 자본을 줄이는 기업
 - 코로나19 이전부터 재정 곤란에 처한 기업
 - 합법적인 재정 및 경제적 수요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기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10만유로¹⁴³⁾ 이상 지불한 기업
 - 합동 투자 펀드, 규제 대상 부동산 기업, 톤세제(tonnage tax) 적용 기업
- ▶ 2022~2024 평가연도에 발생하는 과세 이익의 일부를 합산하여 재건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함
 - 적립금 규모는 최대 2천만유로로, 2020년에 발생한 사업 손실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함
 -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작성되어야 하며, 철회 시 세금이 부과됨
- ▣ 벨기에 각료회의는 2020년 6월 6일 식당 및 케이터링 서비스에 감면세율을 적용하는 칙령 20호 개정안을 공포함¹⁴⁴⁾
 - ▶ 식당 및 케이터링 서비스의 표준 부가가치세는 12%이며, 이에 6%의 감면세율을 적용함
 - ▶ 알코올 도수가 0.5%를 초과하는 맥주 및 알코올 도수 1.2%를 초과하는 기타 음료 제조 공을 제외한 모든 영구·임시 식당 및 케이터링 서비스에 해당함
 - 알코올 음료의 경우 표준 부가가치세율 21%를 유지하여 과세됨
 - ▶ 본 개정안은 2020년 6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됨

142) 2020. 6.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9억 2,580만원임

143) 2020. 6.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463만원임

144) News IBFD, Belgium - COVID-19 Pandemic: Council of Ministers Adopts Temporary 6% VAT Rate for Restaurants, Catering and Cafes(Jun 8, 2020).

바. 자선 목적의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보완

[조세동향 20-06회]

- ▾ 벨기에 왕실은 2020년 5월 25일 부가가치세법 12(1)(2)의 조항을 보완하는 칙령 59호를 공포함¹⁴⁵⁾

 - ▶ 부가가치세법 12(1)(2) 조항은 2019년 5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자선 목적으로 공급되는 영구 사용이 불가능한 비식품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조항임

- ▾ 본 칙령에는 자선 목적 재화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가 빈곤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재화에 적용된다는 내용을 명시함

 - ▶ 필요성이 적은 제품이나 고급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
 - ▶ 사용 후 제품의 재판매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재화에 적용됨
 - 따라서 차량, 가전제품, 원예 도구와 같은 자산은 제외됨
 - ▶ 기초 위생제품(비누, 샴푸, 치약 및 칫솔), 기초 미용·관리 제품(세정 크림, 면도기 및 면도 크림) 및 유아·어린이를 위한 제품(기저귀 등), 가정용 의료제품(아스피린, 드레싱 및 소독제), 가정용 청소제품(바닥 청소기, 세제, 화장지, 종이 손수건), 학교 및 사무 용품(학교 가방, 연필, 펜) 등이 이에 해당함

8 스웨덴

가.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02회]

- ▾ 스웨덴 정부는 2020년 2월 4일 강제적 보고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¹⁴⁶⁾

145) News IBFD, Belgium - New Royal Decree on Deemed Supply of Goods Gazetted(Jun 4, 2020).

146) Regeringskansliet, Regeringens förslag om skärpta krav för skatterådgivare till riksdagen,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0/02/regeringens-forslag-om-skarpta-krav-for-skatteradgivare-till-riksdagen/>, 검색일자: 2020. 2. 25.

- ▶ 이 법안은 EU의 보고대상 역외약정의 강제적 정보교환 지침(DAC6)을 입법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결 시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 법안은 EU 지침의 대부분을 모두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으며¹⁴⁷⁾, 의무 위반 시 31만 5천 코로나¹⁴⁸⁾의 과태료를 부과함
 - 다만, 2018년 6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약정에 대한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나. 코로나19 관련 수정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03호]

- ▣ 스웨덴 정부는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¹⁴⁹⁾
 - ▶ 기업들은 사회보장분담금, 원천징수세,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이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신청해야 함
 - 연장 기간은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는 연 1.25%의 가산금과 월 0.3%의 가산세가 적용됨
 - ▶ 이 법안은 2020년 4월 7일부터 발효되나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202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기업은 과세관청에 환급 신청할 수 있음

다. 코로나19 관련 2020년도 수정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05호]

- ▣ 스웨덴 정부는 2020년 4월 15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분

14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18-6호, 2018 참조

148) 2019. 2.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천만원임

149) 스웨덴 정부, Economic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https://www.government.se/articles/2020/03/economic-measures-in-response-to-covid-19/>, 검색일자: 2020. 3. 26.;

KPMG, Sweden: Tax relief measures to address coronavirus(COVID-19) issues,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3/tnf-sweden-tax-relief-measures-to-address-coronavirus-issues.html>, 검색일자: 2020. 3. 19.

담금의 경감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¹⁵⁰⁾

- ▶ 고용주와 개인사업자 및 사업체를 소유한 개인은 사회보장분담금 중 일정 기간의 퇴직연금분담금만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고용주 또는 개인사업자가 R&D 세액공제와 같이 이미 사회보장분담금 경감 혜택을 받았더라도 추가적인 경감이 가능함¹⁵¹⁾
 - 고용주는 사회보장분담금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 30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분담금만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 1인당 월 급여가 2만 5천 크로나¹⁵²⁾ 이하인 경우에 해당 경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와 사업체를 소유한 개인은 사회보장분담금 중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의 퇴직연금분담금만 납부할 의무가 있고, 2020년도 소득이 10만크로나¹⁵³⁾ 이하인 경우에 해당 경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부가가치세를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1년 1월 17일 사이에 신고하거나 그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부기한이 1년 연장됨

9 스위스

가. 상호합의절차 이행을 위한 규정 초안 발표

[조세동향 20-01호]

- ▾ 2019년 12월 13일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국제협약 및 이중과세방지협약(DTA)에 따른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s) 이행하기 위하여 규정 초안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함¹⁵⁴⁾
 - ▶ 스위스의 상호합의절차는 1951년 발효 후 개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관련

150) 스웨덴 정부, The Government presents the 2020 Spring Fiscal Policy Bill,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0/04/the-government-presents-the-2020-spring-fiscal-policy-bill/>, 검색일자: 2020. 5. 28.

151) News IBFD, Sweden - Spring Budget for 2020 Presented to Parliament(Apr 20, 2020).

152) 2020. 5.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0만 7,750원임

153) 2020. 5.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83만 1,000원임

154) *Bloomberg Tax*, Switzerland Seeks Comments on Draft Regulation to Implement MAP Rules Under DTAs (Dec 17, 2019).

사례의 증가와 함께 BEPS Action 14에 따른 OECD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규정 마련이 필요해짐¹⁵⁵⁾

- ▾ 개정안에는 신청 요건,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임
 - ▶ 정부 기관과 납세자의 의사소통 규칙을 포함한 MAPs 신청 절차를 마련함
 - ▶ 담당 기관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무료이나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분쟁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상환해야 함
 - ▶ 이 외에도 ① 자격 기준 ② 전담기관 설치 ③ 원천징수세 환급 절차 및 신청 마감일 등의 내용이 포함됨

- ▾ 관련 법이 미비하여 스위스 형사법(VStG)을 근거로 시행해 왔으나, 내용이 모호하여 분쟁해 온 원천징수 구제 및 처벌 절차에 관한 공식 규정 또한 마련할 예정임¹⁵⁶⁾

나. 2020년 세이프헤이븐(safe haven) 금리 발표

[조세동향 20-02호]

- ▾ 2020년 2월 3일 스위스 연방세무국은 2020년 주주 및 관련 당사자 대출에 적용되는 세이프헤이븐 금리를 발표함¹⁵⁷⁾
 - ▶ 스위스는 관계사 투자 시 과소자본 규칙(thin capitalisation rules)¹⁵⁸⁾ 및 세이프헤이븐 금리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금리를 준수한 경우에 한해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제함¹⁵⁹⁾

- ▾ 스위스프랑(CHF) 및 외화 대출에 대한 세이프헤이븐 금리는 각각 다음과 같음

155) Tax Notes International, Switzerland Proposes Updates to MAP, Withholding Relief Rules(Dec 23, 2019).

156) Tax Notes International, Switzerland Proposes Updates to MAP, Withholding Relief Rules(Dec 23, 2019).

157) News IBFD, Switzerland - Safe haven interest rates for 2020 - announced(Feb 5, 2020).

158) 관계사 투자 시 최소 30% 이상의 자기자본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해야 함, PWC, <http://tax.summaries.pwc.com/ID/Switzerland-Corporate-Group-taxation>, 검색일자: 2020. 3. 3.

159) International Law Office, <https://www.internationallawoffice.com/Account/Login.aspx?ReturnUrl=https%3a%2f%2fwww.internationallawoffice.com%2fNewsletters%2fCorporate-Tax%2fSwitzerland%2fWalder-Wyss%2fIntra-group-debt-financing-updated-safe-haven-rates-and-thin-capitalisation-rules>, 검색일자: 2020. 3. 3.

▶ 스위스프랑(CHF) 표시 대출에 대한 최소 금리는 2019년과 동일함¹⁶⁰⁾

| 구분 | 최소 금리 |
|---------|---|
| 자기자본 대출 | 0.25% |
| 차환 대출 | 부채에서 발생한 기본 이자 + 1천만CHF까지는 0.5%, 1천만CHF 초과금액부터 0.25% |

주: 해당 이자율은 2020년 2월 3일부터 적용됨

▶ 외화 대출과 관련한 주요국의 최소 금리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낮아짐¹⁶¹⁾

| 국가(화폐단위) | 2019년 | 2020년 |
|-----------|-------|-------|
| 유럽연합(EUR) | 0.75% | 0.5% |
| 미국(USD) | 3% | 2.25% |
| 중국(CNY) | 4.25% | 3.75% |
| 일본(JPY) | 0.5% | 0.5% |
| 대한민국(KRW) | 2.5% | 2% |

주: 해당 이자율은 2020년 2월 4일부터 적용됨
 자료: PWC, <https://www.pwc.ch/en/insights/tax/swiss-harbour-interest-rate-update.html>, 검색일자: 2020. 2. 26.

- 상기한 금리는 주주 또는 관련 당사자로부터 받은 외화 대출에도 적용되며, 사업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 독립관계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¹⁶²⁾에 따라 이전 가격 조사 등의 수행을 통해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¹⁶³⁾

160) KPMG, SFTA Circular - Interst Rates 2020,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ch/pdf/sfta-circular-en.pdf>, 검색일자: 2020. 2. 25.

161) PWC, Switzerland publishes updated safe harbour interest rates, <https://www.pwc.ch/en/insights/tax/swiss-harbour-interest-rate-update.html>, 검색일자: 2020. 2. 26.

162)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공모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비즈니스 거래 원칙을 칭하며, 공정성을 위해 양 당사자는 거래와 관련된 정보에 동일하게 접근함,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terms/a/armslength.asp>, 검색일자: 2020. 2. 26.

163) News IBFD, Switzerland - Safe haven interest rates for 2020 - announced(Feb 5, 2020).

10 스페인

가. EU 조세분쟁해결절차 입법

[조세동향 20-02회]

- ▣ 스페인 정부는 2020년 2월 5일 EU 조세분쟁해결절차 도입 관련 법령을 고시함¹⁶⁴⁾

 - ▶ 이 법령은 기존의 조세분쟁해결 법령을 개정하여 EU 조세분쟁해결절차 지침을 도입하는 것임
 - 2017년 10월 공개된 EU 중재지침은 회원국들에 이를 입법 등의 절차로 도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EU 회원국들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 법령은 2020년 2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 법령의 주요 내용은 EU 지침이나 다른 EU 회원국의 도입내용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¹⁶⁵⁾

 - ▶ EU 내로 한정하여 적용되며, 조약 등의 해석과 적용에 모든 소득과 자산을 포함함
 - 다만, 조세사기 등과 연루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의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 ▶ 기존의 상호합의절차 기간에 납부세액 등에 대한 가산금 미부과 규정을 폐지함

나. 조세연간계획 지침 공개

[조세동향 20-02회]

- ▣ 스페인 과세관청은 2020년 1월 28일 조세와 관세에 대한 연간계획 지침을 승인하고 관보에 게재함¹⁶⁶⁾

164) Agencia Estatal Boletín Oficial del Estado, <https://www.boe.es/boe/dias/2020/02/05/pdfs/BOE-A-2020-1651.pdf>, 검색일자: 2020. 2. 24.

16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1호, 2020; 신상화·박수진, 『조세조약상 강제적 중재 규정 분석(상)』, 세법연구 19-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국제규범 편 참조

- ▶ 스페인 과세관청은 조세부정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근본적이며 영구적인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2020~2023년 기간의 과세관청 전략계획하에 2020 연간 지침을 발간함
 - 과세관청이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 지침은 ① 정보와 조력 ② 조세부정 예방과 자발적 의무이행 촉진 ③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조사와 대응 ④ 징수단계에서 부정 통제 ⑤ 국가 간 협력체계의 5가지로 구성 되어 있음
- ☑ 정보와 조력은 신기술을 이용한 납세자에 대한 조력과 정보수집을 향상시키는 것임¹⁶⁷⁾
- ▶ 포괄적인 전자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전자수단을 통해 납세자에게 정보와 조력을 제공함
 - ▶ 통계조사(납세자 등록)의 설계 및 개발, 과세관청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추진함
 - ▶ 납세자의 자발적 의무이행 증진을 위해 개인소득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외 원천 소득의 고지를 강화함
- ☑ 과세관청은 조세부정 예방과 자발적 의무이행 촉진을 위해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맞춤
- ▶ 통계조사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함
 - 실제로 상업적 또는 경제적 수명주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통계조사의 초점을 맞춤
 - OECD의 최근 과제인 “시작부터의 정확성(Right from the start)”을 적용하여 사업자 등록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임
 - 예방적 위험 지도를 이용하여 고위험 실체의 설립을 조기에 식별함
 - ▶ 납세자의 자가평가 및 정보적 자료 신고를 실행하도록 하고 정보의 질적 요소를 강화 하며, 수출입 자료 등에 집중하여 관세와 소비세 측면의 예방 전략을 수립함
 - ▶ 이전가격 사전합의 등의 정보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예방적 수단을 강화함
- ☑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조사와 대응을 위해 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분석과 내국세 등의 통제를 강화함

166) Agencia Estatal Boletín Oficial del Estado,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2020-1201>, 검색 일자: 2020. 2. 24.

167) News IBFD, Spain - Resolution on Annual Plan for Tax and Customs Control 2020 gazetted(Feb 4, 2020).

- ▶ 해외 자산소재 신고, 부가가치세 실시간 전자 신고 및 국가별 보고서와 정보교환 등의 신규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함
- ▶ 내국세 통제를 위해 보다 적시성 있고 향상된 행정을 수행함
 - 대규모 납세자들에 대한 동시적이며 협력적인 조사 관계를 실행하고, 숨겨진 사업활동이나 회사 설립의 남용에 조사를 집중함
 - 향상된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부(副)의 분석을 수행함
- ▣ 징수단계에서 부정 및 납부와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고 국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 교환에 집중하고 있음
- ▶ 납부위험평가, 조세범죄의 기소, 제3자의 조세의무 강화 등 납부단계에서의 부정통제를 2019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 세액공제, 부유세, 부동산 거래, 거소 변경 등의 내용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을 강화함

다. 디지털서비스세 및 금융거래세 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03호]

- ▣ 스페인 정부는 2020년 2월 28일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와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19년에 제출되었던 초안과 마찬가지로 EU 지침을 따르며, 디지털 서비스세는 3% 세율로 부과되고 0.5%의 과태료가 부과됨
 - 디지털 서비스세는 2020년 12월 20일까지 부과하지 않고 기업 내 데이터 이전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는 최대 40만 유로¹⁶⁸⁾를 한도로 하는 내용이 추가됨¹⁶⁹⁾
- ▶ 금융거래세는 기업가치가 10억유로¹⁷⁰⁾를 넘는 스페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금융중개인에게 0.2%의 세율로 부과됨¹⁷¹⁾

168)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4,267만원임

169) *Bloomberg Tax*, Spain to Exclude Intercompany Data Transfers From Digital Tax(Mar 3, 2020).

170) 2020. 3.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3,575억 3천만원임

171)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spain-sends-bill-on-financial-transaction-tax-to-parliament-2020>, 검색일자: 2020. 3. 16.

라. 코로나19 관련 납세기한 연장 법령 관보 게재

[조세동향 20-03호]

- ▣ 스페인 정부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Royal Decree-Law 7/2020)을 관보에 게재함¹⁷²⁾

 - ▶ 보건, 가족, 관광, 임시 금융, 행정 및 조세와 관련한 조치로서 납세기한이 6개월 연장되며 연장기한의 첫 3개월 동안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율이 증가하지 않음
 - ▶ 이 법안은 2020년 3월 13일 발효되고 정부가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하는 한 계속 적용됨

- ▣ 스페인 정부는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로 인한 조세 영역에서의 행정 절차 정지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행령(Royal Decree 465/2020)을 관보에 게재함

 - ▶ 스페인 정부는 행정 절차 정지 조치 등을 포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시행령(Royal Decree 463/2020)을 발표하였으나, 행정 절차 정지 조치는 소득 신고 또는 납세 환급 자진 신고와 같은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음

- ▣ 스페인 정부는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관련 납세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 조치 법안(Royal Decree-Law 8/2020)을 관보에 게재함¹⁷³⁾

 - ▶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납부기한이 개시된 세목의 경우 2020년 4월 30일까지 그 기한이 연장되고, 조세와 관련한 일정한 행정 절차의 기한이 연장됨¹⁷⁴⁾
 -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집행 기간 내에 통지되어 과세관청이 평가한 세목 및 과세관청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기로 조정된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 이미 결정된 경매나 자산 양도 절차의 기한 연장
 - 신청, 압수 절차, 조세정보 요구, 특정 절차의 이의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답변기한 연장

172) 스페인 정부, <https://www.boe.es/boe/dias/2020/03/13/pdfs/BOE-A-2020-3580.pdf>, 검색일자: 2020. 3. 19.; News IBFD, Spain - Urgent tax measures related to COVID-19 - gazetted(Mar 16, 2020).

173) 스페인 정부, <https://www.boe.es/boe/dias/2020/03/18/pdfs/BOE-A-2020-3824.pdf>, 검색일자: 2020. 3. 23. News IBFD, Spain - COVID-19 pandemic: urgent tax measures - clarification of state of alarm(Mar 19, 2020).

174) News IBFD, Spain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reinforcement measures gazetted(Mar 20, 2020).

- 강제 집행절차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 제공의 기한 연장
- ▶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은 과세 및 과태료 적용과 관련한 행정 절차 및 소멸시효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심판 제기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기산됨
- ▶ 법안은 2020년 3월 18일 발효되고, 1개월간 적용되며 다른 적용기한이 정해진 조치를 제외하고는 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음

마. 코로나19 관련 문화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세 조치

[조세동향 20-05호]

- ▼ 스페인 정부는 2020년 5월 6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문화산업 및 조세 조치를 승인하는 법령(Real Decreto-ley 17/2020, de 5 de mayo)을 관보에 게재함¹⁷⁵⁾
 - ▶ 스페인 영화 제작기업의 총생산비용 및 해외 영화 제작기업의 스페인 내 지출비용의 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함¹⁷⁶⁾
 - 100만유로 이하의 액수에 대한 공제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되고,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한 공제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됨
 - 경감되는 비용의 최대 한도는 300만유로에서 1천만유로로 확대됨
 -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
 - ▶ 개인소득세 납세자와 비거주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기부금 소득공제 비율은 5% 인상됨
- ▼ 스페인 정부는 2020년 5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여 기업의 사회 보장분담금을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지원을 받은 기업의 이익 배당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된 법령(Real Decreto-ley 18/2020, de 12 de mayo)을 관보에 게재함¹⁷⁷⁾

175) 스페인 정부, Real Decreto-ley 17/2020, de 5 de mayo, por el que se aprueban medidas de apoyo al sector cultural y de caracter tributario para hacer frente al impacto economico y social del COVID-2019, <https://www.boe.es/boe/dias/2020/05/06/pdfs/BOE-A-2020-4832.pdf>, 검색일자: 2020. 5. 28.

176) News IBFD, Spain-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New Rules Supporting Cultural Sector (May 15, 2020).

177) 스페인 정부, Real Decreto-ley 18/2020, de 12 de mayo, de medidas sociales en defensa del empleo, <https://www.boe.es/boe/dias/2020/05/13/pdfs/BOE-A-2020-4959.pdf>, 검색일자: 2020. 5. 28.

- ▶ 임시 노동력 구조조정 계획(Expediente de Regulación Temporal de Empleo: ERTE)에 따르면 일시적인 근로 계약 정지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거 및 제반 사항들에 의하여 입증된다면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 적용됨¹⁷⁸⁾
 - 전부 불가항력은 기업이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경우이고, 일부 불가항력은 경제적 활동을 부분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기업과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중지한 기업으로 구분됨
 - 현행 규정에 따라 조세피난처로 간주되는 관할에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 사회보장분담금은 2020년 2월 29일 기업의 근로자 수에 따라 전부 불가항력인 경우 50명 미만은 100%, 50명 이상은 75%가 경감되며, 일부 불가항력인 경우 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 재개한 기업 중 50명 미만 기업은 5월 85%, 6월 70%, 50명 이상 기업은 5월 60%, 6월 45%가 경감되고 경제활동을 중지한 기업 중 50명 미만 기업은 5월 60%, 6월 45%, 50명 이상 기업은 5월 45%, 6월 30%가 경감됨

| 적용되는 불가항력의 종류 | | | 사회보장분담금 경감률 | |
|---------------|----------------|----|-------------|--------|
| | | | 50명 미만 | 50명 이상 |
| 전부 불가항력 | | | 100% | 75% |
| 일부 불가항력 | 경제 활동 부분적으로 재개 | 5월 | 85% | 60% |
| | | 6월 | 70% | 45% |
| | 경제 활동 중지 | 5월 | 60% | 45% |
| | | 6월 | 45% | 30% |

자료: 스페인 정부 관보, 「고용을 위한 사회적 조치에 관한 법령」, <https://www.boe.es/boe/dias/2020/05/13/pdfs/BOE-A-2020-4959.pdf>, 검색일자: 2020. 5. 28.

- ▶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되는 근로자 50명 이상의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이익 배당은 금지되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해에만 해당되며, 해당 기업이 면제되는 사회보장분담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이익 배당이 금지되지 않음

178) News IBFD, Spain - COVID-19: Emergency Tax Measures - Limitation of Profit Distributions and Social Security Relief Measures for Companies(May 19, 2020).

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 법안 발표

[조세동향 20-06호]

- ▶ 스페인 정부는 2020년 6월 2일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함¹⁷⁹⁾

 - ▶ 스페인 시장 내에서 조달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조, 수입 및 EU 회원국 으로부터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1kg당 0.45유로¹⁸⁰⁾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를 부과함¹⁸¹⁾
 - ▶ 다음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를 면제함¹⁸²⁾

 - 제조, 수입, 구매하여 바로 다른 EU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 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가 폐기 된 경우
 - 의약품 포장에 쓰인 경우
 - ▶ 법안은 EU 폐기물기본지침(2018/851) 및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EU지침(2019/904)을 스페인 국내법으로 제정한 것임
 -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2022년도 사용량을 2026년까지 50%, 2030년까지 70%로 경감 하는 것이 목표임
 - ▶ 법안은 2021년 7월 21일부터 발효됨

179) 스페인 정부, <https://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ferencias/documents/2020/refc20200602.pdf>, 검색일자: 2020. 6. 30.

180) 2020. 6.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5원임

181) News IBFD, Spain - Council of Ministers Start the Parliamentary Procedure to Introduce a Single-Use Plastic Products Tax(Jun 3, 2020).

182) EY, Spain publishes proposal for indirect tax on non-reusable plastic packaging, https://www.ey.com/en_gl/tax-alerts/spain-publishes-proposal-for-indirect-tax-on-non-reusable-plastic-packaging, 검색일자: 2020. 6. 8.

11 아일랜드

가. 부가가치세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 매뉴얼 발표

[조세동향 20-01호]

2019년 12월 20일 아일랜드 국세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변경 사항에 대해 신규 작성한 매뉴얼인 eBrief No.220/19를 발표함¹⁸³⁾

역내 부가가치세 면제 공급과 관련한 실질적인 적용방안이 마련됨¹⁸⁴⁾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ICS(intra-Community supply)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매입업체는 다른 회원국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급업체는 매입업체의 국가코드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보유해야 함
 - 공급업체 및 매입업체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계산서에 기재해야 함
 - 상품은 다른 회원국으로 발송 또는 운송해야 하며, 공급업체는 EU의 부가가치세 정보교환 시스템인 VIES에 신고해야 함
- ▶ 상품이 다른 회원국으로 발송 또는 운송되었다는 것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
 - 공급업체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다음 표 A 분류의 서류 2종이나, A 분류에서 1종 및 B 분류에서 1종으로 2개의 서류를 보유해야 함

| A 분류 | B 분류 |
|------------------------|---------------------------------|
| ① 서명된 도로운송장(CMR) 문서/노트 | ① 상품 운송과 관련된 보험 정책 |
| ② 선하증권 | ② 발송 및 운송에 대한 지불을 입증하는 은행 서류 |
| ③ 항공화물 송장 | ③ 상품의 목적지 도착을 확인하는 공증인 등의 공식 문서 |
| ④ 상품 운송업체의 송장 | ④ 상품의 현지 보관을 확인하는 도착국 창고의 영수증 |

183) News IBFD, Ireland - Value added tax - manuals created or updated(Jan 10, 2020).

184) 아일랜드 국세청,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zero-rating intra-Community supplies,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adm/value-added-tax/part06-rates-and-exemptions/intra-community-supply-of-goods/substantive-requirements-for-zero-rating-intra-community-supplies.pdf>, 검색일자: 2020. 1. 21.

- 매입업체가 상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매입업체가 상품을 운송했거나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진술서에는 ① 진술서 발행일 ② 매입업체명 및 주소 ③ 상품의 수량 및 특성 ④ 상품 도착 날짜 및 장소가 포함되어야 함

▣ 콜오프 재고(call-off stock)의 부가가치세 처리 관련 매뉴얼이 작성됨¹⁸⁵⁾

▶ 콜오프 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동함

- 공급업체와 구매예정업체의 사전 계약에 따라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상품이 발송되며, 운송 시 상품 구매예정업체의 부가가치세 등록 정보가 공급업체에 고지됨
- 상품은 발송받은 회원국에 보관되어 구매업체의 필요에 따라 수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품의 소유권은 회원국에 도착한 시점보다 늦게 구매자에게 이전될 수도 있음
- ▶ 공급업체의 상품 고정사업장이 도착국에 없고, 구매업체가 즉시 혹은 12개월 이내에 상품을 인수할 경우 콜오프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단순화 조치가 적용됨
- 공급업체는 상품 도착국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등록할 필요가 없음

▣ 연쇄거래(chain transaction)와 관련한 지침이 마련됨¹⁸⁶⁾

- ▶ 하나의 물품이 EU 내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일련의 다중 거래망을 통해 전달되는 연쇄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는 결과적으로 최초 공급국가와 최종 소비국 사이에서 이루어짐¹⁸⁷⁾
- ▶ 연쇄거래에서 상품 운송은 중개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때 중개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음
- 중개업체는 상품 운송국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최초 공급업체에 전달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해당 상품은 중개업체가 운송하는 상품이 아닌 중개업체에 공급되는 상품으로 간주함

185) 아일랜드 국세청, VAT treatment of call-off stock arrangements,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value-added-tax/part03-taxable-transactions-goods-ica-services/call-off-stock-arrangements/vat-treatment-of-call-off-stock-arrangements.pdf>, 검색일자: 2019.1.20.

186) 아일랜드 국세청, Transfer of Business,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value-added-tax/part03-taxable-transactions-goods-ica-services/transfer-of-business/transfer-of-business.pdf>, 검색일자: 2020. 1. 20.

187) PwC, <https://www.pwc.com/sk/en/tax-services/value-added-tax/chain-transactions-and-vat.html>;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19-5호 재인용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은 상기한 '역내 부가세 면제 공급'에 제시된 조건과 동일함
- 중개업체는 상품의 역내 운송을 담당하는 업체임과 동시에 물품을 운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관해야 함
 - 중개업체는 ① 계약서 ② 지불방식 ③ 기타 입증가능 문서 ④ 계약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경제적 현황과 같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됨
 - 상품운송 증명에는 ① 주문서 ② 운송명세서 ③ 공급업체 송장 ④ 자금이체증명서 ⑤ 창고 영수증 사본 ⑥ 운송수단 세부사항(차량등록번호, 항공편 번호, 선박 항해 세부사항 등)이 포함됨

나. 고용주의 피고용인 변호사 비용 대리 지불에 대한 과세 처리

[조세동향 20-02호]

- ▾ 2020년 1월 24일 아일랜드 국세청은 eBrief No.018/20을 발행하여 임원진 또는 직원을 대신해 고용주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의 과세 처리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함¹⁸⁸⁾
 - ▶ 특정 상황에 따라 고용주는 고용인을 대신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이때 세금통합법 1997의 section 112 혹은 123에 따라 고용인에게 소득세가 청구될 수 있음
- ▾ 업데이트된 매뉴얼은 고용주가 고용인을 대신하여 지불한 변호사 비용 중 고용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에 대해 규정함
 - ▶ 고용주가 의뢰한 수사나 징계 절차에 대한 비용, 폐업 및 해고 시 보상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고용법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직원이 취한 법적 조치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함
 - ▶ 고용주가 고용인의 법적 대리인에게 해당 건에 대한 청구서를 발급받은 후에 지불한 수수료여야 하며, 이때 수수료는 고용주가 직접 지급해야 함

188) 아일랜드 국세청, Revenue eBrief No. 018/20,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0/no-0182020.aspx>, 검색일자: 2020. 2. 17.

- ▶ 법원 명령 혹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합의 계약에 따라 특정 기간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에 해당함

다. 코로나19 관련 국세청 긴급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3호]

- ▼ 2020년 3월 13일 아일랜드 국세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금유동성 및 거래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정 관련 긴급 조치를 발표함¹⁸⁹⁾
 - ▶ 아일랜드의 조세 목적상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300만유로¹⁹⁰⁾ 미만인 기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됨
- ▼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체납 이자를 면제하고 일부 조세 관련 집행 및 검토 활동을 중단함
 - ▶ 2020년 1~2월의 부가가치세 및 2~3월의 고용주 원천징수세에 대한 체납 이자를 면제함
 - ▶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까지 조세 관련 모든 채무 집행 활동을 중단함
 - ▶ 2020년 3월 예정이었던 하청업체에 대한 RCT(Relevant Contract Tax) 요율 검토를 중단함
 - RCT는 건설, 임업 및 육류 가공 산업에서 원수급인이 하청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원천세임¹⁹¹⁾
- ▼ 주요 제약 및 의약품의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세관에서 관련 품목에 'Green' 라우팅 등급을 부여함
 - ▶ AEP(Automated Entry Processing)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한 후 Green 등급을 받으면, 관련 증빙 문서 및 물품에 대한 검사를 생략함¹⁹²⁾

189) News IBFD, Ireland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to assist SMEs experiencing cash flow difficulties(Mar 18, 2020).

190)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억 7천만원임

191) 아일랜드 국세청, Relevant Contracts Tax(RCT), <https://www.revenue.ie/en/self-assessment-and-self-employment/rct/index.aspx>, 검색일자: 2020. 3. 19.

라. 코로나19 관련 R&D 초과 공제세액 조기 환급

[조세동향 20-04호]

- ▼ 2020년 4월 1일 아일랜드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위기와 관련하여, R&D 초과 공제세액 조기 환급에 대한 조치를 발표함¹⁹³⁾

 - ▶ 아일랜드는 세금통합법 Section 766에 근거하여 R&D 초과 공제세액을 3회로 나누어 현금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 지급 예정 세액에 대해 각 분할 지급 예정일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¹⁹⁴⁾

- ▼ 국세청 온라인서비스(ROS)의 MyEnquiries를 통해 신청하며, 조기 지급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함

 - ▶ 신청 시 환급금이 기재된 2019 회계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업의 세금 신고서 제출을 촉진할 수 있음

마. 국내 법인의 대응조정 구제 청구에 관한 매뉴얼 발표

[조세동향 20-05호]

- ▼ 아일랜드 국세청은 2020년 4월 24일 대응조정(correlative adjustment) 대상 기업의 구제 청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세금 및 관세 매뉴얼인 eBrief 068/2020을 발표함¹⁹⁵⁾

 - ▶ 이 매뉴얼은 OECD 모범조세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 MTC) 제9조의 내용에 근거하여 마련됨
 - ▶ ‘대응조정’은 아일랜드가 다른 나라와 맺은 이중과세협약(DTA)의 조건에 따른 이익의 조정으로 정의되며, 조정을 통해 아일랜드 법인이 외국의 세무당국에 아일랜드

192)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customs/import-export-policy/customs-import-procedures-section-01-03.pdf>, 검색일자: 2020. 3. 25.

193) 아일랜드 국세청, Revenue eBrief No. 056/20,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0/no-0562020.aspx>, 검색일자: 2020. 4. 20.

194) Deloitte, Urgent Revenue update to R&D Performing companies, <https://www2.deloitte.com/ie/en/pages/tax/articles/urgent-revenue-update-to-r-d-performing-companies.html>, 검색일자: 2020. 4. 20.

195) 아일랜드 국세청, Revenue eBrief No. 068/20,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0/no-0682020.aspx>, 검색일자: 2020. 5. 21.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 외에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함

- ▣ 대응조정으로 이중과세 대상이 된 아일랜드 법인은 자국의 국세청에 세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매뉴얼의 부록에는 제출 필요 정보와 문서가 열거되어 있으며, 해당 목록은 아일랜드 상호합의절차(MTA) 요청지침 부록3에 명시된 정보와 동일함
 - ▶ 대응조정 구제 청구의 구제 범위는 과세통합법 1997(Taxes Consolidation Act 1997)의 Section 864(1)에 근거하여 권한이 부여된 국세공무원에 의해 결정되며, 구제가 필요한 경우 평가 세액이 수정되고 세금이 환급됨

- ▣ 조약 대상국이 부과하는 이자 또는 벌금과, 조약 대상국의 법에 따라 시행되는 2차 조정 또는 이익 송환에 대한 구제는 포함되지 않음

바.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발표

[조세동향 20-05호]

- ▣ 아일랜드 국세청은 2020년 4월 17일, 보건서비스행정부(Health Service Executive, 이하 'HSE'), 병원 및 특정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코로나19 대응 관련 물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eBrief 063/2020을 발표함¹⁹⁶⁾

 - ▶ 이와 관련하여 EU는 Commission Decision 2020/491을 통해 EU 외 지역에서 수입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용품에 대해 2020년 1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¹⁹⁷⁾
 - ▶ 개인 보호 장비, 온도계, 손 소독제, 치료용 호흡기를 비롯한 산소 치료 장치와 같은 의료용 인공호흡기 및 전문 호흡기 등의 품목들이 이에 해당함

- ▣ HSE 및 의료관계자가 코로나19의 영향 혹은 위험 대상이거나 이를 대응하는 사람들

196) News IBFD, Ireland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Temporary VAT Zero Rating of Supplie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Ventilators and Other Medical Products(May 11, 2020).

197) 아일랜드 국세청, Revenue eBrief No. 063/20,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0/no-0632020.aspx>, 검색일자: 2020. 5. 22.

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¹⁹⁸⁾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품은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다른 적격 단체가 코로나19 구제 수행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만 양도할 수 있으며, 이외의 대여 및 양도에는 세금이 부과됨

- ▣ 본 조치는 2020년 4월 9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추후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임

12 영국

가. EU 조세분쟁해결절차 입법

[조세동향 20-01호]

- ▣ 영국 과세관청은 2020년 1월 20일 EU 조세분쟁해결절차 도입 계획을 공개하고, 이후 관련 법령을 고시함¹⁹⁹⁾
 - ▶ 영국 과세관청은 2020년 1월 중 EU 지침을 채택하는 중재절차 관련 법령을 공지하고 2018년 1월 이후 소득 및 자본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할 예정임
 - 2017년 10월 공개된 EU 중재지침은 회원국들에 이를 입법 등의 절차로 도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2019 재정법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령 제정을 과세관청에 위임하고 있음
 - ▶ 이후 2020년 1월 22일 관련 법령(The Double Taxation Dispute Resolution (EU) Regulations 2020)을 관보에 고시함
- ▣ 새로운 법령은 납세자의 중재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

198) 아일랜드 국세청, Revenue eBrief No. 063/20,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0/no-0632020.aspx>, 검색일자: 2020. 5. 22.

199) 영국 정부, Legislating the Double Taxation Dispute Resolution (EU) Regulations 20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egislating-the-double-taxation-dispute-resolution-eu-regulations-2020/legislating-the-double-taxation-dispute-resolution-eu-regulations-2020#policy-objective>, 검색일자: 2020. 1. 30.

- ▶ 새로운 규정은 기존 연합중재협약(the Union Arbitration Convention)을 따르고 있는 영국 법령이나 다른 회원국과의 협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적인 수단임
- ▶ 중재 대상을 기존에 비해 보다 폭넓은 항목으로 확대함
 - 기존에는 이전가격과 고정사업장에 한정되던 것을 조세조약의 모든 해석과 적용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함
- ▶ 납세자가 중재를 거부하는 회원국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부가 중재 체계의 절차 준수를 감시하도록 하며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절차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있음

나. 2020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03호]

- ▣ 영국 재무부장관은 2020년 3월 11일 2020년도 예산안(Budget 2020)을 의회에 제출함²⁰⁰⁾
 - ▶ 정부는 지속가능하며 효율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조세 환경을 유지하여 혁신적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업가 세액 경감제도의 평생 한도 인하, R&D 지출 세액 공제율 인상, 비주거용 건물 및 건축물 소득공제 비율 인상, 레드 디젤 세액 경감제도의 적용 대상이 일부 제외됨
 - ▶ 기업가 세액 경감제도(Entrepreneur's Relief)의 평생 한도는 2020년 3월 11일부터 1천만 파운드²⁰¹⁾에서 100만 파운드²⁰²⁾로 감소됨
 - 개인 기업가가 보유한 소정의 사업체 전부 또는 일부 매각으로부터 얻은 자본 이득에 대하여 10%의 경감된 세율로 과세함²⁰³⁾
 - ▶ R&D 지출 세액 공제율은 2020년 4월 1일부터 12%에서 13%로 인상됨

200) 영국 정부, Budget 2020: tax-related documents,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budget-2020-tax-related-documents>, 검색일자: 2020. 3. 18.;

News IBFD, United Kingdom - Budget 2020 - presented(Mar 11, 2020).

201) 2020. 3.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9억 7,490만원임

202) 2020. 3.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억 9,749만원임

2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18-2호, 2018.

- 정부는 세액 공제 대상에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투자 포함 여부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 비주거용 건물 및 건축물 소득공제(Structures and Buildings Allowance) 비율은 2020년 4월 1일부터 2%에서 3%로 인상됨
- ▶ 레드 디젤 세액 경감제도(Red Diesel Relief)는 철도, 가정 난방, 농업 이외의 영역에서는 2022년 4월부터 폐지될 것임
- 현재 건축업과 같이 도로 외에서 디젤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 디젤 소비보다 경감된 세율로 과세되고 있음
- ▣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고용 세액 공제액, 청소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아동신탁기금 가입 한도가 인상되고, 여성 위생용품 및 디지털 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고용 세액 공제(Employment Allowance)는 2020년 4월부터 3천파운드²⁰⁴⁾에서 4천파운드²⁰⁵⁾로 인상됨
- ▶ 청소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아동신탁기금 가입 한도는 4,368파운드²⁰⁶⁾에서 9천파운드²⁰⁷⁾로 인상됨
- ▶ 여성 위생용품 및 디지털 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이 영국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은 2019년 12월 24일 디지털 출판물이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결함²⁰⁸⁾
- ▣ 간접세와 관련하여 영국 비거주자의 인지 및 토지세 추가 부과, 국민보험분담금 납부 최저 소득 기준 인상, 플라스틱세 도입이 이루어짐
- ▶ 영국 비거주자가 영국과 북아일랜드 내의 주거용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인지 및 토지세(Stamp Duty Land Tax)는 2021년 4월 1일부터 2%의 세율이 추가 부과됨

204) 2020. 3.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55만원임

205) 2020. 3.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6만원임

206) 2020. 3.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2만원임

207) 2020. 3.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65만원임

208) 영국 정부, News Corp UK and Ireland Ltd v The Commissioners for HM Revenue and Customs: [2019] UKUT 0404 (TCC), <https://www.gov.uk/tax-and-chancery-tribunal-decisions/news-corp-uk-and-ireland-ltd-v-the-commissioners-for-hm-revenue-and-customs-2019-ukut-0404-tcc>, 검색일자: 2020. 3. 26.; Tax Notes International, HMRC Not Changing VAT Rate For Digital Publications Despite Loss(Feb 24, 2020).

- ▶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국민보험분담금(NCIs)을 납부해야 하는 최저 소득 기준을 2020년 4월부터 9,500파운드²⁰⁹⁾로 인상함
- ▶ 재활용 플라스틱을 30%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의 생산 및 수입에 대하여 2022년 4월부터 톤당 200파운드²¹⁰⁾의 플라스틱세가 부과될 예정임
- ▣ 2020년 4월 1일부터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가 실행됨
 - ▶ 2018년 예산안²¹¹⁾에서 발표된 대로 특정 디지털 기업의 매출에 대하여 2%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부과됨
 - 영국 정부는 디지털 마켓 운송료에도 디지털 서비스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 영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협조할 것이며, 국제적인 해결책이 마련된다면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할 예정임

다. 코로나19 관련 납세기한 연장 등 긴급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3회]

- ▣ 영국 정부는 2020년 3월 11일 2020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사업용 재산세 감면, 지방세 감면을 위한 기금 조성, 납세 지원제도와 관련한 조세정책을 발표함²¹²⁾
 - ▶ 여가,接客업에 대한 사업용재산세가 100% 감면되고, 경제적 취약 계층의 지방세 감면을 위한 기금(Hardship Fund)을 조성함
 - ▶ 영국 과세관청은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세기한 서비스와 코로나19(COVID-19) 헬프라인을 운영함
 - 경제적 위기에 있고 미지불된 체납 세액이 있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납세기한

209) 2020. 3.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30만원임.

210) 2020. 3.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만원임.

2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18-2호, 2018.

212) 영국 정부, Financial support for businesses during coronavirus(COVID-1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ance-to-employers-and-businesses-about-covid-19/covid-19-support-for-businesses>, 검색일자: 2020. 3. 20.;

News IBFD, United Kingdom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Mar 19, 2020).

서비스(Time To Pay Service)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각자 처한 상황과 책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임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납세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 2천명의 상담원이 있는 COVID-19 헬프라인(전화 서비스)을 운영함

📌 영국 정부는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용 재산세 면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매 유통, 접객, 여가 기업은 면제 기간을 확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과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함²¹³⁾

- ▶ 영국 정부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2020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용재산세가 면제 되고, 소매 유통, 접객, 여가 기업에 대하여 12개월 동안 면세된다고 발표함²¹⁴⁾
- ▶ 모든 영국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자동 연장됨
 - 정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및 회수액은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임
- ▶ 개인사업자가 자진 신고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이 2020년 7월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그 기한이 2021년 1월까지 자동 연장됨
 - 연장 기간 동안 과태료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라. LISA 계좌 인출수수료 감면 시행규칙 시행

[조세동향 20-05호]

📌 영국 재무부는 2020년 5월 13일 Lifetime ISA²¹⁵⁾(이하 'LISA') 계좌의 인출수수료를 감면 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함²¹⁶⁾

213) 영국 정부, Financial support for businesses during coronavirus(COVID-1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ance-to-employers-and-businesses-about-covid-19/covid-19-support-for-businesses>, 검색일자: 2020. 3. 25.

214) News IBFD, United Kingdom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Mar 19, 2020)

215) ISA는 Investment Savings Account(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어로 개인저축계좌와 유사함. 영국에서는 1999년 4월부터 국민 재산을 증가시킨다는 정책 목적하에 도입되었고, 예금성 ISA, 투자형 ISA,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Help to Buy ISA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 형태가 있음. Lifetime ISA(LISA)는 영국 정부가 2017년 4월 청년 세대의 주택 구입과 노후 대비 장기적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60세 이후에 당해 LISA 계좌에서 인출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매년 말 당해 연도 입금액의 25%를 환급하는 상품임. 특히 중·저소득층의 가입이 높음; 『중앙일보』, 「연금보다 좋다는 영국 ISA 뭐가 다른가」, 2017. 8. 20.; 정원석·마지혜, 「영국의 개인저축계좌 다변화와 시사점」, KIRI리포트 제416호, 보험연구원, 2017.

216) News IBFD, United Kingdom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The Individual Savings Account

- ▶ 영국 재무부는 2020년 5월 1일 본 일시적 조치를 발표하였음²¹⁷⁾
 -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하여 LISA 계좌에 보유 중인 금액을 인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상품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 LISA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미승인 조기인출 수수료를 기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함
 - 조기인출 시 LISA 계좌에 제공되었던 정부 혜택(당해 연도 적립액의 20%를 보너스로 지급)은 당연히 회수됨
 - 다만, 조기인출자는 금번 조치로 인하여 기존에 인출수수료 명목으로 부과되었던 인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받지 않음
- ▶ 해당 규칙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패키지의 일부로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2020년 3월 6일 인출분부터 소급 적용됨
 - 영국 재무부는 2020년 3월 6일 이후 LISA 계좌 적립금을 조기인출하여 25%의 수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차액을 환급할 예정임

13 오스트리아

가. 소득세율 인하 계획 공개

[조세동향 20-02호]

- ▣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2020년 1월 30일 개인소득세 경감을 위한 세율 인하 계획을 공개함²¹⁸⁾

(Amendment No. 3) (Coronavirus) Regulations 2020(S.I. 2020/506) made(May 15,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5-15_uk_1, 검색일자: 2020. 5. 28.

217) News IBFD, United Kingdom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Temporary Reduction of Charge on Early Withdrawals of LISAs(May 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5-04_uk_3.html, 검색일자: 2020. 5. 22.

218) Bundesministerium Finanzen, Finanzminister Blümel: 2021 kommt die Senkung der ersten Lohnsteuerstufe, <https://www.bmf.gv.at/presse/pressemeldungen/2020/jaenner/2021-senkung-erste-lohnsteuerstufe.html>, 검색일자: 2020. 2. 25.

- ▶ 개인소득세율에 대해 2021년에 가장 낮은 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고, 2022년에 중간 세율을 35%에서 30%, 42%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으로 계획함
- 현행 오스트리아 개인소득세율은 면세구간을 제외하고 5단계(25~50%)로 과세되고 있음

〈표 11-2〉 현행 오스트리아 개인소득세율

| 소득구간 | 기존 세율 | 변경 예정 세율 |
|--------------------|-------|----------|
| 11,000유로 이하 | 면제 | - |
| 11,001~18,000유로 | 25% | 20% |
| 18,001~31,000유로 | 35% | 30% |
| 31,001~60,000유로 | 42% | 40% |
| 60,001~90,000유로 | 48% | - |
| 90,001~1,000,000유로 | 30% | - |

주: 일반적 세율로 일시적 기간 세율이나 특정 소득에 별도로 적용되는 세율은 제외함

자료: Bundesministerium Finanzen, <https://www.bmf.gv.at/themen/steuern/arbeitnehmerinnenveranlagung/steuertarif-steuerabsetzbetraege/steuertarif-steuerabsetzbetraege.html>, 검색일자: 2020. 2. 25.

- ▶ 오스트리아 정부는 국민의 윤택한 생활, 부채 경감, 환경 보호의 3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율 인하는 해당 정책의 일환으로 밝히고 있음

나. 코로나19 관련 면세 및 납세기한 연장

[조세동향 20-03호]

-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을 발표함²¹⁹⁾
 - ▶ 납세자들의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목적의 중간예납세액은 면제됨
 - ▶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납세자가 분할납부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납세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219) News IBFD, Austria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Mar 17, 2020).

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법안 승인 및 특별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4호]

- ▣ 오스트리아 의회는 2020년 4월 4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면세, 경감 혜택 등 긴급 조세 조치가 포함된 법안을 승인하고 같은 날 관보에 게재함²²⁰⁾

 - ▶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기업이 특별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및 보너스는 3천유로를 한도로 하여 면세됨²²¹⁾
 -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등 통근 횟수가 줄어든 통근자들에 대한 통근 비용 소득공제, 여행세 공제 등 경감 혜택을 유지함²²²⁾
 - ▶ 코로나19를 위한 공공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면세 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문서나 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행위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
 - ▶ 은퇴한 의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진료를 행한 경우 의료 행위 포기로 인하여 인하되었던 세율과 같은 혜택은 유지됨

-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2020년 4월 14일 지역 내 공급을 위한 호흡기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0%로 인하함²²³⁾

 - ▶ 호흡기 마스크의 지역 내 구매 및 운송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0%로 인하고 금전 등록 시스템에 인화된 세율을 미리 등록 및 설정해 놓아야 청구서 및 과세 표준에 대한 경정이 없을 것임
 - ▶ 2020년 4월 13일부터 2020년 8월 1일까지 적용되며, 추후 법안을 제정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²²⁴⁾

220) Österreichs digitales Amt, https://www.ris.bka.gv.at/Dokumente/BgblAuth/BGBLA_2020_I_23/BGBLA_2020_I_23.pdf, 검색일자: 2020. 4. 23.

221) Bundesministerium Finanzen, <https://www.bmf.gv.at/presse/pressemeldungen/2020/april/finanzielle-unterstuetzungen.html>, 검색일자: 2020. 4. 23.

222) News IBFD, Austria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gazetted(Apr 9, 2020).

223) Bundesministerium Finanzen, <https://www.bmf.gv.at/presse/pressemeldungen/2020/april/keine-umsatzsteuer-auf-schutzmasken.html>, 검색일자: 2020. 4. 23.

224) News IBFD, Austria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VAT exemption for respirator masks (Apr 16, 2020).

라. 코로나19 관련 경제활성화 정책 패키지 발표

[조세동향 20-06호]

- ▣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0년 6월 12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정, 기업 등을 지원하는 경제활성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함²²⁵⁾

 - ▶ 요식업에 공급하는 식음료, 문화 및 출판 영역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함²²⁶⁾
 -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 ▶ 감가상각법으로 정률법을 도입하여 감가상각 첫해의 상각률을 최대 30%로 함
 - ▶ 법인세 납부기한을 2020년 10월 1일에서 2021년 1월 15일로 추가 연장함
 - ▶ 하위 소득 구간(1만 1천유로²²⁷⁾에서 1만 8천유로²²⁸⁾에 속하는 개인의 소득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함
 -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 자녀양육가정에 자녀 1인당 360유로²²⁹⁾의 일시적인 자녀양육보조금을 추가 지급함

14 이탈리아

가. 2020년도 예산법 시행

[조세동향 20-01호]

- ▣ 이탈리아 의회는 2019년 12월 24일 2020년도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225) 오스트리아 재무부, <https://www.bmf.gv.at/presse/pressemeldungen/2020/juni/mwst-senkung.html>, 검색일자: 2020. 6. 19.

226) News IBFD, Austria - COVID-19 Pandemic: Government Announces Agreement on Economic Stimulus Package (Jun 17, 2020).

227) 2020. 6.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81만원임

228) 2020. 6.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23만원임

229) 2020. 6.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8만원임

▣ 법인세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²³⁰⁾

- ▶ 2018년 12월 말에 폐지된 자기자본비용 공제제도(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를 재개하여 2019년 사업연도분부터 다시 적용함
 - 자기자본비용 공제율은 1.3%로, 과세표준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순자기자본 증가분의 1.3%의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함²³¹⁾
- ▶ 영업용 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한 지방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2019년 사업연도), 60%(2020년, 2021년 사업연도)로 상향 조정함
- ▶ 이탈리아에 본사 또는 고정 사업장을 둔 기업이 이탈리아 내 신규 유형자산 또는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일반 유형자산의 경우 연간 구매가액(최대 200만유로²³²⁾)의 6%에 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첨단기술사업 투자의 경우 투자액을 기준으로 250만유로²³³⁾까지는 그 금액의 40%, 250만유로 이상 1천만유로²³⁴⁾까지는 그 금액의 20%를 세액에서 공제함
 - 1천만유로 이상의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의 경우 투자액 70만유로²³⁵⁾를 상한으로 하여 투자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함
- ▶ R&D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재정비함
 - 기본 R&D 활동: 상기 R&D비용(최대 300만유로²³⁶⁾)의 12%를 세액에서 공제하며, 기초 학문 연구, 산업 관련 연구, 실험 활동 등을 포함함
 - 기술 혁신 활동 및 디자인 활동: R&D 비용(최대 150만유로²³⁷⁾)의 6%를 세액에서 공제함

230) News IBFD, Italy - Budget Law for 2020 - details of corporate income tax measures(Jan 15, 2020); EY, Global Tax Alert - Italy approves 2020 Budget Law(Jan 9, 2020), https://www.ey.com/en_gl/tax-alerts/ey-italy-approves-2020-budget-law, 검색일자: 2020. 2. 5.

231) 이탈리아 국세청, 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Ace), <https://www.agenziaentrate.gov.it/portale/web/english/nse/invest-in-italy/allowance-for-corporate-equity-> 검색일자: 2020. 2. 5.

232)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억원임

233)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억원임

234)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1억원임

235)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억원임

236)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억원임

237)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억원임

▣ 2020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를 시행함²³⁸⁾

- ▶ 전세계 매출 7억 5천만유로²³⁹⁾ 이상, 이탈리아 국내 매출 550만유로²⁴⁰⁾ 이상의 법정 요건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당해 기업의 이탈리아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서비스세로 납부해야 함
- ▶ 다음 내용의 디지털 서비스를 과세 대상으로 함
 - ①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자를 타겟으로 하여 당해 인터페이스에 게재되는 온라인 광고
 - ②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직접 재화 및 용역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다면 플랫폼(multi-sided digital interface)
 - ③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으로 발생한 데이터의 전송

▣ 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²⁴¹⁾

- ▶ 2020년부터 특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또는 직군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체세율(substitute tax) 20%를 폐지함
 - 단, 종전 납세의무자 중 직전 과세연도 매출이 6만 5천유로²⁴²⁾를 넘지 않으며 총 인건비(labour cost)가 2만유로²⁴³⁾ 이하인 자들은 15%의 대체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농장 또는 농지 보유 관련 소득의 50%만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함

▣ 2020년에 예정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2021년으로 연기함²⁴⁴⁾

- ▶ 2019년도 예산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는 25.2%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26.5%로 인상될 예정이었음²⁴⁵⁾

238) News IBFD, Italy - Budget Law for 2020 - details of digital services tax(Jan 9, 2020).

239)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32억원임

240)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2억원임

241) News IBFD, Italy - Budget Law for 2020 - details of individual income tax measures(Jan 13, 2020).

242)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500만원임

243)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00만원임

244) News IBFD, Italy - Budget Law for 2020 - details of value added tax measures(Jan 1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1-14_it_1.html, 검색일자: 2020. 8. 27.

245) News IBFD, Italy - Budget Law for 2019 - details(Jan 19, 20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1-09_it_2.html, 검색일자: 2020. 8. 27.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10%에서 13%로 인상될 예정이었음
- ▶ 그러나 2020년 예산법에 따르면 일반 부가세율은 2021년 1월1일부터 22%에서 25%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26.5%로 인상될 예정임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10%에서 12%로 인상될 예정임

📌 플라스틱세, 설탕세를 도입함²⁴⁶⁾

- ▶ 플라스틱세는 기업이 수입·생산하는 1회용 플라스틱 용기 1kg당 0.45유로²⁴⁷⁾를 부과함
- ▶ 설탕세는 당 함유 음료 및 알코올 농도 1.2% 이하의 음료 1리터당 0.1유로(희석 제품의 경우 1리터당 0.25유로²⁴⁸⁾)를 부과함

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3호]

- 📌 이탈리아 재무부는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세 조치를 발표함²⁴⁹⁾
 - ▶ 해당 긴급 조세 조치는 2020년 3월 2일 마련된 시행령의 추가 개정안이며, 2020년 3월 17일 시행령으로 입법되었음
 - ▶ 납부의무 및 기타 이행의무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함²⁵⁰⁾
 - 2020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지역사회의 거주자들(2020년 2월 21 기준)에

246) News IBFD, Italy - Budget Law for 2020 - details of miscellaneous indirect taxes(Jan 14, 2020).

247)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0원임

248) 2020. 2.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0원임

249) News IBFD, Ital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Law Decree approved(Mar 17,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it_20200317_1346, 검색일자: 2020. 3. 19.;
News IBFD, Ital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Law Decree published(Mar 20,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it_20200320_1359, 검색일자: 2020. 3. 30.

250) News IBFD, Italy - Suspension of deadlines for tax payments and obligations - Ministerial Decree published (Feb 28,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2-28_it_1, 검색일자: 2020. 3. 19.

대하여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함

- 관광·스포츠·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적격 이탈리아 법인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2020년 3월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2020년 4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기여금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유예함
 - 유예된 금액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일시납 또는 2020년 5월부터 5회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되어야 함
- 국세청의 청산, 평가, 징수, 불복 등 행정행위의 기한이 2020년 3월 8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 사이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을 진행하지 않음
- ▶ 조세 특례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기부금에 대하여, 3만유로²⁵¹⁾를 한도로 30%의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격 기부금의 소득공제 비율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직전 연도 대비 2020 사업연도 언론매체 광고비용이 최소 1%라도 증가한 법인의 경우, 해당 광고 투자비용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근로사업장의 안전·보안 개선 관련 비용(방역비용 등), 상업용 부동산 임대비용과 관련한 세액공제 규정을 도입함

다.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법률 개정

[조세동향 20-05호]

- ▾ 이탈리아 의회는 2020년 4월 24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²⁵²⁾ 이탈리아 재무부는 2020년 5월 13일 관련 소관 법령을 개정하였음²⁵³⁾
 - ▶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4월 29일 관보에 게재되었고,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됨
 - 본 법률은 코로나19 여파를 완화하고 가구·근로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개정되었음

251)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61만원임.

252) News IBFD, Ital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Parliament Enacts Amendments(May 7,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5-07_it_1, 검색일자: 2020. 5. 22.

253) News IBFD, Ital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Council of Ministers Approves New Law Decree(May 15,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5-15_it_1, 검색일자: 2020. 5. 28.

- ▶ 본 개정 법률에서는 일부 조세채무 관련 기한 연장 및 특정 목적의 조세특례제도 도입, 조세 불복 절차 정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조세 부분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적격 기업에 대하여 2020년 3월분 지목이 C/1에 해당하는 상업 용지 임차료의 6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함²⁵⁴⁾
 -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를 원칙적 적용 대상으로 삼고, 변호사·회계사 등 세무 목적상 사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함
 - 슈퍼마켓, 세탁소, 약국 및 일차상품·필수품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신문, 잡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2020년 지역방송 및 라디오 등을 통하여 광고비로 정기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최대 4천유로²⁵⁵⁾를 한도로 당해 광고비의 3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함
- ▶ 적격 기업은 금융거래 관련 채무자가 이행 불능 상태인 경우 일정 요건하에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음²⁵⁶⁾
 - 채무자는 90일 이상 지급을 연체한 상태이어야 함
- ▶ 생산활동지방세(IRAP)²⁵⁷⁾와 관련하여 2019년도 미납액 및 납부기한이 2020년 6월 1일 까지인 2020년도 1차 납부액을 특정 요건에 따라 면제함
- ▶ 법령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감면함
- ▶ 2021년 예정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철회함
 - 부가가치세율은 현재 22%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었음²⁵⁸⁾

254) BakerMcKenzie, Italy: COVID-19 - Tax Measure to Support Families and Businesses, 2020. 3. 20. <https://www.bakermckenzie.com/en/insight/publications/2020/03/covid19-tax-measure-support-families-businesses>, 검색일자: 2020. 6. 4.

255) 2020. 6. 4.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45만원임

256) KPMG, Government and institution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20/04/italy-government-and-institution-measures-in-response-to-covid.html>, 검색일자: 2020. 6. 4.

257)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주에 소재하는 이탈리아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3.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국세청,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4 참조)

258) News IBFD, Italy - Budget Law for 2020 - details of value added tax measures(Jan 14, 2020), [https:// 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0-01-14_it_1.html#tns_2020-01-14_it_1](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0-01-14_it_1.html#tns_2020-01-14_it_1), 검색일자: 2020. 5. 28.

- ▶ 2020년 3~5월에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한을 일정 요건하에 2020년 9월 16일로 연장함
- ▶ 이탈리아 내국법인 또는 이탈리아 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서 법령으로 지정하는 일정 산업(관광, 스포츠, 문화 분야 등)에 종사하는 법인에 대하여 3월에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진행을 중단함
- ▶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2020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 비영리단체 등에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기부한 경우, 최대 3만유로²⁵⁹⁾를 한도로 해당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진행 중인 불복 절차(기일이 확정된 심문기일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년 5월 11일까지 중단함²⁶⁰⁾
- ▶ 청산, 평가, 징수, 불복 등 과세관청의 행정행위 중 2020년 3월 8일부터 2020년 5월 31일 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것들은 기한 만료일을 연장함

15 포르투갈

가. 혼성불일치 확장 법안 초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02호]

- ☞ 2020년 1월 30일 포르투갈 정부는 제3국과의 혼성불일치에 관한 EU 이사회 지침 2017/952를 이행하는 법안 초안인 10/XIV를 의회에 제출함²⁶¹⁾
- ▶ 해당 법률안은 ATAD2의 조항 내용을 밀접하게 따르고 있으며, 2019년 5월 3일 도입된 ATAD1을 따른 기존의 법률 32/2019에서 혼성불일치에 관한 범위를 확장함

259) 2020. 5.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99만원임

260) News IBFD, Italy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details on new Law Decree(Apr 15,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4-15_it_1, 검색일자: 2020. 5. 28.

261) News IBFD, Portugal; European Union - Draft bill implementing ATAD 2 submitted to parliament - details(Feb 7, 2020).

- ▣ 본 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규정한 혼성불일치 금지 조항을 제3국과의 계약까지 확대하며, 다음과 같은 혼성불일치 효과에 대해 다룸

 - ▶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나, 타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혼성고정사업장 불일치(hybrid PE mismatches) 효과
 - ▶ 두 관할국이 금융상품에 관한 취급이나 납세에 대해 다른 조건을 가진 혼성금융상품 불일치(hybrid financial instrument mismatches) 효과
 - ▶ 제3국 간 혼성불일치 효과가 비혼성적인 수단을 통해 EU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전 불일치(imported mismatches) 효과
 - 제3국에서 발생하는 혼성불일치 관련 거래에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 ▶ 금융상품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에게 양도되고, 기초 수익이 하나 이상의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혼성 양도(hybrid transfers) 상황
 - ▶ 납세자가 2개국 이상에 거주하여 지불,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한 공제가 복수의 과세당국에서 가능한 납세 거주지 불일치(tax residency mismatches) 효과
 - ▶ 과세와 관련하여 투명하게 취급되는 혼성 법인이지만, 해당 법인에 대해 최소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거주 관계사들로 인해 발생하는 역혼성 불일치(reverse hybrid mismatches) 효과
- ▣ 역혼성 불일치 효과 관련 조항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이를 제외한 조항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나. 2020년 예산에 관한 법률 개정 공표

[조세동향 20-04호]

- ▣ 2020년 3월 31일 포르투갈은 2020년 예산에 관한 법률 개정 공표를 통해 2020 예산안의 조치들을 시행함²⁶²⁾
- ▣ 개인소득세법에 비거주자의 국외 연금 과세 내용이 추가되고, 부양가족 관련 조항이 개정됨

262) News IBFD, Portugal - Budget for 2020 - amendments made by budget law(Apr 2, 2020).

- ▶ 신규로 등록하는 비거주자(Non-habitual Residence, 이하 ‘NHR’)가 수령하는 원소득지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국외 연금(pension)에 대해 10%의 고정 세율을 도입함
 - 잔여소득에 국외 연금을 합산한 금액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조세제도와 새로운 조세제도 중 택일할 수 있음
 - 이미 NHR로 등록되었거나, 발효일 현재 NHR 등록 유보 중이거나, 세금 거주자 조건을 충족하여 2021년 이내에 NHR 등록 예정인 사람들은 본 규정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 두 번째 부양가족에 대해 300유로²⁶³⁾, 그 이후로는 150유로²⁶⁴⁾인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이 부양가족의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됨
 - 기존에는 과세연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2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음
- ▶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는 자가 취득한 고용 및 서비스 수입은 사회적 지원 기준(social support index) 가치의 5배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연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 감면 조항이 확대됨

- ▶ 부가가치세 공제가능 매출액이 1만유로²⁶⁵⁾에서 1만 2,500유로²⁶⁶⁾로 인상됨
- ▶ 기존의 디젤, LPG, 천연가스, 바이오 연료에 적용되던 50% 비용 공제가 휘발유까지 확대되며,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휘발유 비용 전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됨
- ▶ 심리 상담 및 수화로의 포르투갈어 통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노인, 어린이 및 마약 중독자를 위한 가정 간호서비스와 노인 또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전화 지원 서비스가 6%의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됨

▣ 대출 신청자가 최소 10%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인수 가치가 최소 500만유로²⁶⁷⁾인, 오로지 현금흐름 적자를 충당하려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계열사 간 대출에는 최대 1년간 인지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인지세법에 추가됨

263) 2020. 4.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만 8천원임

264) 2020. 4.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만 9천원임

265) 2020. 4.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27만원임

266) 2020. 4.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58만원임

267) 2020. 4.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억 3,380만원임

다. 납세자 보호 부서 신설

[조세동향 20-05호]

- ▣ 포르투갈 세무국(Autoridade Tributária e Aduaneira)은 2020년 4월 21일 납세자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세자 지원 및 보호 서비스 부서(Direção de Serviços de Apoio e Defesa do Contribuinte)’를 설치함²⁶⁸⁾
- ▣ 본 부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 납세자들에게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
 - ▶ 소송 경비 보조와 같은 법적 원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재정 곤란 납세자들을 선별함
 - ▶ 옴부즈맨 사무소와 협력하고 세무국과 납세자와의 상호작용을 조정하며, 관련 권고 사항을 준수함
 - ▶ 납세자 대응과 관련하여 과세 구조 및 제도의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선택된 조세 및 관세 절차를 분석함
 - ▶ 오류를 시정하는 내부 권고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비롯한 조세 불평등 완화, 납세 순응과 관련한 법적 조치 등을 발표함

라. 코로나19 관련 2020년 예산 추가 법안 승인

[조세동향 20-06호]

- ▣ 포르투갈 의회는 2020년 6월 9일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예산 추가 법안인 33/XIV을 승인함²⁶⁹⁾
- ▣ 법인세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매출 감소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함

 - ▶ 법인세의 결손금 공제 한도를 기존의 70%에서 80%로 늘리고, 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268) News IBFD, Portugal - Portuguese Tax Authorities Create Special Unit for Taxpayers' Support and Defence (May 7, 2020).

269) News IBFD, Portugal - COVID-19 Pandemic: Government Presents Supplementary 2020 Budget Draft Bill(Jun 15, 2020).

- ▶ 2020년 7월 1일에서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적격 투자비용에 대해 최대 20%의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특별 투자 공제가 시행됨
 - 공제 가능한 적격비용은 최대 500만유로²⁷⁰⁾이며, 공제액은 법인세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0만유로²⁷¹⁾로 제한되고 5년간 이월이 가능함
 - 해당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 및 향후 3년간 고용 계약 종료를 제한함
 - 적격 투자비용 및 기타 공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금에 대해 15%의 가산세를 부가하여 환수함²⁷²⁾
- ▶ 기업의 2020년 첫 6개월간 월 평균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20년 1~2분기 법인세 납부액의 최대 50%를, 40% 이상 감소한 경우 전액을 면제함²⁷³⁾

☑ 초소형 및 중소기업의 인수 및 합병 시 결손금 이전을 허용함

-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운영이 곤란한 초소형 및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보유 주식 비율에 근거하여 모회사의 연간 과세 대상 이익의 50%까지 세무상 손실을 이전할 수 있으며, 3년간 고용 계약 종료 및 이익의 배당을 제한함
- ▶ 매출의 50%를 동일 경제활동을 통해 달성하는 초소형 및 중소기업들의 조세중립적 합병 시 합병된 기업의 결손금을 합병 기업의 과세 이익에 이전하여 상쇄할 수 있고, 주정부 부가가치세가 3년간 면제됨
- ▶ 공제 대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15%의 가산세가 부가됨²⁷⁴⁾

☑ 2020년 3월 9일에서 6월 30일 동안 기업에서 발생한 세금 및 사회보장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함

- ▶ 기업이 특별 활성화 프로세스(Processo Especial de Revitalização)와 같은 정부의 비즈니스 복구 계획 또는 회사 복구를 위한 추가적인 사법 절차의 조건에 따라 세무당국 또는 사회 보장국이 승인한 분할납부 계획을 준수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음²⁷⁵⁾

270) 2020. 6.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7억 3,095만원임

271) 2020. 6.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 4,619만원임

272) Proposta de Lei n.º 33/XIV Anexo V Artigo 8.º (3)

273) Proposta de Lei n.º 33/XIV Capitulo III Artigo 9.º (3), (4)

274) Proposta de Lei n.º 33/XIV Anexo IV Artigo 4.º (3)

275) Proposta de Lei n.º 33/XIV Capitulo III Artigo 8.º (3)

- ▣ 2020년 은행세(solidarity bank levy)의 세율을 2020년 특정 부채의 평균 가치에 대해 0.02%, 부외계정 파생상품의 평균 가치에 대해 0.00005%로 설정함
- ▶ 2011년 포르투갈의 은행세 첫 도입 당시 세율은 각각 0.05%와 0.00015%였음²⁷⁶⁾

16 프랑스

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3회]

- ▣ 프랑스 재무부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자영업자 및 법인 납세자의 세금 납부 관련 조정 조치를 발표함^{277), 278)}
 - ▶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법인세와 급여세(taxe sur les salaires)²⁷⁹⁾ 납부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통해 가산세 부과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3월분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SEPA 계좌이체 시스템(SEPA Direct Debit Scheme)을 통하여 실제 출금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완납처리로 확인된다면 별도로 담당 부서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 ▶ 자영업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및 산출소득액²⁸⁰⁾의 자율적 조정 및 유예를 허용함
 - 적용세율 및 산출소득액 조정에 관한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프랑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세자 번호로 접속하여 개별 조정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 경우 월별 징수는 최대 3회, 분기별 징수는 다음 분기까지 유예 가능함

276) International Law Office, <https://www.internationallawoffice.com/Newsletters/Corporate-Tax/Portugal/Espanha-e-Associados-sociedade-de-advogados-RL/New-bank-levy-a-crisis-override-for-taxpayers-rights>, 검색일자: 2020. 7. 3.

277) 재정일반총국(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재무부, 보도자료, 2020. 3. 13.
 프랑스 재무부, Les réseaux des Urssaf et des services des impôts des entreprises prennent des mesures exceptionnelles pour accompagner les entreprises(Mar 13, 2020), <https://www.economie.gouv.fr/mesures-exceptionnelles-urssaf-et-services-impots-entreprises#>, 검색일자: 2020. 3. 19.

278)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기한 조정에 관하여는 앞의 '가. 재정' 참조

279)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의 기업은 피고용자에 지불하는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급여세를 납부

280) 자영업자의 경우 그 소득의 불규칙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소득에 근거하여 소득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

- ▶ 월별 납부를 신청한 법인 분담 재산세(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 또는 토지세(taxe foncière)²⁸¹⁾의 경우 프랑스 국세청 등에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 미납세액은 별도의 납부행위 없이 추후 계좌 내 보유 잔액을 한도로 인출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3월 17일 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책을 발표하였으며, 조세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음²⁸²⁾
 - ▶ 가장 취약한 상태의 기업은 신청에 따른 개별 평가를 통하여 직접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일차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하며 최후 수단으로 국세청 사이트의 별도 링크²⁸³⁾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적용 범위는 법인세로 한정되며, 감면금액 또한 신청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될 것임²⁸⁴⁾

나.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동향 20-04호]

- ▣ 프랑스 과세관청은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간 동안 기업이 기관과 관청에 무상 증여한 마스크 등 의료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세액이 산입되지 않는다고 발표함²⁸⁵⁾
 - ▶ 기업이 마스크, 손 세정제, 호흡기와 같은 의료용품을 병원, 양로원, 장애 및 만성 질병 환자를 위한 사회단체와 같은 기관, 국가 또는 지방 관청에 무상 증여한 경우

281) 한국의 재산세 개념

282) 프랑스 재무부, Coronavirus COVID-19: chefs d'entreprise, le ministère de l'Economie est à vos côtés, (Mar 17, 2020), <https://www.economie.gouv.fr/coronavirus-soutien-entreprises>, 검색일자: 2020.3.19.;
프랑스 재무부, <https://www.economie.gouv.fr/files/files/PDF/2020/Coronavirus-MINEFI-10032020.pdf>, 검색일자: 2020. 3. 19.

283) <https://www.impots.gouv.fr/portail/node/13465>

284) KPMG, France: Tax relief available for businesses affected by coronavirus(COVID-19),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3/tnf-france-tax-relief-available-for-businesses-affected-by-coronavirus.html>, 검색일자: 2020. 3. 19.

285) 프랑스 국세청 관보, <https://bofip.impots.gouv.fr/bofip/12311-PGP?branch=2>, 검색일자: 2020. 4. 18.

에는 예외적으로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세액이 산입되지 않음²⁸⁶⁾

-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간이 끝나는 2020년 5월 24일까지 적용되며, 이 기간은 추후 연장될 수 있음

- ▶ 프랑스 세법 273D조에 의하면 기업이 무상 증여하거나 실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세액이 다시 산입되나 예외적으로 그 물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증여된 경우에는 산입되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러한 예외의 범위를 넓힌 것임²⁸⁷⁾
- ▶ 무상 증여를 받은 기관은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나 무상 증여를 한 기업은 증여 날짜, 수증자, 증여 물품, 수량을 문서화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음

다.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지침 발표

[조세동향 20-04호]

▣ 프랑스 과세관청은 2020년 3월 23일 및 2020년 3월 30일 디지털서비스세 준수, 적용 범위,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지침 초안을 발간함²⁸⁸⁾

- ▶ 지침 초안은 주로 과세 대상 서비스의 범위와 산정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23일까지 공개협의의 대상이 되므로 최종 지침이 발간되기 전에 수정될 수 있음²⁸⁹⁾
- 지침 초안은 과세관청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납세자는 추후 지침 초안이 수정되더라도 경정 대상이 되지 않음
- ▶ 프랑스는 2019년 7월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제정하여 특정 디지털서비스로부터의 매출에 대한 3% 단일세율의 디지털서비스세를 신설하였고²⁹⁰⁾,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과세관청은 2019년 10월 16일 디지털서비스세 준수 절차에 대한 첫 번째 지침 초안을 발간한 바 있음

286) News IBFD, France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extension of procedural time limits gazetted(Mar 31, 2020).

287) *Bloomberg Tax*, France Clarifies Tax Treatment of Mask, Sanitizer Donations(Apr 9, 2020).

288) 프랑스 국세청 관보, <https://bofip.impots.gouv.fr/bofip/12298-PGP>, 검색일자: 2020. 4. 21.

289) EY, France issues comprehensive draft guidance on digital services tax, https://www.ey.com/en_gl/tax-alerts/france-issues-comprehensive-draft-guidance-on-digital-services-tax, 검색일자: 2020. 4. 21.

29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19-1호, 2019.

- ▣ 디지털서비스세의 부과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 대상 디지털서비스에 해당하고 둘째, 과세 대상 디지털서비스가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과세 대상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넷째, 기업의 매출이 일정 적용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사용자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마켓플레이스,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가 과세 대상 디지털서비스에 해당하며, 운영자가 소유한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은행 간 결제시스템과 같은 금융서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 과세 대상 디지털서비스는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IP 주소, 지리적 데이터 또는 다양한 트래킹을 통해 수집된 정보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프랑스 내의 기기를 통하여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함
 - ▶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한 대가로서의 소득을 연중 일부 기간에만 얻었다거나 서비스 사용자가 프랑스에 있지 않았다고 해도 그 소득은 산입됨
 - ▶ 글로벌 총매출 7억 5천만유로 이상 및 프랑스 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의 매출인 기업이 그 적용 대상이고 프랑스 내 매출 기준을 판단할 시에는 프랑스 실질 비율(French Presence Ratio)을 적용하여 판단함
 - ‘프랑스 실질 비율’이란 각 과세 대상 서비스 사용자 전체에 대한 프랑스 사용자들의 비율임

- ▣ 디지털서비스세의 납부 절차는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며 두 차례의 중간예납세의 형태로 납부하고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의 납부는 연기됨

 - ▶ 디지털서비스세의 납부 절차는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와 동일하며 다만 부가가치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나 디지털서비스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6년임
 - ▶ 디지털서비스세는 두 차례의 중간예납세의 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나 지침은 2020년 12월 까지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의 징수를 연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와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디지털서비스세의 징수 유예는 OECD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조세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그 합의안이 도출될 것을 고려함과 동시에 2019년 미국이 디지털서비스세의 실행에 반대하며 보복적 관세를 예고하는 등 국제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임

라. UCITS 펀드의 부가가치세 면제 법령 및 행정 지침

[조세동향 20-05호]

-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4월 30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UCITS(Undertakings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펀드 및 유사 집합 투자증권의 종류를 규정한 법령(Decree no. 2020-493)을 관보에 게재함²⁹¹⁾

 - ▶ 프랑스 세법 제261C조 제1항 제f호에 따르면 EU의 UCITS 지침(2009/65/EC) 제1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UCITS 펀드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집합투자증권의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²⁹²⁾
 - EU의 UCITS 지침은 EU 회원국의 EU 내 투자펀드의 경쟁 조건에 협력하며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투자자 보호, UCITS 펀드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감독·구조·활동·공시 정보에 대한 기초적인 공통 규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²⁹³⁾
 - ▶ 프랑스 정부는 법령을 통해 개인투자자 참여 펀드, 기업 참여 펀드, 근로자저축 펀드, 금융 기구, 벤처캐피탈에 적용되는 조세 규율을 선택한 기업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를 규정함

- ▣ 프랑스 과세관청은 2020년 5월 6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UCITS 펀드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발표함²⁹⁴⁾

 - ▶ 첫째, 집합투자증권의 형태로 구성될 것, 둘째, 위험 분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 셋째, 국가의 특별 감독하에 있을 것, 넷째, 이익 환수는 투자 실적에 따를 것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UCITS 펀드 및 유사한 집합투자증권의 운영은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²⁹⁵⁾
 - 세 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특별 감독은 운영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집합 투자증권의 규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UCITS 펀드 및 유사한 집합투자증권이 과세관청에 등록·신고·통지되었을 때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291) 프랑스 법률정보센터, <https://www.legifrance.gouv.fr/eli/decret/2020/4/28/ECOE2008973D/jo/texte>, 검색일자: 2020. 5. 26.

292) News IBFD, France - List of VAT-exempt UCITS published(May 7, 2020).

293) EU 법률정보센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9L0065>, 검색일자: 2020. 5. 29.

294) 프랑스 국세청 관보, <https://bofip.impots.gouv.fr/bofip/12296-PGP?branch=2>, 검색일자: 2020. 5. 27.

295) News IBFD, France - List of VAT-exempt UCITS published(May 7, 2020).

17 핀란드

가. 출국세 도입 평가보고서 공개

[조세동향 20-02호]

- ▣ 핀란드 재무부는 2020년 2월 7일 개인의 출국세 도입 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공개함²⁹⁶⁾

 - ▶ 보고서는 정부정책에 따라 핀란드 자연인의 소득세 일부분으로 개인의 출국세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발간됨
 - 도입 대상인 출국세는 거주자의 이민 시 누적된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안으로, 부유층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주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 보고서는 출국세 도입 시 현행 세법체계의 복잡성 등의 사유로 즉시 입법화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림

- ▣ 보고서에서 출국세의 도입 필요성이 약하다고 한 근거로 징수절차의 복잡성, 세수의 불확실성, 사후관리, 담세력 문제를 기술하고 있음²⁹⁷⁾

 - ▶ EU/EEA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세액 징수절차가 복잡해짐
 - EU/EEA 회원국의 경우에는 과세관청 간 MAP 절차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용이함
 - ▶ 세수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함
 - ▶ 과세 이후 자산가격 하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무적으로 이를 반영하기 어려움
 - 특히 출국세를 이용하여 과세시점을 조정하는 조세 설계가 가능해짐
 - ▶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해 담세력이 확보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로 권리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음

296) Valtiovarainministeriö, Selvitys luonnollisten henkilöiden maastapoistumisverosta: Suomessa asumisaikana kertyneen omaisuuden realisoitumattoman arvonnousun verotus maastamuuttotilanteessa, 2020.

297) News IBFD, Finland - Report considering introduction of exit tax on individuals - published(Feb 7, 2020).

나. 국외 근로소득 면제 규정 개정

[조세동향 20-02호]

- ☞ 핀란드 과세관청은 2020년 2월 3일 국외 근로소득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사례를 추가하는 의견서를 공개함²⁹⁸⁾

 - ▶ 국외 근로소득 면제 요건 중 월별 6일 이상 국외에서 근로해야 하는 규정(Suomessa oleskelupäivistä)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예외사항으로 추가함
 - 국외 근로소득 면제를 위해서는 연속된 6개월 이상 국외 거주하고, 월별 6일 이상을 국외에서 근로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따라서 중국 후베이성에서의 근무나 핀란드 또는 유럽과 중국의 항공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 월별 6일 근로규정에 대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충족됨

다. 코로나19 관련 납세기한 조정 요건 완화

[조세동향 20-03호]

- ☞ 핀란드 정부는 대통령과 공동으로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그에 따른 조세정책을 발표함²⁹⁹⁾

 - ▶ 2020년 3월 1일 이후부터 납세기한이 도래하며 이미 납부 조정된 세목의 가산세율은 일시적으로 7%에서 4%로 인하됨
 - ▶ 핀란드 과세관청은 납세와 관련하여 온라인, 전화, 우편을 이용할 것을 권고함³⁰⁰⁾

298) Vero Skatt, Kuuden kuukauden sääntö ja pakottava syy (koronavirus-epidemia), https://www.vero.fi/syventavat-vero-ohjeet/kannanotot/82178/kuuden-kuukauden-s%C3%A4%C3%A4nt%C3%B6-ja-pakottava-syy-koronavirus-epidemia/?utm_source=Nro%2010%20Luontoisedut%20verotuksessa%202F%20Yleishy%C3%B6dyllisten%20yhteis%C3%B6jen%20arvonlis%C3%A4verotus%20%2F%20Koronavirusepidemia%20ja%20ulkomaan%20komennus&utm_medium=email&utm_campaign=, 검색일자: 2020. 2. 25.

299) 핀란드 정부,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declares a state of emergency in Finland over coronavirus outbreak https://valtioneuvosto.fi/en/article/-/asset_publisher/10616/hallitus-totesuomen-olevan-poikkeusolossa-koronavirustilanteen-vuoksi, 검색일자: 2020. 3. 20.; News IBFD, Finland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postponement of payment deadlines Mar 17, 2020).

300) 핀란드 국세청, Corona situation: Please use our e-services or contact us by telephone or post, <https://www.>

- 각 세무관서는 예약제 운영, 운영시간 변경, 일시적 폐쇄 조치를 함

▣ 핀란드 과세관청은 2020년 3월 18일 체납 세액에 대한 납부 조정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함³⁰¹⁾

▶ 코로나19로 인하여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납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납부 조정의 완화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납세자가 소득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첫 번째 분할납부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기한 조정의 효력이 생긴 날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연장됨

- 과세관청은 납부 조정 이후에 생긴 새로운 체납 세액도 2020년 5월 31일까지 자동적으로 납부 조정에 포함시킬 예정임

라. 코로나19 관련 조세정책 발표

[조세동향 20-06호]

▣ 핀란드 정부는 2020년 5월 20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추후 상황을 조건으로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4%에서 3%로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함³⁰²⁾

▶ 기업은 2020년 1~3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 신청하고 과세관청과 상기의 부가가치세 상환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 이는 일종의 대출로서 기존 납부일로부터 3%의 이자가 적용됨

vero.fi/en/About-us/newsroom/corona-situation/please-use-our-e-services-or-contact-us-by-telephone-or-post/, 검색일자: 2020. 3. 27.

301) 핀란드 국세청, You can request a payment arrangement with eased terms, <https://www.vero.fi/en/About-us/newsroom/corona-situation/corporate-taxpayers-and-employers/you-can-request-a-payment-arrangement-for-your-company-with-eased-terms/> 검색일자: 2020. 3. 27.;

News IBFD, Finland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requirements for payment arrangements eased(Mar 20, 2020)

302) 핀란드 국세청, Koronatilanne: Yritys voi hakea arvonlisäveroja takaisin ja maksaa ne myöhemmin, [https://www.vero.fi/tietoa-verohallinnosta/uutishuone/uutiset/uutiset/2020/koronatilanne-yritys-voi-hakea-arvonlis%C3%A4veroja-takaisin-ja-maksaa-ne-my%C3%B6hemmin/](https://www.vero.fi/tietoa-verohallinnosta/ uutishuone/uutiset/uutiset/2020/koronatilanne-yritys-voi-hakea-arvonlis%C3%A4veroja-takaisin-ja-maksaa-ne-my%C3%B6hemmin/), 검색일자: 2020. 6. 19.

-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을 신청하면서 2020년 4~6월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취소한 부가가치세는 미납 상태가 되어 상환약정에 추가됨
- ▶ 납부기한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인 부가가치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4%에서 3%로 인하함³⁰³⁾
- ▣ 핀란드 정부는 2020년 6월 5일 코로나19 관련 검사·치료·예방 물품의 부가가치세에 일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³⁰⁴⁾
 - ▶ 핀란드 내에서 구매하거나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공공의료기관, 공공사회복지기관 또는 과세관청 승인기관에 공급한 물품에 한함³⁰⁵⁾
 - 2020년 1월 30일부터 소급하여 202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함
 - ▶ 이는 EU 의회가 2020년 4월 3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30일부터 2020년 7월 31일 사이에 수입된 의료 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Import VAT)³⁰⁶⁾를 면제하기로 한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함³⁰⁷⁾

303) *Bloomberg Tax*, Finland Wants to Lend Companies Their Previously Paid Taxes(May 20, 2020).

304) 핀란드 국세청, Covid-19-epidemiaan torjumisessa käytettävät tavarat arvonlisäverottomiksi, <https://www.vero.fi/tietoa-verohallinnosta/uutishuone/uutiset/uutiset/2020/covid-19-epidemiaan-torjumisessa-k%C3%A4ytett%C3%A4v%C3%A4t-tavarat-arvonlis%C3%A4verottomiksi/>, 검색일자: 2020. 6. 19.

305) News IBFD, Finland - COVID-19 Pandemic: Government Proposes To Temporarily Provide Zero VAT Rate for Testing and Prevention Tools(Jun 9, 2020).

306) '수입 부가가치세'란 EU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EU 회원국 외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임, <https://trade.ec.europa.eu/tradehelp/eu-value-added-tax-vat>, 검색일자: 2020. 6. 22.

307) News IBFD, European Union - COVID-19 pandemic: European Commission decision to waive customs duties and import VAT on medical equipment - published(Apr 6, 2020).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가. 코로나19 대응정책 발표

[조세동향 20-03호]

- ▶ 뉴질랜드 재무부는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1억뉴질랜드달러³⁰⁸⁾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함³⁰⁹⁾
 - ▶ 해당 정책의 가치는 GDP의 4%에 해당함
 - ▶ 조세정책으로는 상업용 및 공업용 빌딩 감가상각 재도입, 소득세 예납 대상 기준금액 인상, 보조금 지급, 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 면제가 있음

- ▶ 상업용 및 공업용 빌딩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2020/21 사업연도부터 재도입함³¹⁰⁾
 - ▶ 단, 주거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 ▶ 뉴질랜드는 2011년도 세법 개정으로 모든 건물에 대한 세무상 감가상각률은 0%였으나 감가상각제도를 재도입함

- ▶ 소득세 예납대상 기준금액을 연 2,500뉴질랜드달러³¹¹⁾에서 5천뉴질랜드달러로 인상함³¹²⁾

308)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조 9,358억원임

309) News IBFD, New Zealand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Mar 17, 2020).

310)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covid-19/business-and-organisations/specific-income-tax-issues/depreciation-and-low-value-assets>, 검색일자: 2020. 8. 26.

311)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5만원임

312) 뉴질랜드 국세청, <https://www.ird.govt.nz/covid-19/business-and-organisations/provisional-tax>, 검색일자: 2020. 3. 24.

- ▶ 소득세 납부액이 5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인 자는 2020/21 사업연도를 위한 소득세를 예납하지 않아도 됨³¹³⁾
- ▶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예상치를 반영하여 소득세 예납금액이 변경되며, 기존에 과납한 금액에 대하여 조기 환급함

☑ 2020년 2월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의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를 면제함³¹⁴⁾

- ▶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최소 30%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는 사업자 및 개인에게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및 기타 공과금에 대한 미납이자를 면제함

☑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도급업자, 자영업자에게 자가격리 보조금을 지급함³¹⁵⁾

- ▶ 지급 대상은 자가격리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사업자, 계약자, 자영업자에 해당하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않음
- ▶ 해당 보조금은 고용주를 통하여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며, 이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지급한 급여는 세무상 공제되지 않음

나.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추가 발표

[조세동향 20-04호]

☑ 뉴질랜드 재무부는 2020년 4월 15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세정책을 추가 발표함³¹⁶⁾

- ▶ 정부는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것을 대비하여 더욱 강화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발표함

☑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313) 뉴질랜드 세법상 소득세 납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차년도 소득세를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할부로 예납하여야 함

314) 뉴질랜드 국세청, ird.govt.nz/covid-19/manage-my-tax/penalties-and-interest, 검색일자: 2020. 8. 26.

315) 뉴질랜드 국세청, ird.govt.nz/covid-19/business-and-organisations/employing-staff/leave-subsidies, 검색일자: 2020. 3. 24.

316) 뉴질랜드 국세청, COVID-19(novel coronavirus) - Tax changes to support businesses, <https://www.ird.govt.nz/Updates/News-Folder/covid19-business-changes>, 검색일자: 2020. 4. 28.

- ▶ 신고 및 납부 기한에 재량권을 두어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예정임
- ▶ 결손금 합산공제 시 사업의 연속성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2020년 하반기 개정될 예정임
 - 2020/21 사업연도 이후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3월 이전 법안을 통과하고자 함
- ▣ 임시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2020년 4월 27일부터 도입함
 - ▶ 2019/20 사업연도 및 2020/21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는 법인은 결손금을 직전 1개 사업연도까지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음
 - ▶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2020년 하반기에 논의될 예정임

다. 2020/21 세법 개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06호]

- ▣ 뉴질랜드 정부는 2020년 6월 4일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다음 내용을 반영한 2020/21 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³¹⁷⁾ 318)
 - ▶ 주요 내용은 사전조사에 관한 지출 공제, 자산 매수가격배분, 모바일 로밍 서비스에 대한 GST, R&D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임
- ▣ 사전조사에 관한 지출(Feasibility expenditure) 공제 개정안을 도입함
 - ▶ 사전조사에 관한 지출 공제 개정안은 2019년도 2월에 발표된 Tax Working Group의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사항으로서, 2019년 9월 개정안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짐³¹⁹⁾
 - ▶ 사전조사에 관한 지출액 중 1만뉴질랜드달러³²⁰⁾ 이내의 적격지출은 전액 비용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지출은 5년에 걸쳐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17) 뉴질랜드 국세청, Omnibus tax bill introduced, <http://taxpolicy.ird.govt.nz/news/2020-06-04-omnibus-tax-bill-introduced>, 검색일자: 2020. 6. 19.

318) KPMG, Omnibus Tax Bill introduced, <https://home.kpmg/nz/en/home/insights/2020/06/omnibus-tax-bill-introduced.html>, 검색일자: 2020. 6. 19.

3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19-10호, 2019.

320) 2020. 7. 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81만원임

- 적격지출은 사전 개발이 필요한 자산의 완성, 개발, 취득 등에 사용된 지출로서 이 과정이 완료되지 않아 자산화되지 못하여 세무상 공제하지 못하는 비용을 의미함

▶ 이 개정사항은 2020/21 사업연도에 발생한 지출부터 적용함

▣ 자산 매수가격배분(Purchase Price Allocation)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을 개정함

▶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른 가격배분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자산의 총가격을 소득세 목적에 맞게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

- 매도자와 매수자가 하나의 가격배분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함
-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격배분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내에 매도자는 배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자와 국세청장에게 공지해야 함
- 2개월 기한 내에 매도자가 매수가격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가 배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도자와 국세청장에게 공지해야 함
- 국세청장은 해당 배분금액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음

▶ 총매수가액이 100만뉴질랜드달러³²¹⁾ 이하이거나, 매수자의 배분 대상 자산가액이 10만 뉴질랜드달러³²²⁾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함

▣ 해외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로밍 서비스에 대하여 GST를 과세하기로 함

▶ 뉴질랜드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모바일 로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15%의 표준세율로 GST를 과세하기로 함

▶ 해외 단말기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모바일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GST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이 개정사항은 시스템 도입 시까지 유예를 두어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R&D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321) 2020. 7. 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8,120만원임

322) 2020. 7. 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812만원임

- ▶ 시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은 완전히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고, 연구개발 중 핵심적으로 발생한 비용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 가능함
- ▶ 유형자산의 개발을 위해 지출되어 개발원가로 자본화된 직원급여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 가능함

라.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추가 발표

[조세동향 20-06호]

-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20년 5월 19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함³²³⁾
 - ▶ 주요 내용은 납세자들이 납세행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세청장의 재량권을 사용하는 것임
- ▾ 법인세, GST의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 2019년도 연장신고기한을 2024년 3월 31일에서 2025년 3월 31일로 연장함
 - ▶ 2019년도 Look-through company³²⁴⁾ 선택기한을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5월 31일로 연장함
 - ▶ 2019년도 귀속 보조금 지급 여부 선택기한을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5월 31일로 연장함
-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납세 행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 ▶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함
 - ▶ FATCA³²⁵⁾ 공시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을 연장함
 - ▶ CFC 신고기한을 2020년 5월 31일로 연장함
 - ▶ 코로나19로 인한 거주자 판정, 고정사업장 판정 요건을 완화함

323) News IBFD, New Zealand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Inland Revenue Publishes Updated Guidance on Tax Measures(May 29, 2020).

324) 'Look-through company'란 법적실체는 회사이나, 소득세 신고 목적상 파트너십과 동일하게 취급함

325)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으로 미국인, 세무상 미국 거주자, 미국 기업 등이 뉴질랜드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계좌잔액을 신고해야 함

- ▼ 개인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 혜택을 적용함
 - ▶ 2020년 3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고용주가 개인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주당 15뉴질랜드달러³²⁶⁾까지의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면제함
 - ▶ 소규모 기업은 Small Business Cashflow Scheme³²⁷⁾에 따라 2020년 5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0~3% 이율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소규모 기업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무이자 혹은 저율의 대출이며, 최대 대출금액은 1만뉴질랜드달러³²⁸⁾에 정규직 종업원 1인당 1,800뉴질랜드달러³²⁹⁾를 가산한 금액임
 - ▶ 코로나19의 상당한 영향을 받은 농업·어업·식물재배업 영위 기업은 2020년 6월 30일까지 Income equalization Scheme³³⁰⁾에 따라 2019년도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Income Equalization Scheme’이란 연간 총소득의 변동성을 평준화하기 위하여 농업·어업·식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특례제도임

2 싱가포르

가. 2020년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0-03호]

-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0년 2월 18일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³³¹⁾

326) 2020. 7. 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원임

327) 뉴질랜드 국세청, COVID-19 Small Business Cashflow(Loan) Scheme(SBCS), <https://www.ird.govt.nz/covid-19/business-and-organisations/small-business-cash-flow-loan>, 검색일자: 2020. 6. 30.

328) 2020. 7. 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81만원임

329) 2020. 7. 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1만원임

330) 뉴질랜드 국세청, Income equalisation schemes, <https://www.ird.govt.nz/income-tax/income-tax-for-businesses-and-organisations/income-equalisation-scheme>, 검색일자: 2020. 6. 30.

331) 싱가포르 국세청, Budget 2020 - Overview of Tax Changes, <https://www.iras.gov.sg/irashome/News-and-Events/Singapore-Budget/Budget-2020---Overview-of-Tax-Changes/>, 검색일자: 2020. 3. 25.

▾ 법인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 기업들의 현금 유동화를 돕기 위해 2020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의 25%를 1만 5천싱가포르달러³³²⁾ 한도 내에서 할인함
- ▶ 싱가포르 인건비 향상을 위해 급여세액공제 제도를 강화함
 - 공제 대상자의 월 급여를 2019년도 4천싱가포르달러³³³⁾에서 5천싱가포르달러³³⁴⁾로 인상함
- ▶ 2020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이 기존 직전 1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함
- ▶ 2021 사업연도에 공장 및 기계 취득으로 발생한 자본화 비용의 가속상각을 선택할 수 있음
- ▶ 2021 사업연도에 지출한 리노베이션 비용이 적격지출인 경우,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 가능함

▾ 개인소득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 비거주자 중개인의 원천징수세 면제가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됨
- ▶ 비거주자 연예인의 10% 특례 원천징수세율 적용이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됨
- ▶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시효가 2020년 3월 31일 만료되나, 기존 적격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적용됨
 - 엔젤투자자 소득공제란, 소규모 스타트업에 투자한 개인의 투자금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임

▾ 간접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³³⁵⁾

- ▶ GST 세율의 2% 인상은 2021년도에 발효되지 않으며, 2021년도는 종전세율인 7%로 유지됨

332)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88만원임

333)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3만원임

334)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0만원임

335) PWC, Singapore Fortitude Budget 2020, <https://www.pwc.com/sg/en/budget-2020.html#highlights>, 검색일자: 2020. 3. 25.

-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격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10%에서 30%가량 할인됨
 - 적격 상업용 부동산에는 호텔, 서비스 아파트먼트, 회의 및 행사용 장소 등이 포함됨
- ▶ 2021년 1월 1일부터 등록된 전기자동차 등에 도로세 개정안이 도입될 예정임
 - 친환경자동차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자동차의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세 과세체계를 재정비하였음³³⁶⁾

나.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발표

[조세동향 20-04호]

- ☐ 싱가포르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0년 3월 26일, 4월 4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³³⁷⁾
- ☐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발표한 세법상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³³⁸⁾
 - ▶ 2020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을 1만 5천싱가포르달러 한도 내에서 25% 감면함
 - ▶ 예상과세소득(Estimated Chargeable Income) 신고 시 무이자 할부 납부기한을 연장함
 - 모든 법인은 과세연도 말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상 소득, 배당 및 이자 소득, 로열티 수입, 기타소득 등에서 사업상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간략하게 계산한 예상과세소득을 신고하여야 함³³⁹⁾
 - ▶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3개 사업연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함
-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자동적으로 연장하며, 연장된 주요 기한은 다음과 같음

336)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Supporting Cleaner and Greener Vehicles for A Sustainable Land Transport Sector, https://www.lta.gov.sg/content/ltagov/en/newsroom/2020/february/news-releases/Supporting_cleaner_and_greener_vehicles.html, 검색일자: 2020. 4. 2.

337) 싱가포르 국세청,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Taxpayer Counter Services by Appointment Only, <https://www.iras.gov.sg/irashome/News-and-Events/Newsroom/Media-Releases-and-Speeches/Media-Releases/2020/IRAS-Extends-Tax-Filing-Deadlines;-Taxpayer-Counter-Services-by-Appointment-Only/>, 검색일자: 2020. 4. 20.

338) News IBFD, Singapore - COVID-19 pandemic: additional tax measures announced(Mar 27, 2020).

339) 싱가포르 국세청,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Filing-Estimated-Chargeable-Income--ECI-/Definition-of-Estimated-Chargeable-Income--ECI--and-When-to-File/>, 검색일자: 2020. 8. 26.

- ▶ 개인소득세 및 파트너십 소득세 신고기한은 2020년 4월 18일에서 2020년 5월 31일로 연장됨
- ▶ 클럽, 신탁, 협회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2020년 4월 15일에서 2020년 5월 31일로 연장됨
- ▶ 2020년 1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ECI의 신고기한이 2020년 4월 30일에서 2020년 5월 31일로 연장됨
- ▶ 2020년 3월 말의 GST 신고기한은 2020년 4월 30일에서 2020년 5월 11일로 연장됨

3 인도

가. 2020 연방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0-02호]

- ▣ 인도 정부는 2020년 2월 1일 2020년도 연방예산안을 발표함³⁴⁰⁾
 - ▶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 폐지, 법인세율 혜택 확대, 특례 원천징수세율 적용기한 연장 등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 ▶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를 폐지하여 총배당금에 대한 20.56%의 특례 세율이 폐지되었음³⁴¹⁾
 - ▶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과세되지 않으며, 수익자에게만 과세됨
 - ▶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수령한 자는 전년도 이자비용의 최대 20%까지 배당소득에서 공제 가능함³⁴²⁾
 - ▶ 비거주자 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은 인도 내국세법에 따라 20%의 세율로 과세되며, 이는 조세조약에 따라 변동 가능함

340) 인도 정부, Press Information Bureau, pib.nic.in/PressReleaseDetailm.aspx?PRID=1601474, 검색일자: 2020. 8. 26.

341) News IBFD, India - Union Budget 2020 presented to Parliament - corporate tax(Feb 3, 2020).

342) KPMG, India: Tax proposals in Union Budget 2020,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2/tmf-india-tax-proposals-in-union-budget-2020.html>, 검색일자: 2020. 2. 25.

▣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함

- ▶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은 설립 후 7년 이내 연속하는 3년간 이익의 100%를 공제할 수 있음
- ▶ 2020 연방예산안에서는 혜택 적용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전년도 매출액 기준을 2억 5천만루피³⁴³⁾에서 10억루피³⁴⁴⁾로 확대하였으며, 적용 가능 기간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15% 특례 법인세율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함³⁴⁵⁾

- ▶ 2023년 3월 31일까지 생산을 시작하는 신설 제조업에 적용되는 15% 특례세율을 에너지 생산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 이는 2019/20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외국 정부의 국부펀드를 통해 인도에 투자하는 경우 특례를 제공함

- ▶ 외국 정부의 국부펀드를 통해 인도 내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하여 세금을 100% 면제함
 - 사회기반시설 등 대상 사업에 2024년 3월 31일까지 투자하고 이를 최소 3년간 유지해야 함

▣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특례세율을 도입함

- ▶ 협동조합은 현재 30% 기본세율에 할증 및 추가 세율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법인과의 형평을 위하여 22%의 기본세율에 10% 할증 및 4%의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 특례세율 적용 시 기존의 감면 및 공제는 적용이 불가하나,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 적용이 면제됨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는 4%의 특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³⁴⁶⁾

343) 2020. 3. 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1억원임

344) 2020. 3. 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5억원임

345) KPMG, India: Tax proposals in Union Budget 2020,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2/tnf-india-tax-proposals-in-union-budget-2020.html>, 검색일자: 2020. 2. 25.

- ▶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발행된 외화 및 인도 루피 표시 채권에 대하여 적용함
 - ▶ 해당 채권은 국제금융서비스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Center) 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야 함
- ▣ 비거주자 및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Foreign Portfolio Investors: FPI)에게 지급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5% 특례 원천징수세율 적용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³⁴⁷⁾
- ▶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 는 다음과 같음
 - 인도회사가 발행한 외화 표시 사채, 장기 사채에 대한 이자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경우
 - FPI에 인도 루피 표시 채권 및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 ▣ 납세자를 위하여 개인소득세를 완화하고 세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율을 개정함³⁴⁸⁾
- ▶ 변경 세율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공제 및 감면을 포기해야 함
 - ▶ 기존 세율 및 변경된 세율은 다음과 같음(단, 표에 표기된 세율은 기본 세율이며 할증 및 추가 세율은 미포함)

| 소득구간 | 기존 세율 | 변경 세율 |
|-----------------------|-------|-------|
| 250,000루피 이하 | 면제 | 면제 |
| 250,000~500,000루피 | 5% | 5% |
| 500,000~750,000루피 | 20% | 10% |
| 750,000~1,000,000루피 | 20% | 15% |
| 1,000,000~1,250,000루피 | 30% | 20% |
| 1,250,000~1,500,000루피 | 30% | 25% |
| 1,500,000루피 이상 | 30% | 30% |

주: 2020. 3. 3. 기준 매매기준율 16.47루피/원

346) EY, Global Tax Alert, India releases the 2020-21 Union Budget, [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India_releases_the_2020-21_Union_Budget/\\$FILE/2020G_000557-20Gbl_India%20releases%20the%202020-21%20Union%20Budget.pdf](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India_releases_the_2020-21_Union_Budget/$FILE/2020G_000557-20Gbl_India%20releases%20the%202020-21%20Union%20Budget.pdf), 검색일자: 2020. 2. 25.

347) EY, Global Tax Alert, India releases the 2020-21 Union Budget, [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India_releases_the_2020-21_Union_Budget/\\$FILE/2020G_000557-20Gbl_India%20releases%20the%202020-21%20Union%20Budget.pdf](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India_releases_the_2020-21_Union_Budget/$FILE/2020G_000557-20Gbl_India%20releases%20the%202020-21%20Union%20Budget.pdf), 검색일자: 2020. 2. 25.

348) News IBFD, India - Union Budget 2020 presented to Parliament - personal tax(Feb 3, 2020).

▾ 기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³⁴⁹⁾

- ▶ GST 신고금액이 없거나 예납신고, 매입세액공제 등 일부 신고 절차를 문자메시지 (SMS base)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
- ▶ 소득세 환급절차를 대면으로 수행하지 않고 간소화, 자동화된 방식으로 실시함
- ▶ 전기자동차 및 핸드폰 부속품에 대한 관세율이 개정됨
- ▶ 신문용지 및 경량종이 수입에 대한 관세율이 10%에서 5%로 인하됨

나.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발표

[조세동향 20-04호]

▾ 인도 재무부장관은 2020년 3월 24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전국적인 경제적 폐쇄 조치에 따른 경제정책을 발표함³⁵⁰⁾

- ▶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에 대한 조세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소득세, GST, 관세의 각종 기한을 연장하고 납부지연이자 및 과태료를 경감함

- ▶ 2018/19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기한을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연장함
- ▶ Vivad Se Vishwas Scheme이 연장됨에 따라 납세액의 납부기한을 2020년 6월 30일로 연장하며, 지연이자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Vivad Se Vishwas Scheme’이란 인도 정부가 직접세와 관련된 계류 중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며,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납세액, 지연이자 및 과태료를 부과함³⁵¹⁾
- ▶ 원천징수(Tax deduction at source) 납부기한은 연장하지 않지만, 지연납부 시에는 기존 18%에서 9%로 경감된 지연이자를 부과함
- ▶ 예납세액, 원천징수, 증권거래세, 물품거래세 등 납부에 대한 각종 지연이자를 9%로 경감함

349) News IBFD, India - Union Budget 2020 presented to Parliament - indirect tax(Feb 3, 2020).

350) News IBFD, India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announced(Mar 25, 2020).

351) PWC, Glimpses of the panel discussion: Vichaar on Vivad se Vishwas Scheme 2020, <https://www.pwc.in/tax-and-regulatory-services/vivad-se-vishwas.html>, 검색일자: 2020. 5. 6.

- ▶ 5천만루피 이하 매출액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기간의 GST 신고기한을 2020년 6월 30일로 연장하며, 지연이자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 5천만루피 이상 매출액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GST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기존 18%에서 9%로 경감된 지연이자를 부과함
- ▶ 소득세법, 재산세법, 자금세탁방지법, 증권거래세법, 물품거래세법, 균등세법, Vivad Se Vishwas Scheme, GST법, 관세법에 관련한 모든 고지, 승인, 제재조치, 항소, 신청, 보고 등의 법정기한이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6월 29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일괄 연장됨

다.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추가 발표

[조세동향 20-05호]

- ▣ 인도 재무부는 2020년 5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상 거주자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발표함³⁵²⁾
- ▣ 2020년 3월 22일 이전에 인도를 방문한 개인의 경우 2019/20 과세연도 세무상 거주자 요건을 판정할 때 다음 규정이 적용됨
 -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인도를 떠날 수 없는 개인의 거주자 판정 시 2020년 3월 22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 ▶ 2020년 3월 1일 이후 인도에서 자가격리 판정을 받고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인도를 떠날 수 없었던 개인의 거주자 판정 시 자가격리 시작일로부터 2020년 3월 31일 또는 자가격리 해제일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도를 출국하는 개인의 거주자 판정 시 2020년 3월 22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 ▣ 인도 재무부장관은 2020년 5월 13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³⁵³⁾

352) 인도 국세청, F. No. 370142/18/2020-TPL, https://www.incometaxindia.gov.in/communications/circular/circular_no_11_2020.pdf, 검색일자: 2020. 5. 22.

- ▶ 특정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³⁵⁴⁾의 25%를 감면함
 - 대상거래에는 계약 지급수수료, 전문가 수수료, 이자비용, 임대료, 배당, 중개수수료 및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아닌 지급액이 해당됨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및 급여는 해당되지 않음
 - 2020/21 사업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됨
- ▶ 공익신탁, 파트너십, LLP, 협동조합 등 법인이 아닌 단체에 지급할 환급금액은 즉시 환급됨
- ▶ 다음의 세무상 납부 및 신고 기한이 추가로 연장됨
 - 2019/20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2020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됨
 - 세무조사 기한이 기존 2020년 8월 30일에서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됨
 - Vivad Se Vishwas Scheme³⁵⁵⁾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4

인도네시아

가. 코로나19 대응정책 발표

[조세동향 20-03호]

- ▣ 인도네시아 경제부는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³⁵⁶⁾
 - ▶ 해당 조세정책은 2020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6개월간 유효함

353) News IBFD, India - COVID-19 Pandemic: INR 20 Lakh Crore Stimulus Package Announced - Key Tax Measures Part 1(May 14, 2020).

354) Tax Deducted at Source, Tax Collected at Source라 부르는 특정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TDS의 경우 1%부터 20%의 범위에서 지급액 유형에 따라 적용되며, TCS의 경우 0.1%부터 5%의 범위로 지급액 유형에 따라 적용됨

355) Vivad Se Vishwas Scheme이란 인도 정부가 직접세와 관련된 계류 중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며, 코로나19 정책으로 인해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납세액, 지연이자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4호, 2020 참조

356) 인도네시아 경제부, Pemerintah Umumkan Stimulus Ekonomi Kedua untuk Menangani Dampak COVID-19, <https://ekon.go.id/publikasi/detail/183/pemerintah-umumkan-stimulus-ekonomi-%20kedua-untuk-menangani-dampak-covid-19>, 검색일자: 2020. 3. 25.

- ▼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세 납부의무자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적용함
 - ▶ 법인세 납부액을 30% 감면함
 - ▶ 수입세를 면제함
 -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함
 - 비수출업자는 기존 10억인도네시아루피아³⁵⁷⁾에서 50억인도네시아루피아³⁵⁸⁾의 한도 내에서, 수출업자는 한도 없이 허용함

- ▼ 연간 소득이 2억인도네시아루피아³⁵⁹⁾ 이하인 제조업 근로자는 소득세를 면제함

나. 해외 디지털거래에 대한 VAT 가이드라인 발표

[조세동향 20-05호]

- ▼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2020년 5월 14일 해외 디지털 서비스 및 상품 수입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³⁶⁰⁾
 - ▶ 해당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민이 사용하는 모든 해외 디지털 서비스, 무형자산의 수입 거래에 대하여 적용됨
 - ▶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세수 감소효과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함

- ▼ 재무부 규정 No. 48/PMK.03/2020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대상 거래에는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 영화, 앱, 게임, 온라인 서비스 등이 포함됨
 - ▶ 과세대상 디지털 서비스를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함
 - ▶ 인도네시아에서 소비자란 인도네시아 거주자이거나, 인도네시아 지불 시스템을 통해

357)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510만원임

358)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7,550만원임

359)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00만원임

360) News IBFD, Indonesia -Indonesia Issues Guidelines for VAT on Import of Digital Goods and Services (May 20, 2020).

결제하거나, 인도네시아 소재 IP 주소를 이용하여 거래한 개인을 의미함

- ▶ 과세기간은 3개월이며 매 과세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규정된 서식을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함

다.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발표

[조세동향 20-05호]

-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0년 5월 6일 재무부 규정 No. 44/PMK.03/2020을 발표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납세자들을 위한 조세혜택을 확대함³⁶¹⁾

 - ▶ 2020년 4월 27일부터 기존 규정은 폐지되고 본 규정이 적용됨
 - ▶ 본 규정은 종전 규정에 비해 적용대상이 확대됨
- ▼ 2020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다음과 같은 조세 혜택이 적용됨³⁶²⁾

 - ▶ 연간 소득이 2억루피아³⁶³⁾를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면제함
 - ▶ 수입원천징수세를 면제함
 - ▶ 월별 선납법인세를 30%까지 감면함
 - ▶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50억루피아³⁶⁴⁾ 이하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조기 환급함
- ▼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연 매출액 48억루피아³⁶⁵⁾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0.5%의 최종분리과세를 면제함

 - ▶ 거래상대방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수행할 필요는 없음

361) News, IBFD, Indonesia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Regulation Expanded to Include More Industries and Introduce Tax Exemption for SMEs(May 6, 2020).

362) KPMG, Tax Incentives In Relation To The Covid-19 Pandemic,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id/pdf/2020/05/id-tnf-april-2020-tax-incentives-kr.pdf>, 검색일자: 2020. 5. 29.

363) 2020. 5.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98만원임

364) 2020. 5.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2,245만원임

365) 2020. 5.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752만원임

5 일본

가. 2020년도 세법 개정안 세목별 내용 발표

[조세동향 20-01호]

▣ 일본 정부는 2019년 12월 12일 발표한 2020 세법 개정안을 세목별로 구체화함³⁶⁶⁾

- ▶ 제안된 개정안은 2020년 3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³⁶⁷⁾
- ▶ 세목별로 구체화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인세법

▣ 기업의 연결납세 규정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개정함³⁶⁸⁾

- ▶ 내국법인은 100% 일본 내 연결 기업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음
- ▶ 연결 모회사 및 자회사는 개별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전자신고를 통해 이루어짐
- ▶ 기존의 연결납세 방법과는 다르게,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정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들을 개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음
- ▶ 그러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연결그룹 차원에서 계산함
- ▶ 2022년 4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새로운 법안이 적용됨

▣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에 소득공제를 적용함³⁶⁹⁾

- ▶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25%를 소득공제함
- ▶ 투자금액이 최소 1억엔(외국기업의 경우 5억엔)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됨

366) News IBFD, Japan - 2020 tax reform proposal outlines - further details(Jan 3, 2020).

367) PWC, Announced 2020 Japan Tax Reform Proposals, 2020. 1. 17.

368) EY, 2020 Japan tax reform outline, 2019. 12. 18.

369) EY, 2020 Japan tax reform outline, 2019. 12. 18.

-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회사가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함(단, 해당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 5G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투자사업에 대하여 조세 혜택을 적용함³⁷⁰⁾

- ▶ 정보통신확산법안(법안명은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5G네트워크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설비 및 시설을 취득할 시 적용함
- ▶ 설비 및 시설 취득금액의 30% 특별상각률을 선택하거나 취득금액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단, 세액공제액은 과세연도 법인세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 해당 혜택은 법안 발효일로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R&D 투자세액공제 적용 금지 조건을 강화함³⁷¹⁾

- ▶ 기존 대기업의 국내 투자금액이 해당 회계연도 감가상각비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투자금액이 감가상각비 총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
- ▶ 이는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임³⁷²⁾

▣ 기타 법인세법상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자본금이 100억엔³⁷³⁾을 초과하는 기업이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식음료 비용은 접대비 공제가 배제됨
- ▶ 지역사업 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 규정이 2년 연장됨

2) 국제조세

▣ 중속기업의 배당 등을 통하여 지배기업의 주식양도차익을 줄이는 조세회피방안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함³⁷⁴⁾

370) EY, 2020 Japan tax reform outline, 2019. 12. 18.

371) EY, 2020 Japan tax reform outline, 2019. 12. 18.

372) News IBFD, Japan - 2020 tax reform proposal outlines - further details(Jan 3, 2020).

373) 2020. 8. 26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15억원임

- ▶ 종속기업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이 주식 장부가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배당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주식 장부가에서 차감하도록 함
- ▶ 종속기업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배력은 50% 이상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함
-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됨
 - 종속기업이 내국기업이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점부터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까지 90% 이상의 지분을 내국기업이 보유한 경우
 - 배당 총액이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 순증가분보다 적은 경우
 -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 10년 이후에 배당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 배당금액이 2천만엔 이하인 경우

☺ 기타 국제조세와 관련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CFC 소득 계산 시 Usance 이자소득은 대상 소득에서 제외함
- ▶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에서 일본 기업이 해외법인의 일본 고정사업장에 지급한 이자비용을 적격이자비용에서 제외함

3) 개인소득세 등

☺ 개인소득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³⁷⁵⁾

- ▶ 결혼하지 않은(이혼가정이 아닌) 편부모가정의 연간 소득이 500만엔 이하인 경우 이혼가정 및 사별가정에 적용되는 특별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 ▶ 개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퇴직을 위한 저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개인저축계좌(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하여 2037년까지 적용함

☺ 전산장부유지법안(Electronic Books Maintenance Act)을 개정함

- ▶ 전산데이터로 보존해야 하는 인보이스 및 영수증에 ① 발행자는 데이터의 타임스탬프를 부착해야 하며 ② 발행 시 영수증 수령인이 데이터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374) EY, 2020 Japan tax reform outline, 2019. 12. 18.

37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19-12호, 2019.

▼ 소비세 신고기한을 연장함

- ▶ 법인세 신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기업이 최종 소비세 신고서 기한 연장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종 소비세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됨
- ▶ 해당 통지서가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에 제출된 경우 해당 연도 및 그 이후부터 적용됨
- ▶ 해당 규정은 2021년 3월 31일이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이 되는 연도 이후부터 적용됨

나.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발표

[조세동향 20-04호]

▼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개인 및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경제조치를 발표함³⁷⁶⁾

- ▶ 경제 조치에 포함하여 발표된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국세 및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기한을 1년간 연기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 ▶ 2020년 2월 1일 이후로 한 달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전년도 동 기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고, 세금을 일시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 대상 세목은 국세 및 지방세(인지세 제외)이며,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까지 납부할 세액임
 - 과거에 확정된 세액이지만 미납된 금액에도 적용됨

▼ 자본금 10억엔 이하의 법인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함

- ▶ 기존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를 확대함

376) Deloitte, Additional tax relief measures proposed as part of COVID-19 emergency economic response plan, <https://www2.deloitte.com/jp/en/pages/tax/articles/bt/japan-inbound-tax-alert-15april2020.html>, 검색일자: 2020. 4. 28.

- ▶ 단, 자본금 10억엔 이상인 대기업의 100% 자회사는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해당 규정은 2020년 2월 1일 및 2022년 1월 31일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적용되며,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시작일로부터 1년까지 소급할 수 있음
- ▣ 중소기업이 원격근무를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소프트웨어, 설비투자 등에 대하여 100% 상각 혹은 7% 세액공제를 적용함(단, 자본금이 3천만엔 이하인 소기업은 10% 세액공제 적용)
- ▶ 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규 자산을 구입하여야 하며, 재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계획에 따라 취득하여야 함
 - ▶ 세액공제 혜택은 기타 공제와 합하여 납부세액의 최대 20%까지 허용됨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일정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한 법인은 소비세 환급 여부 신청(JCT Taxpayer Status Election) 내역을 변경할 수 있음
- ▶ 소비세 환급 여부를 신청한 법인에 한하여 소비세 환급이 적용되며, 기존 소비세 환급 여부 신청 방식은 과세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고 최소 2년간 변경할 수 없음
 - ▶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출이 최소 한 달 이상 전년도 동 기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내용을 철회할 수 있음
-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사업에 대해 다음의 기타 조세 혜택을 적용함
- ▶ 특별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를 면제함
 - ▶ 재산세 및 도시개발세 과세표준을 감면함

6 중국

가. 소득세법 사회복지 기부금 공제 규정 도입

[조세동향 20-01호]

- ▶ 중국 재무부 및 국세청은 2019년 12월 31일 개인소득세법상 사회복지 기부금 공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제99호 공고를 발표함³⁷⁷⁾
- ▶ 교육 및 가난해소를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 및 공공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개인소득세법상 기부금을 과세소득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³⁷⁸⁾

 - ▶ 일정 기부금은 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음
 - ▶ 개인의 종합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자산양도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이 공제 대상 소득에 해당됨
- ▶ 기부 형태에 따라 공제 대상 기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 금전으로 제공한 기부금: 해당 자산의 실제 금전적 가치
 - ▶ 주식 및 부동산으로 제공한 기부금: 취득시점의 원가
 - ▶ 기타 비금전적 기부자산: 시장가치
- ▶ 공제 대상 소득의 유형별로 기부금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음

 - ▶ 거주자의 경우 연간 종합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자산양도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30%까지 공제 가능함
 - ▶ 비거주자의 경우 기부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월의 과세소득 30%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공제 가능함

377) News IBFD, China(People's Rep.) - Rules on deduction of public welfare donations updated(Jan 9, 2020).

378) KPMG, Individual income tax policy on charitable donations confirmed, <https://home.kpmg/cn/en/home/insights/2020/01/china-tax-alert-03.html>, 검색일자: 2020. 1. 21.

- ▣ 거주자의 종합소득 유형별로 기부금 공제 시점은 다음과 같음

 -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
 - ▶ 인적용역소득, 로열티소득: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
 - ▶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기타 소득: 개별 소득의 세무 처분에 따름

- ▣ 납부한 기부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개인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기부내역 상세를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함

 -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개인은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 개인은 기부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증명서를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기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 대리인은 해당 내역을 과세관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조세감면 도입

[조세동향 20-02회]

- ▣ 중국 재무부, 국세청 및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줄이고자 신고기한 연장 및 조세감면을 도입함³⁷⁹⁾

 - ▶ 국세청 공고 제2020-19호에 따라 매달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대리인은 2020년도 2월 신고납부 기한을 2월 24일로 연장하며, 후베이성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당국의 권한에 따라 더 길게 연장하도록 함³⁸⁰⁾

- ▣ 중국으로 반입되는 전염병 예방 및 구호를 위한 기부물품은 제2020-6호 공고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면제됨

-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됨

379) News IBFD, China(People's Rep.) - Tax exemptions for preventing and controlling current novel coronavirus outbreak announced(Feb 10, 2020).

380) News IBFD, China(People's Rep.) - Deadline for filing tax returns extended(Jan 31, 2020).

- ▶ 제2020-8호 공고에 따라 예방을 위한 구호물품의 수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대중교통, 생필품 배달 및 수송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됨
- ▶ 제2020-9호 공고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 계산 시 전액 공제됨
- ▣ 제2020-10호 공고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근무하는 의료진이 받은 수당은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면제됨
- ▶ 제공받은약품, 의료용품, 예방용 의료기구 등에 대한 공급도 개인소득세 계산 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 더불어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개인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계산 시 전액 공제됨

다.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추가 발표

[조세동향 20-05호]

- ▣ 중국 국세청은 2020년 4월 27일 [2020] No.27 공고를 발표하여 2020년 5월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함³⁸¹⁾
- ▶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5월 15일에서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과세당국 승인을 받아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여 신고할 수 있음
- ▣ 중국 국세청은 4월 30일 [2020] No.24 공고를 발표하여 소규모 납세자의 VAT 면제를 확대하기로 함³⁸²⁾
- ▶ 기존 정책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함

381) News IBFD, China(People's Rep.)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China Extends Tax Filing Deadline for May 2020(Apr 29, 2020).

382) News IBFD, China(People's Rep.) - COVID-19 Pandemic: China Extends VAT Reliefs for Small-Scale Taxpayers(May 11, 2020).

- ▶ 후베이성 지역의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VAT를 면제함
- ▶ 기타 지역의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VAT 세율을 3%에서 1%까지 인하함

라. 코로나19 관련 소규모 기업의 세금 납부 연장

[조세동향 20-06호]

- ▼ 중국 국세청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소규모 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세청 공고 [2020] No.10을 발표하여 세금 납부를 연장함³⁸³⁾
 - ▶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소규모 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첫 번째 신고납부 기한까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음
 - ▶ 세금 납부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 2021년도 신고납부 기한에 재납부할 수 있음
- ▼ 대상 소규모 기업은 국세청 공고 [2019] No. 2에 정의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임
 - ▶ 연간 매출액이 300만위안³⁸⁴⁾ 이하
 - ▶ 총자산이 5천만위안³⁸⁵⁾ 이하
 - ▶ 총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

383) News IBFD, China(People's Rep.) - COVID-19 Pandemic: China Allows Deferral of Tax Payments for Small and Low-Profit Enterprises and Sole Traders(Jun 2, 2020).

384) 2020. 7. 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925만원임

385) 2020. 7. 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4억 8750만원임

7 호주

가. 코로나19 대응정책 발표

[조세동향 20-03호]

- ▶ 호주 정부는 2020년 3월 12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패키지 발표함³⁸⁶⁾
- ▶ 즉시상각자산의 기준 금액을 기존 3만호주달러³⁸⁷⁾에서 15만호주달러³⁸⁸⁾로 인상하고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³⁸⁹⁾

 - ▶ 대상기업은 기존 연간 총매출액 5천만호주달러³⁹⁰⁾ 미만에서 5억호주달러³⁹¹⁾ 미만으로 확대함
 - ▶ 적용시기는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임
- ▶ 사업투자 지원정책을 통해 신규투자의 50%를 공제함³⁹²⁾

 - ▶ 대상 기업은 총매출액이 5억호주달러 미만인 기업임
 - ▶ 대상이 되는 신규투자자산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설치한 감가상각자산이며 공장, 설비, 특허권 등 특정의 무형자산을 포함함
- ▶ 고용주의 현금흐름 확대를 위해 적격 사업자에게 현금 보조금을 제공함³⁹³⁾

386) 호주 국세청, The Australian Government's economic response to coronavirus,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The-Australian-Government-s-Economic-Response-to-Coronavirus>, 검색일자: 2020. 3. 20.

387)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57만원임

388)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285만원임

389) 호주 국세청, The Australian Government's economic response to coronavirus,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The-Australian-Government-s-Economic-Response-to-Coronavirus/#Enhancingtheinstanassetwriteoff>, 검색일자: 2020. 3. 23.

390)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6억원임

391)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60억원임

392) 호주 국세청, The Australian Government's economic response to coronavirus,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The-Australian-Government-s-Economic-Response-to-Coronavirus/#Backingbusinessincentive>, 검색일자: 2020. 3. 23.

- ▶ 적격 사업자는 고용근로자가 있고 연간 매출액이 5천만호주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자선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포함함
 - ▶ 최대 5만호주달러³⁹⁴⁾를 한도로 피고용인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의 100%를 지급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 1만호주달러³⁹⁵⁾를 지급함
 - ▶ 더불어 1차로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2020년 7~10월 기간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
 - 현금보조금은 두 차례에 걸쳐 최소 2만호주달러에서 최대 10만호주달러까지 지급될 예정임
- ☑ 호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특정 세금을 6개월까지 납부 연기할 수 있도록 함³⁹⁶⁾
- ▶ 대상 세목에는 소득세, PAYG 할부금³⁹⁷⁾, 부가급여세, 소비세 등이 해당됨
- ☑ PAYG 할부 적용 대상 기업은 할부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 분기별 PAYG를 선택하여 분할납부하는 법인은 2020년 1분기 활동보고서(Activity statement)를 제출할 경우 할부금을 변경 신청할 수 있음
 - ▶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기업은 할부이율(Instalment rate)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거 납부한 할부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음
- ☑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납세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함
- ▶ 2020년 1월 23일 이후로 발생한 미납지연이자 및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함
 - ▶ 기업에 현존하는 조세채무에 대한 이자를 경감하여 저율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93) 호주 국세청, The Australian Government's economic response to coronavirus,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The-Australian-Government-s-Economic-Response-to-Coronavirus/#Backingbusinessincentive>, 검색일자: 2020. 3. 23.

394)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61만원임

395)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53만원

396)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Dealing-with-disasters/In-detail/Specific-disasters/COVID-19/?page=1#Support_available_for_business, 검색일자: 2020. 3. 20.

397) PAYG(Pay As You Go)할부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세금을 분기별, 반기별 혹은 월별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호주 정부, Pay as you go(PAYG) instalments, <https://www.business.gov.au/Finance/Taxation/Pay-as-you-go-PAYG-instalments>, 검색일자: 2020. 3. 20.

- ▣ 호주 정부, 중앙 및 지방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납세자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납세자는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³⁹⁸⁾
- ▶ 더불어 소규모 사업자 지원 전문가로 이루어진 임시 창구(Temporary shopfronts)를 케언스에 설치할 예정이며, 다른 지역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음³⁹⁹⁾

나.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추가 발표

[조세동향 20-04호]

- ▣ 호주 국세청은 2020년 3월 31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조세정책을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함
- ▣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택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간편법(shortcut method)에 따라 계산하는 방안을 마련함⁴⁰⁰⁾
 - ▶ 재택근무가 필요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해당 정책의 적용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 ▶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고용주에게 지급받지 못하거나,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 공제 가능한 추가 비용은 다음 항목에 해당함
 - 근무장소의 난방, 냉방 등 전기요금
 - 근무장소의 청소비용
 - 핸드폰 및 인터넷 통신비용
 - 프린터 잉크, 복사용지 등 컴퓨터 부속 소모품
 - 컴퓨터, 프린터, 핸드폰, 가구 등 비품(단, 300호주달러 한도 이내)
 - ▶ 실제 사용금액, 고정률법, 간편법에 따라 추가 비용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음
 - 고정률법은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등에 업무와 관련한 일정 비율만큼을 계산하여 추가 비용으로 보아 공제함

39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Dealing-with-disasters/In-detail/Specific-disasters/COVID-19/?page=1#We_will_work_with_you, 검색일자: 2020. 3. 20.

399)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Dealing-with-disasters/In-detail/Specific-disasters/COVID-19/?page=1#Temporary_shopfronts, 검색일자: 2020. 3. 20.

400) 호주 국세청, Working from home during COVID-19, <https://www.ato.gov.au/General/COVID-19/Support-for-individuals-and-employees/Employees-working-from-home/>, 검색일자: 2020. 4. 28.

- 간편법은 근무 시간당 80센트를 재택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보아 공제함

☺ 국세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 등 국제조세에 적용되는 질의회신을 발표함⁴⁰¹⁾

- ▶ 호주에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호주 거주자 판정 시 코로나19로 인한 체류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 호주에서 이사회 등을 위하여 임원진이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진이 호주에 있는 것으로 판정하지 않음
- ▶ 외국법인의 직원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호주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음
- ▶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을 일시적 혹은 장기간 중단한 경우에는 GST 및 사업등록을 해제할 필요가 없음

다. 코로나19 관련 자산 즉시상각 기한 연장

[조세동향 20-06호]

☺ 호주 국세청은 2020년 6월 9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소규모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산의 즉시상각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⁴⁰²⁾

- ▶ 2020년 3월 12일 코로나19 관련 정책 발표를 통해 2020년 6월 30일까지 자산의 즉시상각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임⁴⁰³⁾

☺ 적용 대상 기업의 사업용 자산의 구매가액이 15만호주달러⁴⁰⁴⁾ 이내인 경우 해당 자산을 즉시상각할 수 있음

401) News IBFD, Australia - COVID-19 pandemic: suspension of residence and PE determination and other tax matters - FAQ published(Apr 6, 2020).

402) News IBFD, Australia - COVID-19 Pandemic: Government Announces Extension of Instant Asset Write-Off for Another 6 months(Jun 10, 2020).

4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3호, 2020.

404) 2020. 7. 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460만원임

- ▶ 자산의 구매가액 기준은 기존 3만호주달러⁴⁰⁵⁾에서 인상됨
- ▶ 적용 대상 기업은 기존 연간 총매출액 5천만호주달러⁴⁰⁶⁾ 미만인 기업에서 5억호주달러⁴⁰⁷⁾ 미만인 기업으로 확대됨

8 홍콩

가. 2020/21년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0-03호]

- ▣ 홍콩 재무부장관은 2020년 2월 26일 2020/2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⁴⁰⁸⁾
- ▣ 세율 및 과세구간의 변동은 없으며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은 2020/21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 시 2만홍콩달러⁴⁰⁹⁾의 한도 내에서 100% 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 ▶ 세액감면은 개인소득세를 종합신고함으로써 적용됨
- ▣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타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음⁴¹⁰⁾
 - ▶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사업자에게 사업등록세를 2천홍콩달러⁴¹¹⁾까지 면제함
 - 2019/20년도에 적용되던 사업등록세 면제 혜택을 1년간 연장함
 - ▶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인지세를 면제함

405) 2020. 7. 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92만원임

406) 2020. 7. 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15억원임

407) 2020. 7. 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153억원임

408) News IBFD, Hong Kong - Budget for 2020/21 - tax measures proposed(Feb 26, 2020).

409)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6만원임

410) KPMG, "Hong Kong Budget Summary 2020-2021," <https://home.kpmg/cn/en/home/insights/2020/02/hong-kong-budget-2020-2021.html>, 검색일자: 2020. 3. 30.

411)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만원임

- ▶ 2020/21 사업연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분기별로 1,500홍콩달러⁴¹²⁾ 한도 내에서 감면함
- ▶ 2020/21 사업연도 비주거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 2분기는 5천홍콩달러,⁴¹³⁾ 3, 4분기는 1,500홍콩달러 한도 내에서 감면함

나.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발표

[조세동향 20-04호]

- ▣ 홍콩 정부는 2020년 4월 8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개인 및 법인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⁴¹⁴⁾
- ▣ 2019/20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함
 - ▶ 따라서 법인소득세 신고는 2020년 5월 4일경에 오픈하며, 개인소득세 신고는 2020년 6월 1일에 오픈함
 - ▶ 더불어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2월 29일 사이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말 3개월 이내에서 2020년 6월 1일까지로 연장됨
- ▣ 2018/19 사업연도의 급여세, 사업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함
 - ▶ 첫 번째 납부를 완료한 사업자 및 개인은 두 번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음
 - ▶ 2018/19 사업연도의 납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

412)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만원임

413)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만원임

414) Deloitte, Hong Kong Relief Measures Getting Through COVID-19 Outbreak,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cn/Documents/tax/deloitte-cn-tax-hk-relief-measures-en-200409.pdf>, 검색일자: 2020. 4. 28.

IV 국제기구

1 OECD

가. 디지털세 Pillar 1, 2 관련 IF 문서 발표

[조세동향 20-02호]

- ☐ OECD는 2020년 1월 31일 디지털세 과세방안 Pillar 1, 2와 관련하여 BEPS 포괄적 이행 체계(Inclusive Framework: 이하 'IF') 총회 결과 문서를 발표함⁴¹⁵⁾

 - ▶ IF는 OECD, G20 국가들을 포함하여 약 13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29일, 30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세 기본 골격 등 합의안 도출을 위해 총회를 개최함
 - 금번 기본 틀을 토대로 하여 디지털세 부과안은 2020년 2월 20일에 열리는 G20 재무 장관 회의에 상정되어 추가로 더 논의될 예정임
 - IF 참여국들은 OECD의 Pillar 1, 2에 전반적으로 합의하였음
- ☐ Pillar 1 통합 접근법에 관하여 과세권 배분을 더욱 단순화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논의가 이루어짐

 - ▶ 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서비스사업·소비자대상사업의 글로벌 이익 중에서 통상이익을 제외하고 남은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시장 기여분)을 도출(Amount A)하여 국가별 배분기준에 따라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분배함

415) OECD(2020), Statement by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n the Two-Pillar Approach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January 2020,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 Paris, www.oecd.org/tax/beps/statement-by-the-oecd-g20-inclusive-framework-on-beps-january-2020.pdf, 검색일자: 2020. 2. 26.;

OECD, International community renews commitment to multilateral efforts to address tax challenges from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http://www.oecd.org/tax/beps/international-community-renews-commitment-to-multilateral-efforts-to-address-tax-challenges-from-digitalisation-of-the-economy.htm>, 검색일자: 2020. 2. 26.

- 통상이익률, 초과이익 중 시장기여분, 국가별 배분기준 등 세부 사항은 차후 합의의 대상으로 함
 - ▶ 미국이 제시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규정 도입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조세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책 목적을 잠식한다는 IF 참여국들의 우려 의견이 있었음
 - ▶ Amount C 산정과 관련된 분쟁해결절차, Amount A 산정에 있어서 과세대상사업 간의 디지털화 정도를 고려하는 방안, Amount A의 배분에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
- ▣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하여, 네 가지 기본 구성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짐
- ▶ 소득산입규정(Income Inclusion Rule), 과세권 전환 규정(Switch-over rule), 세원잠식 비용 공제 부인 규정(undertaxed payments rule), 조세조약 혜택 배제 규정(subject to tax rule)이 여기에 해당함
 - 보다 세부적인 기술적 사항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 OECD는 2020년 2월 13일 디지털세 도입 시 연 1천억달러의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추가적으로 발표함⁴¹⁶⁾
- ▶ 디지털세 도입으로 인하여 글로벌 법인세 세수는 약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⁴¹⁷⁾
 - 이 분석은 Pillar 1, 2가 모두 적용되고, 기업의 행태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음

나. 해외금융거래 관련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발표

[조세동향 20-02호]

- ▣ OECD는 2020년 2월 11일 해외금융거래에 관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발표함⁴¹⁸⁾

416) OECD, Update on Economic Analysis and Impact Assessment, <http://www.oecd.org/tax/beps/webcast-economic-analysis-impact-assessment-february-2020.htm>, 검색일자: 2020. 2. 26.

417) OECD, OECD presents analysis showing significant impact of proposed international tax reforms, <http://www.oecd.org/tax/beps/oecd-presents-analysis-showing-significant-impact-of-proposed-international-tax-reforms.htm>, 검색일자: 2020. 3. 3.

418) OECD(2020), Transfer Pricing Guidance on Financial Transactions: Inclusive Framework on BEPS Actions 4, 8-10, OECD, Paris, www.oecd.org/tax/beps/transfer-pricing-guidance-on-financial-transactions-inclusive-framework-

- ▶ 본 보고서는 개요를 포함한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계열사 간 금융거래에 대한 독립기업원칙 적용 방법을 다루고 있음
- ▶ 본 보고서의 각 장은 이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으로 반영될 예정임
 - Section A부터 E까지는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10장, Section F는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1장 D. 1.2.1.에 추가됨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1장 D.1. 부분(독립기업원칙)을 금융거래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함⁴¹⁹⁾

- ▶ 거래를 기술(accurate delineation, 재구성)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요소와 상황 및 당해 금융거래의 실질을 분석하여야 함
 - 대주와 차주가 당해 거래에 실제로 적용 가능하였던 선택사항들
 - 계약 조건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는 기존 관행에 비추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당해 산업이 정상가격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 자금조달의 목적과 비계열사 간 자본구조의 본질적 특징(the arm's-length nature of the capital structure)

▣ 특히 계열사 간 금융거래 중 재무기능(Treasury function), 지급보증(Financial guarantees),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 등에 관하여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 있음⁴²⁰⁾

- ▶ 재무기능과 관련하여, 계열사 간 대차거래(intra-group loans), 유동성 공통관리(cash pooling), 헷징(hedging)에 대한 독립기업원칙 적용 방법을 소개함
- ▶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수수료(guarantee fee)의 지급 가능 사례를 제시함
 -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보증의 상대방이 법적 의무가 부과된 명시적 보증을 통하여 묵시적 지원을 받는 것보다 더 낮은 차입비용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불 가능함

on-beps-actions-4-8-10.htm, 검색일자: 2020. 2. 26.;

OECD, OECD releases Transfer Pricing Guidance on Financial Transactions, <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transfer-pricing-guidance-on-financial-transactions.htm>, 검색일자: 2020. 2. 26.

419) KPMG, OECD - Final TP Guidance on Financial Transactions, <https://home.kpmg/ca/en/home/insights/2020/02/oecd-final-tp-guidance-on-financial-transactions.html>, 검색일자: 2020. 2. 26.

420) KPMG, OECD - Final TP Guidance on Financial Transactions, <https://home.kpmg/ca/en/home/insights/2020/02/oecd-final-tp-guidance-on-financial-transactions.html>, 검색일자: 2020. 2. 26.

- ▶ 자가전속보험과 관련하여 자가전속보험과 재보험의 정의, 보험료 등 가격 산정에 관한 독립기업원칙 적용 방법을 설명함

다. 코로나19 관련 조세 및 재정 정책 대응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0-04호]

- ▼ OECD는 2020년 4월 15일 G20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도입된 긴급 조세·재정 정책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함⁴²¹⁾
 - ▶ 각국의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하여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은 주로 기업의 현금흐름 확보, 가계 및 고용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여러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채택한 조세 및 재정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음⁴²²⁾
 - ▶ 세금 신고기한 연장
 - ▶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 유예 허용
 - 세액 분납의 경우 납부 차수 및 상환기한을 유연화함
 - ▶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목에 대한 환급세액 조기 지급 및 환급 범위 확대
 - ▶ 사회보장 기여금·급여세·재산세 등 특정 세액 감면
 - ▶ 단축근무 시행에 따른 근로보조금 지급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적용 범위 확대
 - ▶ 특정 가구 대상 현금 보조금 제공 등

421) News IBFD, OECD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OECD publishes tax and fiscal policy responses report(Apr 1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4-16_o2_2, 검색일자: 2020. 4. 20.

422) OECD는 조세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을 통하여 회원국의 납세자 지원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각국의 세정지원 정책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됨

- ① 기간 또는 기한 관련 조치: 납부기한 및 신고기한 연장, 가산금 및 가산세 면제, 납부 유예, 분납 허용, 체납처분 유예 등
- ②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
- ③ 감사 정책 관련 일시적 조치 및 조세 확실성 신속 제고방안
- ④ 납세자 서비스 및 의사소통 증진방안

OECD, Tax Administration Responses to COVID-19: Measures Taken to Support Taxpayers,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6_126478-29c4rprb3y&title=Tax_administration_responses_to_COVID-9_Measures_taken_to_support_taxpayers, 검색일자: 2020. 4. 20.

- ▼ OECD의 보고서는 여러 국가에서 봉쇄 및 완화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 넓고 강력한 조세정책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함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향후 수년 동안은 급격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의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정책은 가구소득 증대, 고용 안정화, 중소기업 사업 수요 최우선 등을 통하여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 ▶ 특히 조세정책은 코로나19 여파와 관련 정책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⁴²³⁾
 - 단, 코로나19 이후의 조세제도는 재정 수준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이 때에도 조세제도 조정은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정책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
 - ▶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 과세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필요성도 덧붙여 강조하고 있음⁴²⁴⁾
 - 원격근무 및 전자상거래 등으로 디지털 사용량이 급증하는 현실과 세수 증대의 필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상황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관한 긍정적 촉매제가 될 수 있음
 - 각 국가별로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과 투자 촉진 정책을 동시에 취할 수 있으며, 이때 조세 분쟁, 무역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 협력이 특히 중요해질 것임
 - 디지털세 관련 조세 확실성 강화를 위하여 조세 분쟁 방지 및 해결 메커니즘 논의가 현재 계속되고 있으므로, 현 상황은 상기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만한 계기가 될 수 있음

423) OECD, 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Resilience, p. 6,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8_128575-o6raktc0aa&title=Tax-and-Fiscal-Policy-in-Response-to-the-Coronavirus-Crisis, 검색일자: 2020. 5. 6.

424) OECD, 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Resilience, p.6, 42-43.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8_128575-o6raktc0aa&title=Tax-and-Fiscal-Policy-in-Response-to-the-Coronavirus-Crisis, 검색일자: 2020. 5. 6.

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조세조약 지침 발표

[조세동향 20-04호]

- ▣ OECD는 2020년 4월 3일 역외거래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조세조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⁴²⁵⁾

 - ▶ 본 지침은 OECD 모델조세조약을 기반으로 한 조세조약에서 국외 근로자가 고용된 당해 국가에서 노동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거나 거주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체류하게 된 경우를 주된 문제 상황으로 상정하고 있음
 - ▶ 고정사업장 창설 문제, 기업의 납세지 변경 문제, 국외 근로자들 관련 문제, 개인의 거주 상태 변경 문제 등을 논의함

- ▣ OECD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이동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새로운 고정사업장이 창설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음

 - ▶ OECD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근무지 소재국이 아닌 본국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문제로 인식함
 -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본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므로 근로자 소재국에서 고용주의 고정사업장이 창설될 가능성이 있음
 - ▶ 재택근무지는 일반적인 고정사업장 창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재택근무지를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장소가 기업의 사업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장소여야 하며, 당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소를 이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 다만 물리적 실재 존재 여부에 관한 최저 기준은 조세조약보다 각국의 내국세법에서 더 낮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의무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425) News IBFD, OECD - COVID-19 pandemic: OECD Secretariat releases guidance on impact of Covid-19 crisis on international tax treaty rules(Apr 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4-06_o2_2, 검색일자: 2020. 4. 20.;

OECD, OECD Secretariat Analysis of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Apr 3, 2020),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7_127237-vsdiagpp2t3&title=OECD-Secretariat-analysis-of-tax-treaties-and-the-impact-of-the-COVID-19-Crisis, 검색일자: 2020. 4. 20.

- ▼ OECD는 개인의 거주 상태 변경에 관하여는 두 가지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음
 - ▶ 첫 번째 사례는 개인이 일시적으로(휴가 또는 단기 출장) 기존 거주지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체류가 장기화되어 해당 체류국의 법률적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임
 - ▶ 두 번째 사례는 개인이 한 국가(현재의 거주국)에서 근무하여 법률상 거주자 지위를 획득한 상태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전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경우임
 - ▶ OECD는 두 경우를 특수 상황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임시 체류국에서 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

2 EU

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조세 조치 논의

[조세동향 20-03호]

- ▼ 유로그룹(Eurogroup)⁴²⁶⁾은 2020년 3월 16일 유로화 미사용 회원국들을 포함하여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책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음⁴²⁷⁾
 - ▶ 각 국가의 과세당국이 시행 중인 일시적 조치들을 확인함
 - 유럽 국가들의 조세 관련 시행 조치에는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유급 병가와 실업 급여 범위 확대,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 3월 17일 EU 회원국들의 경제 지원을 위한 일시적 국가보조 체계안(State aid temporary framework)을 발표함⁴²⁸⁾⁴²⁹⁾

426)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EU 회원국들의 재무장관 협의체임

427) News IBFD, European Union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discussed by Eurogroup (Mar 17,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3-17_e2_2.html, 검색일자: 2020. 3. 19.

428) European Commission, Temporary Framework for State aid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in the current COVID-19 outbreak, https://ec.europa.eu/competition/state_aid/what_is_new/sa_covid19_temporary-framework.pdf

- ▶ 본 체계안은 2020년 3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었음
- ▶ 다른 지원 종류와는 달리 본 지원 체계에서는 회원국들의 정책적 재량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음
 - 회원국들은 그 국가 소재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대 80만유로⁴³⁰⁾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수단으로는 선택적 세제 혜택, 직접 보조금 등의 방식을 택할 수 있음
 - 시장과 특정 경제 분야에서의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 또는 개입할 수 있음

나. 코로나19 관련 부가세 전자상거래 지침 등 기한 연장 제안

[조세동향 20-05호]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5월 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VAT 전자상거래 패키지(VAT e-commerce package)⁴³¹⁾의 시행을 연기하고 Council Directive 2011/16/EU (이하 'DAC') 관련 일부 기한을 연장할 것을 제안함⁴³²⁾⁴³³⁾
- ☐ 집행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VAT 전자상거래 패키지의 시행을 2021년 7월 1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함⁴³⁴⁾

429) News IBFD, European Union - COVID-19 pandemic: European Commission sends draft proposal for State aid temporary framework(Mar 18,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3-18_e2_1.html, 검색일자: 2020. 3. 19.;

News IBFD, European Union - COVID-19 pandemic: European Commission approves State aid temporary framework, 2020. 3.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3-20_e2_2, 검색일자: 2020. 3. 30.

430) 2020. 3.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억 8,300만원임

431)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18-12호, 2018 'EU - 2021년 시행 예정인 VAT 전자상거래 규정 관련 세부내용 발표' 참조

432) News IBFD, European Union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to Postpone Rules on VAT E-Commerce and DAC(May 11,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5-11_e2_5, 검색일자: 2020. 5. 22.

433) News IBFD, European Union -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to Postpone Entry Into Force of VAT E-Commerce Package(May 11,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5-11_e2_2.html, 검색일자: 2020. 5. 22.

434) European Commission, amending Directives (EU) 2017/2455 and (EU) 2019/1995 as regards the dates of transposition and application due to the outbreak of the COVID-19 crisis,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08-05-2020-proposal-for-a-council-decision-vat.pdf, 검색일자: 2020. 5. 28.

- ▶ VAT 전자상거래 패키지에 따르면, 역외 사업자가 역내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상거래(B2C e-commerce) 개정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 VAT 전자상거래 패키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존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2017년 12월 5일에는 재화의 원격 공급과 용역 공급에 관한 의무, 2019년 11월 21일에는 재화의 원격 공급과 특정 역내 재화 공급에 관한 개정이 있었음
- ▶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IT 시스템 구축 등 VAT 전자상거래 패키지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배분과 준비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 본 제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앞선 지침을 내국법으로 이행해야 할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됨

㉓ 집행위원회는 DAC에 따른 일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할 것을 제안함⁴³⁵⁾

- ▶ 보고대상 재무정보(Reportable Financial Accounts)의 교환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함
- ▶ 보고대상 역외거래 관련 정보⁴³⁶⁾의 최초 교환 시기는 기존 2020년 10월 31일에서 2021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됨
- ▶ 특징지표(hallmark)가 있는 역외 거래⁴³⁷⁾ 보고 기간의 기산일은 기존 2020년 7월 1일에서 2020년 10월 1일로 변경됨
- ▶ DAC⁴³⁸⁾ 채택일부터 시행일 이전까지(2018년 6월 25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보고대상 역외거래의 신고 시기는 기존 2020년 8월 31일에서 2020년 11월 30일로 변경됨
- ▶ 기한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추가로 3개월 연장될 수 있음

435) European Commission, amending Directive 2011/16/EU to address the urgent need for deferring certain time limits for the filing and exchange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20/EN/COM-2020-197-F1-EN-MAIN-PART-1.PDF>, 검색일자: 2020. 5. 28.

436) DAC Annex IV.에 규정되어 있음

437) DAC6 Annex IV.에 규정되어 있음

438) DAC의 6차 개정 지침으로, 특정 역외거래 정보의 의무 보고 및 교환을 주요 내용으로 함. 원문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8L0822>, 검색일자: 2020. 5. 28. 참조

- ▶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DAC6에 따른 기타 보고 규정들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DAC6에 따른 보고 대상 거래들은 연장된 기한이 종료된 후 즉시 보고되어야 함

다. 브렉시트 관련 용역 공급에 관한 EU 부가가치세 쟁점 발표

[조세동향 20-06호]

- ▣ 유럽연합은 2020년 6월 15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EU 부가가치세 분야 쟁점(용역 공급 관련)을 업데이트함^{439) 440)}
 - ▶ 본 문서는 2018년 9월 11일 발표된 기존 문서⁴⁴¹⁾를 일부 개정한 것임
 -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후 재화의 이동, 전자적 용역 공급에 관한 MOSS(Mini One-Stop-Shop) 제도 적용, 부가가치세 역외 환급 등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 분류될 예정임
 - ▶ 전환기간(2020. 2. 1. ~ 2020. 12. 31.) 동안 발생한 유럽연합 회원국과 영국 사이의 거래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국을 EU 회원국과 동일한 지위로 간주하는 EU VAT Directive(2006/112)가 그대로 적용됨
 - ▶ 전환기간 종료 이후 용역 공급과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① MOSS 제도의 적용을 받는 B2C 용역 공급과 ② Thirteenth VAT Directive(86/560)이 적용되는 역외 부가가치세 환급임
 - MOSS 제도에 따라 영국 공급자는 EU 회원국 중 한 국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Directive 2008/9가 아닌 Thirteenth VAT Directive(86/560)이 적용되는 경우 EU 회원국은 환급금액에 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고, 환급 요청기한 또한 회원국별로 다르게 설정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439) News IBFD, European Union - Brexit: European Commission Provides Information on the VAT Consequences for Supplies of Services(Jun 1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6-16_e2_3.html, 검색일자: 2020. 6. 22.

440) European Commission,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AND EU RULES IN THE FIELD OF VALUE ADDED TAX (VAT) FOR SERVICES,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brexit_files/info_site/vat-services_en.pdf, 검색일자: 2020. 6. 18.

441) 유럽연합은 2018년 9월 11일 브렉시트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용역 공급 관련 EU 부가가치세 분야 쟁점에 관하여 이미 한 차례 문서를 발표한 바 있음.
News IBFD, European Union; United Kingdom - European Commission notice to businesses on eventual VAT consequences of Brexit - published(Sep 18, 20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18-09-18_e2_2, 검색일자: 2020. 6. 30.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1호

2020년 7월 27일 인쇄

2020년 7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 유 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TEL : 044-414-2114(代), www.kipf.re.kr